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책의 내용은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록된 내용 중 예정인 사안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페이지의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부처별·시기별 주요 제도

핵심사항 삽화

<https://whatsnew.moef.go.kr>

CONTENTS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01 금융·재정·조세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획재정부)	3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4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5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6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7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8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	9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10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기획재정부)	11
•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획재정부)	12
•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획재정부)	13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14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	15
•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16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17
•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18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	1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02 교육·보육·가족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교육부)	24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25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	26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교육부)	27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교육부)	28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29
• 스톱강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30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여성가족부)	31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3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36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37
•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여성가족부)	38

03 보건·복지·고용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45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6
•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보건복지부)	47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48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49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50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51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52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계 심화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53
•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5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응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55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56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고용노동부)	57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58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고용노동부)	59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60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61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62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63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64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65
•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66
•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67
• 수입식품 등 자동 수입신고처리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68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69
•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70
•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71
•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72
•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73
•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74
•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통계청)	75

04 환경·기상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환경부)	82
•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83
•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84
•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환경부)	85
•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86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환경부)	87
•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88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	89
•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90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환경부)	91
•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환경부)	92
•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93
•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94
• 과불화핵산술포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환경부)	95
•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96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97
•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9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기상청)	99
•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기상청)	100
•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기상청)	101
•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기상청)	102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6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7
• 끊임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8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09
•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10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111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112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13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14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15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16
•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117
•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118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청)	119
•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특허청)	120

06 국토·교통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122
•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123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국토교통부)	124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125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토교통부)	126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127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128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129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30
•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해양수산부)	131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해양수산부)	132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해양수산부)	133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해양수산부)	134
•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조달청)	135

07 농림·수산·식품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44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45
•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46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47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48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49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150
•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51
•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52
•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53
•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54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155
•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56
•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57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158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159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160
•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해양수산부)	161
•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해양수산부)	162
•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	163
•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청)	164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산림청)	165

08 국방·병무

•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국방부)	169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국방부)	170
•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국방부)	171
•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국방부)	172
•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	173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병무청)	174
•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병무청)	175
•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병무청)	176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177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병무청)	178
•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	179
•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청)	180

09 행정·안전·질서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법무부)	186
• 스톱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187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법무부)	188
•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법무부)	189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19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	191
•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법무부)	192
• 소년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법무부)	193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법무부)	194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195
•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정안전부)	196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행정안전부)	197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198
•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199
•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해양수산부)	200
•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201
•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외교부)	202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법제처)	203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법제처)	205
•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조달청)	206
•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조달청)	207
•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208
• 조달물자 전문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청)	209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경찰청)	210
• 보호구역 가·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211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212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213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소방청)	214
•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기상청)	215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보법 시행 (해양경찰청)	216
•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18
•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19
•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220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221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222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223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24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225
•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6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7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9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기획재정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3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4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5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6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7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8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9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10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11
•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12
•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13

교육부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24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25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26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27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28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2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06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7
• 끊임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108

법무부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186
•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187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188
•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189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190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191
•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192
•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193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194

국방부

• 지역상생 장비특식 시행	169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170
•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171
•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172

행정안전부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195
•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196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197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198
•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199

농림축산식품부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144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145
•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146
•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47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148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149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150
•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151
•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152
•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153
•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154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155
•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156
•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157
• 국내산 별곡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15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109
•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110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111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112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113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114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115

보건복지부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45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46
• 수술실 CCTV 설치 및 활용 근거규정 시행	47

환경부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82
•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83
•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84
•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85
•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86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87
•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88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89
•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90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부적절한 체형 및 이동전시 금지)	91
•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92
•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93
•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94
• 과불화탄산염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95

고용노동부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48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49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50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51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52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53
•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54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응자제도 확대	55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56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57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58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59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60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61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62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63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64

여성가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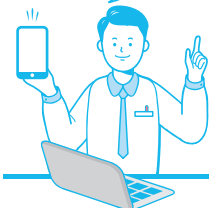
•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30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31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3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36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37
•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38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외교부

•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202
-------------------------	-----



국토교통부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122
•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123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황	124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125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126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127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128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129

해양수산부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65
•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96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97
•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98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130
•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131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132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133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134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159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160
•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161
•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162
•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200
•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201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16
---------------	-----

법제처

- | | |
|----------------------|-----|
|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203 |
|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 205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
|---------------------------------|----|
| •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 66 |
| •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67 |
| •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 68 |
|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 69 |
| •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 70 |
| •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 71 |
| •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 72 |
| •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 73 |
| •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 74 |

관세청

- | | |
|------------------------------|----|
|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14 |
|------------------------------|----|

통계청

- | | |
|---------------------------|----|
| •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 75 |
|---------------------------|----|

조달청

- | | |
|--------------------------------------|-----|
| •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 135 |
| •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 206 |
| •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 207 |
| •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208 |
|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 209 |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병무청

•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173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174
•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175
•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176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177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178

방위사업청

•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179
•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180

경찰청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210
•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211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212

소방청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213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214

산림청

•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163
•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164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165

특허청

•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117
•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118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119
•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120

기상청

•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99
•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100
•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101
•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102
•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215

해양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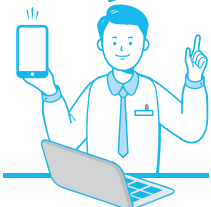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216
--------------------------------	-----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218
•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219
•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220
•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221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222



금융위원회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5
•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16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17
•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18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19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223
----------------------------	-----

원자력안전위원회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224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22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226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227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22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229

시기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7월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획재정부)	3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4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5
·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7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8
·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	9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10
·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14
· 스톱강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30
·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46
·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49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50
·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52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55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56
·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고용노동부)	59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61
·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62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64
·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65
·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66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69
·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70
·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74
·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83
·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88
·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94
·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기상청)	100
· 끊임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8
·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10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13
• 변리사의 윤리 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118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122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국토교통부)	124
•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125
•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토교통부)	126
•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127
•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128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129
•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44
•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46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155
•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159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160
•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국방부)	172
•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병무청)	176
•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청)	180
• 스톱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187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190
•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195
•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정안전부)	196
•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198
•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199
•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208
•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청)	209
•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211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212
•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213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225

8월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58
·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60
·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98
·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기상청)	102
·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51
·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국방부)	170
·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177

9월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교육부)	28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37
· 수술실 CCTV 설치 및 활용 근거규정 시행 (보건복지부)	47
·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48
· 수입식품 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68
·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환경부)	82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	89
·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6
·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117
·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123
·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152
·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54
· 여초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해양수산부)	162
·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	173
·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법무부)	189
·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조달청)	206
·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조달청)	207
·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223
·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술의 합리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6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7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8
·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29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10월

•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25
•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29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34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36
•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72
•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통계청)	75
•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93
•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111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112
•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116
• 가족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47
•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법무부)	193
•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법무부)	194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경찰청)	210

11월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17
•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캠프 운영 (여성가족부)	38
• 과불화핵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환경부)	95
•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110
•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114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해양수산부)	134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150
•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병무청)	174
•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행정안전부)	197

12월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	15
•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	26
•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67
•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환경부)	85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환경부)	91
•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환경부)	92
•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96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115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청)	119
•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특허청)	120
•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	179
•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가상청)	215

기 타 : 2023년 상반기 기 시행되었거나 2023년 하반기 시행 예정(날짜 미정)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6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기획재정부)	11
•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획재정부)	12
•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획재정부)	13
•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16
•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18
•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	19
•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교육부)	24
•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교육부)	27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여성가족부)	31
•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45
•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51
•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53
•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54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고용노동부)	57
•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63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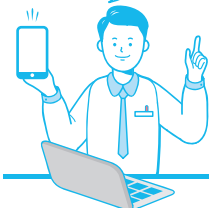


•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71
•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73
•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84
•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86
•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환경부)	87
•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90
•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97
•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기상청)	99
•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기상청)	101
•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7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130
•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해양수산부)	131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보로 안전기능 개선 (해양수산부)	132
•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해양수산부)	133
•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조달청)	135
•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45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148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149
•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153
•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156
•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157
•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158
•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해양수산부)	161
•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	163
•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청)	164
•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산림청)	165
•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국방부)	169
•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국방부)	171
•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병무청)	175
•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병무청)	178
•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법무부)	186
•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법무부)	188
•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	191
•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법무부)	192
•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해양수산부)	200
•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201
•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로인에게 안내 (외교부)	202
•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법제처)	203
•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법제처)	205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소방청)	214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해양경찰청)	216
•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18
•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219
•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220
•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221
•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222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224

<https://whatsnew.moef.go.kr>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 01 금융·재정·조세
- 02 교육·보육·가족
- 03 보건·복지·고용
- 04 환경·기상
-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06 국토·교통
- 07 농림·수산·식품
- 08 국방·병무
- 09 행정·안전·질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1

금융·재정·조세



1 금융위원회

자세한 내용은 p.15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Before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였습니다.



After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사전등록 없이 여권번호 · LEI를 활용,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1)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현행〉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지만 적용	

〈개정〉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좌 등)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진배경**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주요내용** 영화관람료를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동일하게 30% 소득공제 적용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적용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3)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낮은 주택으로 대체한 경우 그 차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 합산 1주택을 소유하고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억원을 한도로 추가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추진배경**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 **주요내용**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연금계좌 추가납입 (누적 한도 1억원) 허용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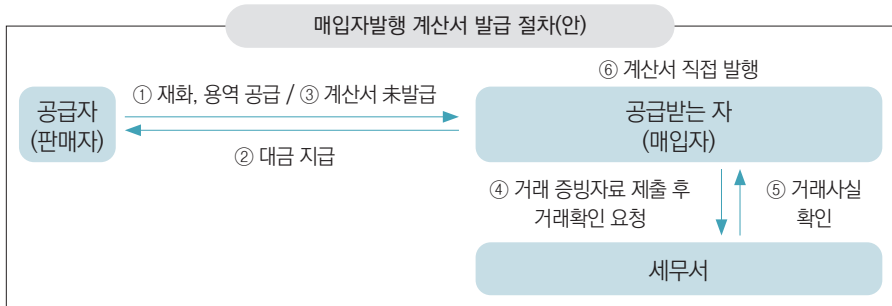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044-215-4212)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044-215-4221)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 재화·용역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전에는 면세 재화·용역의 공급자가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었으나
- 하반기부터는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납세자 권익보호
- **주요내용**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4)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자산에 투자하는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시행합니다.

■ (적용요건)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공모펀드 : BBB+이하 회사채 45% 이상, 이를 포함한 국내 채권 60% 이상 편입

사모펀드 : BBB+이하 45% 이상과 A등급 15% 이상 편입

■ (특례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은 14% 세율로 분리과세(가입후 3년간 발생 소득에 한정)

■ (적용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적용기한)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고위험·고수익 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 **추진배경**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 개선
- **주요내용**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시행일** 2023년 6월 12일 이후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가입하는 분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6)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대중형 골프장을 제외한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은 개별소비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기존 이분체계(회원제, 대중)를 삼분체계(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로 개편('22.5.3. 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10의2))

종 전		개 정('23.7.1.부터)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회원제 골프장	12,000원 ²⁾
비회원제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¹⁾	-

1) 이용료 주중 188,000원, 주말 247,000원 미만인 비회원제 골프장(문체부 고시, '23년 기준)

2) 교육세·농특세(7,200원) + 부가가치세(1,920원) 포함시 총 21,120원

■ 이는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하기 위한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의 취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취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사치성 소비의 담세력에 상응하는 조세부과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고 과세형평 도모

■ 금번 개편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 골프장으로 전환함으로써 골프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추진배경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에 맞춰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주요내용 2023년 7월 1일 부터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12,000원의 개별소비세 부과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장행위하는 분부터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2023년 7월부터 제조자가 국내 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에 대한 개별 소비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됩니다.

- 이는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여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 * 국내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나, 제조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등은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이 과세표준
-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판매가격에서 유통·판매마진 등을 고려한 기준 판매비율* 만큼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경감됩니다.
 - * 자동차 18%, 가구 38.9%, 모피 24.6%(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3년 주기로 고시)
- 금번 개편을 통해 국산제품과 수입제품간 과세형평이 제고되고, 국산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인하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 및 내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추진배경**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시 국내 제조물품과 수입물품간 과세형평 제고
- **주요내용**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제조자가 국내제조물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기준판매비율만큼 경감
 - (기준판매비율)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 판매비율심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분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044-215-4333)

2023년 6월까지 자동차에 적용하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제도가 종료되어 하반기부터는 기본세율로 환원(탄력 3.5%, 한도 100만원→기본 5%)되어 적용됩니다.

- 코로나19 대응책의 일환으로 내수 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세율 30%* 인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 기본세율 5% → 탄력세율 3.5%, 한도 100만원

-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 소비 여건이 개선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어 탄력세율을 종료하였습니다.

탄력세율 제도가 종료되어도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시행*되고,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 및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도 올해 계속 시행되므로,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예시) 그랜저(출고가 4,200만원 가정)의 경우 탄력세율 환원 시(+90만원), 과세표준 경감효과(△54만원)로 구매가격은 +36만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

자동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추진배경 코로나19 대응 내수진작 대책으로 시작된 제도의 정책목적 달성
- 주요내용 제조장 반출·수입가격의 3.5% → 5%로 환원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조장 반출, 수입분부터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 044-215-4751)

「외국환거래법」 제정(’99년) 이후 연간 5만불로 유지되어 온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가 금년 7월부터 10만불로 확대됩니다.

■ 앞으로 연간 누계 10만불까지는 사유 및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이 상향됩니다.

■ 그간 기업이 연간 3천만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외화차입을 할 경우, 기획재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사전신고가 필요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기준이 5천만불로 상향 조정됩니다.

대형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그간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4개 증권사만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투자목적이 아닌 일반환전이 가능했으나, 금년 7월부터 그 대상·범위 등이 확대됩니다.

■ 앞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9개 대형증권사는 기업·국민 모두를 대상으로 일반환전을 할 수 있게 되므로, 고객들은 별도로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해당 증권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 예고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 추진배경 국민·기업·금융기관의 일상적 외환거래에 대한 부담 최소화
- 주요내용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 신고 기준금액 상향, 대형증권사의 국민·기업 대상 일반환전 허용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2)

입찰참가자에게 충분한 서류 검토시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하였습니다.

- 현재 입찰서류 제공시점이 입찰공고일에서 입찰등록마감일로 규정되어 있어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일에 입찰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 입찰참가자가 사업검토를 할 시간이 충분히 부여되지 않아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제 발주기관이 입찰서류를 입찰공고일에 즉시 교부하여야 하므로 입찰참가자가 서류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 **추진배경** 입찰참가자의 서류 검토 시간 부여
- **주요내용** 발주기관의 입찰서류 교부시점을 입찰공고일로 변경
-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2)

계약대가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의 낙찰하한율이 상향됩니다.

- 물품 및 용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협상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 특히, 고위험 직종인 소방·군·경찰 안전 장비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80%로 대폭 상향됩니다.

-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낙찰하한율이 60%에서 70%로 상향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 **추진배경** 계약대가 적정성 제고를 통한 기업부담 완화
- **주요내용**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구분		낙찰하한율	
		현행	개정
협상계약	소방·군·경 안전장비	60%	80%
	그 외	60%	70%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60%	70%

-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 044-215-5212)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낙찰탈락자에게 지급되는 설계보상비를 조기지급하였습니다.

*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 그동안 기술형 입찰에 참가하여 기본설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는

- 낙찰 탈락이 확정되었음에도 설계보상비 지급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 실시설계적격자(1순위) 결정시 2순위 이하 입찰자들은 실질적으로 탈락하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고 낙찰자가 결정(12개월 소요)된 이후 보상비 지급

■ 향후에는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에 설계보상비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 추진배경 기술형 입찰 참여업체의 설계비용 부담 완화
- 주요내용 기술형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하여 기본설계 보상비의 일부를 실시설계 적격자를 선정한 때 지급
-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분부터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 042-481-7831)

2023년 7월부터 여행자는 모바일 App(「여행자 세관신고」)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여행자가 해당 App을 통해 과세대상 물품을 신고하는 경우, 자동 계산된 세액이 기재된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모바일 납부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세금납부가 가능해집니다.
- 또한,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성실신고자 편의 제고를 위해 신고부터 세금 부과·납부까지 모바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통관환경 구축
- **주요내용**
 - (모바일 납부 서비스 제공) 여행자가 과세대상 물품을 모바일 신고 시 납부 세액을 자동 계산하여 고지서 발급 및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납부 시스템' 구축·운영
 - (모바일 신고 확대) 현재 인천공항(T2)과 김포공항에서만 가능한 모바일 신고를 전국 공항만 세관으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7월 17일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 02-2100-2656)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도입되었습니다.

- 상장주식에 대한 투자를 허용하는 대신 각 종목별로 외국인 전체 10%, 외국인 1인 3%라는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금융감독원 사전등록을 요구하였습니다.
- 1998년 한도제한이 원칙적으로 폐지되면서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33개 종목이 외국인 보유 전체한도, 그 중에서도 2개 종목만이 외국인 개인별 한도 관리대상임에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약 30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사전 등록절차 없이 외국인의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하게 됩니다.

- 증권사에서 실명확인 등 절차를 거쳐 바로 계좌개설이 가능하고,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계좌정보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 법인에게 부여되는 표준화된 ID(Legal Entity Identifier)(‘11년 G20 도입)
- 기존에 투자자 등록을 한 외국인의 경우, 기존 ‘투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에도 외국인 전체한도*나 인별한도** 관리가 필요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현재와 동일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 (전체한도) 외국인 인별 ID 없이도 거래 정보를 통해 외국인 전체 지분 보유규모는 파악가능
** (인별한도) 2개 종목에 대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기준으로 별도 관리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추진배경**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글로벌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 투자 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규제를 과감히 개선
- **주요내용**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여 외국인 투자자는 금감원 사전등록 없이 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번호를 통해 한국증시에 투자 가능
-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 02-2100-2862)

혁신기업의 글로벌 선도기업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최고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혁신기업도 기업당 보증한도가 70억~150억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하기 어려웠습니다.
- 금번 보증한도 확대조치는 신보가 선정하는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과 혁신리딩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 기업당 최대 200억원 한도 내에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혁신기업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 확대

- **추진배경** 고금리, 경기둔화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에 대응하여 혁신벤처·스타트업에 대한 성장자금 지원 강화
- **주요내용** 혁신기업의 빠른 성장지원을 위한 최고보증한도를 200억원으로 확대
 - (혁신아이콘 지원 프로그램) 기존 150억원 → 변경 200억원
 - (혁신리딩기업) 기존 70억원 → 변경 200억원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 02-2100-297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병과(併科) 가능)하게 되어, 위법성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현재는 보이스피싱범을 잡더라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하고 있어 처벌이 약함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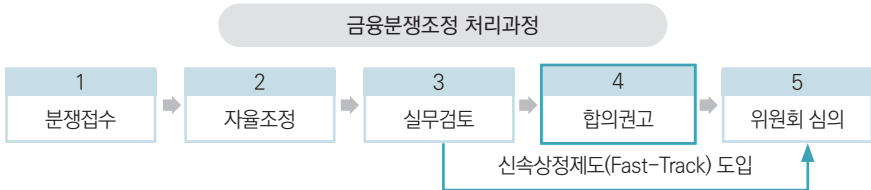
- **추진배경**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로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보이스피싱 범죄 자체에 대한 처벌수위도 낮은 수준임
 - * (‘18년) 2,547건 → (‘21년) 22,752건 (‘18년대비 약 9배 증가)
 - ** 현행 법은 계좌간 송금·이체된 보이스피싱에만 적용
- **주요내용**
 - (법 적용대상 확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定義)에 포함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 가능
 - (처벌수위 강화)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併科) 가능)
-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02-2100-2631)

금융분쟁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하여 분쟁처리기간을 단축하고, 분쟁조정위원을 추천방식으로 선정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공정성도 확보됩니다.

- 그간 금융 관련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분쟁조정결과에 대한 불만도 일부 제기되었습니다.
- 이에 금융분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신속상정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금융분쟁을 심의·의결하는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추가하여 독립성도 제고됩니다.
- 개정내용은 2023년 3분기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입법예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3.5.2.)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 **추진배경** 금융소비자 피해구제제도 실효성 제고(국정과제)
- **주요내용**
 - (신속성) 금융분쟁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상정제도 마련
 - (독립성)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 선정기준 추가
- **시행일** 2023년 3분기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 (☎ 02-2100-2992)

소비자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에서 기존에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쉽게 조회하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한 번에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등 신용대출 취급 주요 금융회사에서 받은 기존대출 대상

■ 옮길 수 있는 기존 대출은 54개 금융회사에서 받은 10억 이하의 직장인대출, 마이너스통장 등 보증·담보 없는 신용대출이며,

■ 대출비교 플랫폼 앱, 금융회사 앱을 이용해 총 15분 안에 금리, 한도 등에서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 저축은행 → 은행, 캐피탈사 → 저축은행 등 금융업권 간 갈아타기 역시 가능하며, 금융소비자는 자유롭게 원하는 대출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플랫폼, 다른 금융회사 앱에서 기존 대출 조회가 가능한 54개 금융회사】

금융업권	금융회사	계
은행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기업, 국민, 하나, 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케이, 카카오, 토스	19 (전체)
저축은행	SBI, OK*, 페퍼, 웰컴, 다올, 애큐온, 한국투자, JT친애, 신한, JT, KB, 모아, 대신, 키움, 예가람, 하나, 고려, HB	18
카드	국민, 롯데,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7
캐피탈	롯데*, 우리금융, 하나, 한국, 현대, BNK, DGB, JB우리, KB, NH	10

* OK저축은행, 롯데캐피탈의 경우 차세대 전산시스템 도입(7월~) 이후 지원 예정

고령자 등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소비자의 경우 주요 은행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알아탈 수 있습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 대출 인프라 구축

- **추진배경** 고금리 시기 국민의 이자부담 경감 및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은행 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 도입
- **주요내용** 기존대출 조회부터 유리한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시행일** 2023년 5월 31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2

교육·보육·가족



1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2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합니다.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별 맞춤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고 2025년 3월부터 학교에 도입합니다.
- 민간 파트너십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을 강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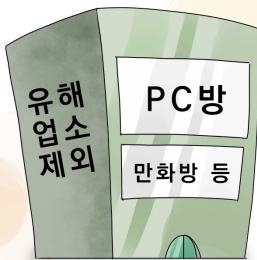
2 교육부

자세한 내용은 p.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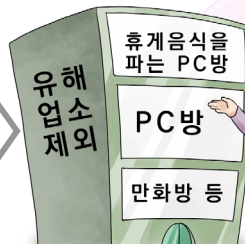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Before



After



학원 등
행정처분
기간중
폐원 등
금지

3 여성가족부

자세한 내용은 p.3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 시행일 : 2023년 6월 1일

Before

그동안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After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교육부 디지털교육전환담당관 (☎ 044-203-7054)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23.2월)에 따라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교육 전환이 본격 추진됩니다.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학습 콘텐츠 제공 및 교사의 맞춤 처방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하여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합니다.

* AI 등 에듀테크 기술을 교과별 특성에 맞게 반영하여 학생의 자기 주도 학습 및 거꾸로 학습(Flipped Learning) 등 다양한 교수학습법 활용을 지원하는 교과서

■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를 운영하며 AI 기반 코스웨어*를 활용한 교실 수업 혁신 및 교사의 역할 변화 등에 대한 성공 모델을 창출·확산해 나갑니다.

* 학생의 학습데이터 수집·분석 기능, AI 튜터 기능, 교사용 및 학생용 대시보드 등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 혁신을 선도하는 교사그룹을 선발하고 민관 파트너십에 기반한 집중 연수를 통해 하이터치*(High-Touch) 하이테크**(High-Tech) 역량을 강화합니다.

* 하이터치 : 교사의 역할 변화(지식전달자 → 학습 참여 유도 및 사회·정서적 역량 함양)

** 하이테크 :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학생별 최적화 교육

※ T.O.U.C.H 교사단 : (‘23년) 400명 → (‘24년) 1,200명 → (‘25년) 2,000명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SW·AI 교육 등 디지털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 캠프를 확대 운영합니다.

■ 늘봄학교 및 자유학기제·특성화고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기초·심화 과정을 개설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주요 내용

- **추진배경** 디지털 대전환 시대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 혁신을 통해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 구현’
- **주요내용** AI 디지털교과서 개발, 교원의 하이터치 하이테크 역량 강화, 시범교육청 중심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디지털 새싹 캠프 운영 등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044-203-6386)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편법행위 방지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23년 10월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 학원의 교육환경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현재 PC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PC방에서 휴게음식(주류 제외)을 판매'하는 업종 역시 유해업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건의에 따라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확정되기 전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하는 것 등을 금지함으로써 행정처분 회피 및 편법행위를 예방하고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 추진배경 학원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
- 주요내용 유해업소 제외 대상 시설에 'PC방+휴게음식점업' 추가, 행정처분 확정되기 이전 또는 진행중에는 폐원·폐소 신고 금지 등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 044-203-6364)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을 추가하고, 대학, 평생교육기관, 국가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대학 등 평생교육기관에서도 학령기 이후 성인 단계에서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 **추진배경** 급변하는 사회 환경과 개인 진로의 변동성이 증가함에 따라 생애 전반에 있어 진로개발에 대한 평생교육 필요
- **주요내용**
 - (성인 진로교육 정의)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함
 -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 044-203-6956)

그간 학생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학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처분가액 3억 원 → 5억 원 미만 등) 하였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사립대학 재산처분 규제 완화

- **추진배경** 사립학교의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해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기본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내용**
 - 처분할 수 있는 '교육용 재산'의 범위 확대
 - 교육부 고시로 정한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지, 교사 등 처분 가능
 - 학교 이전, 통폐합 시 연구시설, 교구 등 교육용 재산 처분 범위 확대
 - 학교법인의 재산관리 자율성 제고를 위해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 허가 대신 신고할 수 있는 대상 확대 (처분가액 현실화 3억 원 → 5억 원 등)
- **시행일** 2023년 6월 13일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 도입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 044-203-6262)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형교육이 가능한 ‘계약정원제’가 도입됩니다.

- 그간 기업이 지정한 대학(학과 또는 학부)에 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함으로써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나,
- ‘계약정원제’ 도입을 통해 대학원은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학부는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기업이 첨단분야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정원의 운영 도입

- **추진배경**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의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신속하게 양성·공급
- **주요내용** (계약정원제)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 이미 운영 중인 일반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신속하게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
 - (규모) 계약정원을 덧붙여 활용할 기존 일반학과 학생 정원의 20% 이내
 - (운영 기간) 대학-기업 간 약정기간 동안 운영 가능
- **시행일**
 - (학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 (대학원) 2023학년도 9월 학기부터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 044-203-6406/6407)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근로기준법」조항 중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등을 추가로 준용하는 일부 개정안이 올해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등을 준용하여 일정 부분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호해 왔으나, 현장실습생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였으나,
- 이번 개정으로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권익 침해 예방을 위한 산업체의 책무성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체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현장실습생이 더욱 두텁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내용

- **주요내용**
 - (근로기준법 준용 범위 확대)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및 각 조항 위반자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을 추가 준용
 - *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1호, 제114조제1호, 제116조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추가 준용 조항 중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에 따라 신고를 받는 사용자에게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학교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교원)은 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 02-2100-6422, 6427)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스톱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 스톱킹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 의료, 법률구조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가능해집니다.
- 3년마다 스톱킹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스톱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보급할 예정입니다.
- 공공부문에서의 직장 내 스톱킹 방지를 위해 스톱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개발하고 스톱킹 피해 진단도구를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 스톱킹 피해자는 1366센터(☎지역번호+1366) 상담 등을 통해 주거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등 스톱킹 피해자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 **추진배경** 스톱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21.4.20.)으로 피해자 보호법안 마련 필요성이 증가하고 최근 스톱킹이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스톱킹범죄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규정
 - 스톱킹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예방교육 실시 및 수사기관 사건담당자 필요교육 의무화
 - 사용자의 직장 내 스톱킹 예방 노력,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피해자 취학지원 근거 마련
 - 스톱킹피해자지원시설 설치·운영,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 교육 관련 규정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및 경찰의 현장 출동·조사 및 업무수행 방해자 과태료, 벌칙 등
- **시행일** 2023년 7월 18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등 포함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02-2100-6316)

특별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 등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만 9~24세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심리검사 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으로 지원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 고(高)위기로 유입될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사회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 불균형한 영양 섭취 등으로 인한 신체적 성장 지연, 무기력한 증상 및 약물 중독 등

■ 위기 청소년이어도 아동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인 경우 지원이 불가능했으나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변경협약」을 통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청소년정책 규제 혁신 간담회('22.7.6.), 특별지원 시·도 과장 및 유관기관 간담회('22.9.22.)

앞으로, 은둔형 청소년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녀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경 전	변경 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는 지원 불가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1.~3. (현행과 동일)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4. 일정 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신설)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추진배경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 지원비·상담비 등 현금 및 물품 지원 통해 건강한 성장 지원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만9~24세 저소득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선정기준 :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기간 : 1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학업, 자립 지원은 3년까지 지원 가능
- 신청방법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통해 위기로에 따라 대상자 선정, 기간, 지원 유형, 지원금액 차등 결정
- 지원내용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지원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원 이하
학업지원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 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월 15만원 (수업료)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자립지원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원 이하

지원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상담지원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법률지원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청소년 활동지원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등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0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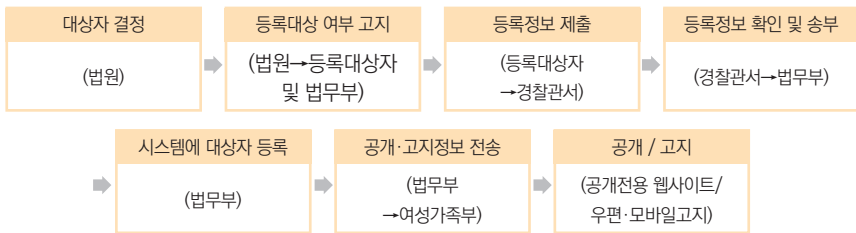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기관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 이름, 나이, 사진, 신체정보(키, 몸무게),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성범죄 요지, 성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 개정 법률 시행으로 고지기관으로 추가되는 기관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19만 2천 여개소이며, 대상기관은 우편으로 해당 행정동에 전입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제도

- (목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과 모바일 앱(성범죄자 알림e)을 통해 공개하고 지역 읍·면·동 주민에게 고지하여 성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도모
- (추진체계) (법무부)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고지, (경찰관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 기관
확대

- 추진배경 지역사회 내 아동·청소년 성보호 기반 강화
- 주요내용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추가
 - (기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가구,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의 장,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장
 - (추가)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학원법」 상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100-6416, 6409)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2023년 10월 12일부터 확대됩니다.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포함되며,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은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등으로 확대됩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 (목적)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사전차단 도모
 - (근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6조~제58조, 제60조
 - (대상)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병원, 체육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
 -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호에 따른 기관
- ※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성범죄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 내용

• 주요내용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에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포함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추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 교육감, 교육장이 학교, 유치원 등의 취업자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조회 가능

• 시행일

2023년 10월 12일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 02-2100-6443)

2023년 9월 1일부터 랜덤채팅과 관련한 애플리케이션 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 최근 청소년 성매매 접근 경로 가운데 랜덤채팅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반영하여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 기존에는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만 경고문구 게시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랜덤채팅앱 중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유해한 랜덤채팅앱에 해당하는 경우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게시물을 게시하지 않는 경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반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
매체물에 관한 고시」
개정 개요

- 추진배경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에 컴퓨터, 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이용되는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매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
- 주요내용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 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 외에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을 추가
- 시행일 2023년 9월 1일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크amp 운영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308, 6295)

국립청소년디딤센터에서 마약류 문제 청소년을 위한 치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 개요

- 국립청소년디딤센터는 정서·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9~18세)을 대상으로 상담, 치료, 보호, 교육 등을 지원하는 기숙형 치유기관으로,
 - 현재 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 대구청소년디딤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근 청소년 마약 범죄 증가에 따라 마약류 노출 피해 청소년의 치유·회복을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마약류 피해 청소년대상 치유크amp』를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용인)에서 시범운영합니다.

- 운영기간 : 11월 6일(월)~11월 17일(금), 11박 12일

- 참가대상 : 마약류 피해 청소년(9월~10월 모집 예정)

- 치유프로그램 : 중독문제치유프로그램(멘탈피트니스 등 치유회복 중심) 유관 전문기관과 협력운영

마약류 피해 청소년을 위한 치유크amp 시범운영

- 추진배경 청소년의 마약류에 대한 노출빈도 증가와 마약류 사범의 급증에 대한 범부처적 차원에서 예방 및 피해 청소년의 치유·회복에 대한 지원 필요
- 주요내용 의료시설을 통한 입원치료 등의 조치가 끝나고 추가적인 생활상 관리가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11박 12일의 집중적인 중독문제 치유프로그램 운영
- 시행일 2023년 11월 6일 ~ 11월 17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3

보건·복지·고용



1 보건복지부

자세한 내용은 p.45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시행일 : 2023년 하반기 (지자체별 상이)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 돌봄청년에게 일상 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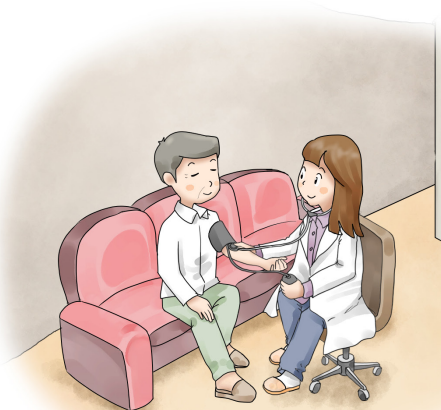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46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3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8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시행일 : 2023년 9월 1일(예정)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개인의 교육 · 훈련 · 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 · 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4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49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Before

지금까지 고액 · 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하여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였습니다.



공개 기준	
체납기간	2년
체납액	10억원

After

고용·산재보험료 고액 · 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공개 기준	
체납기간	1년
체납액	5천만원

5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50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Before

그동안은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After

전속성과 상관없이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6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p.51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시행일 : 2023년 5월 22일

Before

위험성평가는 어렵고 복잡했으며, 근로자 참여는 일부 과정에 한정되었습니다.



After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추가하고, 근로자 참여를 전 과정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빈도 · 강도법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체크리스트법

핵심요인 기술법

7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66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시행일 : 2023년 7월중

Before

지금까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인프라가 부족하였습니다.



After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를 확대합니다.



8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67

범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시행일 : 2023년 12월중

범정부 마약류 정보제공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 교사 · 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비대면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9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세한 내용은 p.68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시행일 : 2023년 9월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가 본격
시행됩니다.

-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심사할 예정입니다.



10 식품의약품안전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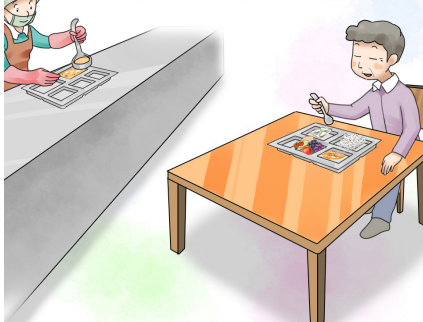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69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시행일 : 2022년 7월

Before

전국 20개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영양관리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After

68개 시군구의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급식위생·영양관리·지원을 확대합니다.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 044-202-3224)

질병, 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기본 서비스인 재가 돌봄·가사 서비스와 함께 심리 지원,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의 특화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 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소득 수준에 따른 적정부담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사업지역 및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 지원 대상 청·장년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등은 사업수행 지자체별로 별도 발표)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 2023년 사업 수행지역선정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7월 초 예정)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사회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필요
- **주요내용**
 - (대상) ① 돌봄 필요 중장년* ② 가족돌봄청년
* 질병, 사고로 인한 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지만, 주돌봄자가 없는 경우
 - (서비스) 재가 돌봄·가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등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제공방식) 지자체가 대상자에게 바우처를 발급,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지자체별 상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 044-202-3031)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료·돌봄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요양병원(시설) 이용 경계선에 있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방문 의료서비스(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등)가 확충되고, 다양한 의료·돌봄서비스(노인 맞춤형 돌봄, 방문건강관리 등) 간 연계가 강화됩니다.

▣ 시범사업은 12개 시·군·구*에서 시행되며, 2023년 7월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됩니다.

* 광주 서구·북구, 대전 대덕구·유성구, 부천, 안산, 진천, 천안, 전주, 여수, 의성, 김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실시

- **추진배경** 의료와 건강관리·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건강한 노후생활이 가능한 기본적인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모델 정립
- **주요내용**
 - (사업 대상)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등급외자 등 일시 의료·돌봄수요군, 급성기·요양병원 퇴원환자 등 돌봄 필요도가 높은 노인
 - (사업내용)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간 연계
 - (방문형 의료서비스) ①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연계 및 방문의료지원센터 구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방문의료 서비스 확대, ②보건소 방문건강관리·치매안심센터 연계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사업별* 지침·예산 연계 등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주거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 사회서비스 등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 044-202-2402, 2409)

2023년 9월 25일부터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개정 의료법 시행)

* 수술이 지체되면 위험한 응급수술이나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등은 제외

■ 촬영한 영상은 범죄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의료분쟁 조정 또는 중재 절차를 위한 경우 또는 환자, 의료진 등 촬영된 사람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과 제공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에 환자와 의료기관을 위한 CCTV 설치·촬영 세부 사항을 추가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의료법[법률 제1884688호, 2021.9.24.일부개정]>제38조의2

수술실 내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 **추진배경**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 도모
- **주요내용**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
 -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 촬영 영상은 수사기관, 법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촬영대상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열람 및 제공 가능
-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 044-202-72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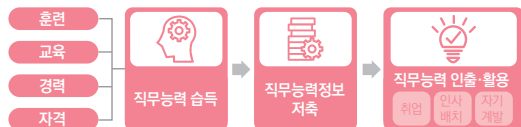
개인의 교육·훈련·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 및 경력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무능력은행제가 2023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 개인은 직무능력계좌에 저축된 직무능력에 대해 인정서를 발급받아 본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취업 및 경력개발 등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 기업은 개인이 제출한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채용·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 **추진배경** 직무능력 중심사회 구축을 위해 개인이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주요내용**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시행일** 2023년 9월 1일(예정)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 044-202-7359)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인적사항 공개기준이 강화됩니다.

- 금년 하반기 변경되는 제도에 따르면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 * (기존 공개 대상)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 금번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를 통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체납자의 적극적인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겠습니다.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 **주요내용**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 사항 공개기준을 아래와 같이 강화

구분		기존	개편 후
공개 기준	체납기간	2년	1년
	체납액	10억원	5천만원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 044-202-8838)

2023년 7월 1일부터 하나의 주된 사업장이 아닌 여러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유로 업무상 재해 시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지 못하던 노무제공자들도 산재보험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4개 직종을 신규 적용*(현행 14개→18개)하고, 기존 화물차주 등 6개 직종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규 직종) 건설현장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24.1.1.부터 적용)

** (범위 확대) 쿼서비스기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일반화물차주,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신협·새마을금고는 '24.1.1.부터 적용)

※ 보험설계사(교차모집, 신협·새마을금고 등) 등 일부 직종은 20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예정(검토)

■ 이를 통해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추진배경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 주요내용 특고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으로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 보호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 044-202-8923)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과 상시평가가 새로 도입되고,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새로운 위험성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23.5.22. 개정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 위험요인의 파악과 개선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였고, 위험성 결정 시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반드시 숫자로 계산하지 않고도 재해사례, 근로자 경험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정과 결정 단계를 통합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도 쉽고 간단하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Checklist)법,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등을 추가로 도입 하였습니다.
- 유해·위험요인의 변동이 잦은 사업장은 매년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감안하여 상시평가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추진배경** 안전·보건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는 위험성평가 제도가 어렵고 복잡하여 실시하기 어렵고, 매년 사업장 내 전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정기평가에 대한 부담과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 **주요내용** 중소기업 사업장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쉽고 간편한 방법을 추가 도입 (체크리스트,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 OPS 등), 유해·위험요인 변동이 잦은 사업장을 위한 상시평가 신설, 위험성평가 모든 과정에 근로자 참여 보장, 평가 결과에 대해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한 공유 등
-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1)

2023년 7월 1일부터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보장합니다.

- 기존에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고용보험법」 제76조의2),
 - 2023년 7월 1일부터는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 지원>모성보호 육아 지원(예정)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추진배경** 비정규직 근로자의 유산·사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고용형태상 차별 없는 모성보호제도 활용
- **주요내용**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해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 044-202-7311)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이 운영됩니다.

■ K-디지털 트레이닝은 삼성·KT와 같은 선도기업이 직접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는 현장 프로젝트 중심의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직업훈련사업입니다.

■ 그간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만 운영하였으나,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를 반영하여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을 추가로 운영합니다.

*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훈련과정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에 참여하여 신기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 규정 일부개정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추진배경 첨단산업·디지털 분야 실무역량 향상을 위해 추가 훈련을 원하는 훈련생들의 수요 증가
- 주요내용 중·고급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내의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라면 누구나(카드잔액 무관, 기존 훈련참여 이력 무관)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1회 참여 가능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 044-202-7365)

그간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중장기적인 관점의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해 온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사업이 개편됩니다.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대상 연령을 만 45세 이상에서 만 4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여 보다 이른 시기에 경력설계 컨설팅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 상담 참여자에게 의무 부과되었던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을 폐지하여 비용 부담 없이 상담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장년 경력설계 경력설계 제도 개편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추진배경** 경력설계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원 가능 연령을 확대하고, 참여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자부담 면제 등 제도 개편
- **주요내용**
 - (지원 대상 확대)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참여 부담 완화) 자부담금(상담 비용의 10%) 폐지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이후 개설되는 상담 과정부터 적용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그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해 온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23년 7월 1일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체불근로자의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천만원으로 지원한 융자한도를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으로 상향합니다.
- 이와 병행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융자 상환기간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으로 완화합니다.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지원대상 확대

- **추진배경**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규제 완화
- **주요내용**
 - (지원기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장
 - (융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천5백만원
 - (상환방법)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 044-202-7563)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제도를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합니다.

* 사업주가 사업장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근로자에게 체불임금 등을 대신 지급해주고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

- 또한, 지원대상의 소득요건을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에서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로 변경하여 신청서 접수 단계에서 요건 충족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더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으로 보았던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하도록 변경합니다.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응차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개편

- **추진배경**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제도 활성화 추진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 (소득요건) 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의 월평균보수 월350만원 이하
 - (규정정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고용노동부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TF (☎ 044-202-7330)

2023년 하반기에는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 산업인 조선·반도체 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합니다.

- 「업종별 취업지원허브」에서는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하고,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산업계의 구인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부울경, 전라권 등 광역 조선업취업지원체계 구축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추진배경** 주요 산업은 입지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산업권역(Industry-Belt)을 형성하며 성장함에 따라 고용서비스 대응체계 전환
- **주요내용** 산업동향·채용수요 모니터링,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수료자 매칭,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밀착 제공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혁신TF (☎ 044-202-7341)

2023년 8월부터 구인·취업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사업을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로 확대 운영합니다.

■ 고용복지+센터에서는 구인애로 기업과 구직자 등에 대해 「진단-컨설팅-채용-취업」에 이르는 적극적 고용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기업에는 고용 여건 개선 등을 통한 구인 애로 요인의 근본적인 해소를, 구직자에게는 직업역량 제고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도약을 지원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기업·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확대 운영

- **추진배경** 구인애로기업과 구직자의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력 강화
- **주요내용**
 - (기업) 구인기업의 여건 및 특성 진단 결과를 토대로 구인애로유형별 인사노무-산업안전-채용 컨설팅 및 맞춤형 서비스 연계 등 채용 서비스 밀착 제공
 - (구직자) 구직자 역량진단 및 유형분석, 노동시장 정보 분석, 경력개발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종합 제공
- **시행일** 2023년 8월
 - * 2023년 3월 기업 35개, 구직자 24개 고용센터 → 2023년 8월, 48개 관서 확대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044-202-7370)

2023년 7월 1일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업의 신고 방법이 개선됩니다.

-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의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신고를 하도록 「고용보험법」 제4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다만 재난 상황으로 대면 출석이 어려워 실업신고를 신속히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뉴스·소식>보도자료>『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추진배경** 재난 등으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 신고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
-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실업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
- **시행일** 2023년 7월 1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제도 적용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 044-202-8893)

2023년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①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및 ② 7개 직종의 근로자가 2인 이상이면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인 사업장까지 적용이 확대됩니다.

* (과태료) 1,500만원(휴게시설 미설치), 1,000만원(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 사업장 적용범위 비교

2022년 8월 18일 시행	2023년 8월 18일 시행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 현장)	- 상시근로자 20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제도 확대

- 추진배경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재규정(과태료 부과) 도입
- 주요내용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사업장 확대
- 시행일 2023년 8월 18일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2023년 7월 1일부터 굴착기 관련 신설된 안전기준이 시행됩니다.

■ 굴착기는 건설업 사망사고 1위* 기계·장비로서, 부딪힘, 맞음, 깔림·뒤집힘 등 가장 빈번한 유형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하여

* 최근 3년간 건설업 기계·장비 사고사망자 293명 중

- ① 굴착기 63명(21.5%), ② 고소작업대 62명(21.2%), ③ 트럭 52명(17.7%),
④ 이동식크레인 33명(11.3%), ⑤ 타워크레인 13명(4.4%), ⑥ 항타·항발기 10명(3.4%) 순

■ ①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추진배경** 건설업 기계·장비 사망사고 1위인 굴착기 관련 안전기준 마련
- **주요내용** ① 후사경·후방영상표시장치 작업 전 부착·작동상태 확인
② 버킷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③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규정 신설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전부개정

고용노동부 건설안전예방정책과 (☎ 044-202-8940)

1994년 제정 후 약 3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개정되지 않아 현실과의 괴리가 심했던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을 기술발전, 산업변화에 발맞추어 현실에 맞게 정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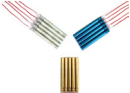
- 개정안은 낡은 규정은 삭제하고, 신기술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한편, 「총포화약법」등 관계법령 간 정합성을 높였습니다.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밝혔듯이, 안전보건 기준을 변화하는 산업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전부개정

- **추진배경** 화약 제조·판매업계, 학계 등에서 낡은 규제개선 요구
- **주요내용**
 - (낡은 규정 삭제) 2000년대 이후 생산·취급이 중단된 '도화선발파' 삭제
 - (신기술 반영) 정전기 등에 취약한 전기발파에 비해 안전한 '비전기발파', '전자발파' 안전기준 신설
 - (관계 법령) 법적 근거가 없는 '화공작업소' 기준은 삭제하고, 발파 현장이 아닌 공장에서 운영하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 폭약을 기폭하는 방법에 따른 발파방법 구분 〉

① 도화선발파	② 전기발파	③ 비전기발파	④ 전자발파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 간 불꽃으로 점화되는 재래식 발파방법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	전기의 사용 없이 내부에 화약이 코팅된 튜브를 따라 불꽃으로 점화	전자(electronic) 신호를 원격으로 통신하여 작동 시킨 제어장치가 기폭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40)

최근 사망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미비한 필수 안전기준은 보완·신설하며, 일부 법령 체계·자구 등을 정비하여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안전기준의 현장 작동성을 높여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로 인한 산재사고를 예방합니다.

- (설계도서) 시공 중 설계·시공방법 변경 시 구조검토 의무를 신설합니다.
- (거푸집동바리) ‘목재’, ‘비계용강관’ 동바리 안전기준과 재료의 강도기준 등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하는 한편,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을 신설합니다.
- (굴착면 기울기) 세부 기준은 「건축법」 기준과 일치시키고, 현장 특성에 따라 별도 구조안정성 검토 결과 적용도 허용하여 규제를 현실화합니다.

앞으로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11월)」 취지에 맞게 안전기준을 산업현장의 현실에 맞게 지속 개선해 나갑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붕괴사고 예방 안전기준 (안전보건규칙) 정비

- **추진배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및 규제개선 요구 이행
- **주요내용**
 - (용어정비) 건물, 건축물, 구축물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 등 다양한 표현을 ‘구축물 등’으로 일원화하는 등 해석상 혼선 방지
 - (구조검토) 설계·시공법 변경, 흙막이지보공 조립 시에도 구조검토 의무 명시
 - (거푸집동바리) ① 법령 체계를 현장의 작업순서에 맞게 정비, ② 현장에서 주(主) 동바리 재료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비계용 강관 등 개별기준 삭제, ③ 현장에서 알기 어려운 인장강도, 신장률 등 세부기준 삭제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도록 규정, ④ 데크플레이트 설치기준은 핵심 위주로 명시
 - (굴착면기울기) 법상 굴착면 기울기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 법령과 일치시키고, 별도 안정성 검토 값 적용도 가능토록 규정하여 규제 현실화
 - (해체공사) ‘약천후 시 작업중지’ 등 중복 규정 삭제 및 ‘작업지휘자 지정’, ‘근로자 출입금지’ 등 필수 안전기준 보완·신설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 044-202-8937)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가 2023년 7월 1일부터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 경과조치*가 2023년 7월 1일자로 종료되어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공사부터 적용됩니다.('19.1.15. 전부개정, '20.1.16.「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적용례) 개정규정은 공사금액에 따라 차등 시행, 시행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착공공사는 종전 규정 적용

- ▶ 100억원 이상 : 2020년 7월 1일
- 8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 2021년 7월 1일
-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 2022년 7월 1일
-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 2023년 7월 1일

2023년 7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 50억원 이상~120억원 미만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는 전담으로 선임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추진배경 사고재해가 다발하는 건설업의 안전을 강화
- 주요내용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규모 확대(50억 이상)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044-200-6233)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국내 연안 바다(최대 100km)에서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가 시행 됩니다.

■ 올해는 어선, 화물선 및 여객선 등 바다내비*가 설치된 내항선박 100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됩니다.

* 전용 단말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 충돌·좌초 위험경보, △ 실시간 기상정보 및 전자해도 제공, △ 선박 간 영상통화, △ 긴급구조(SOS) 요청발신, △ 어선 자동 출입항 기능 등 제공

■ 7월부터 의료기관 간 화상통화를 위한 테블릿, 혈압기, 혈당계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이 포함된 원격의료키트를 선박에 순차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며,

■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LTE-M 동영상 통신(테블릿 및 바다내비 단말기 활용)을 통해 실시간 의료기관의 지원 또는 건강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LTE-M을 활용한 내항선 맞춤형 원격의료 지원 기반을 조성하고 점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을 위한 기술.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게시 예정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내항선박 종사자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LTE-M을 활용한 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주요내용** LTE-M 통신망, 바다내비 단말기 등을 활용하여 선원의 부상·질병에 대한 응급처치 지원 및 건강상담 등 제공
- **시행일** 2023년 7월 중(잠정)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9)

2023년 7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해 총 3곳으로 확대합니다.

- 특히 신설 충청권 중독재활센터를 청소년 중심 센터로 운영할 예정으로, 이를 위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업무 협력을 추진해 미국 내 청소년 중독자 재활과 예방사업에 대한 경험·지식을 공유받아 국내 상황에 맞춰 도입할 계획입니다.

* 1963년 설립되어 미국 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민간 마약류 치료·재활기관으로, 뉴욕주에 60개 이상 시설 운영

- 향후,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추진으로 지역적 불균형을 낮추고 마약류 중독자가 적극적으로 재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마약류 사회재활
지원을 위한
중독재활센터 확대

- 추진배경 마약류 사회재활 강화를 위한 재활인프라 확대
- 주요내용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1개소를 충청권(대전)에 추가 설치
* 청소년 중심센터로 특화운영
- 시행일 2023년 7월중

법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 043-719-2582)

2023년 12월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마련됩니다.

- 교사·학부모, 청소년, 중독자,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교육, 비대면 상담, 홍보 및 정보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마약류 오남용의 정신·신체적 피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메타버스 기반의 마약류 예방교육, 상담, 체험(게임 등) 등 다양한 체감형 콘텐츠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법정부 마약류 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강화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필요
- 주요내용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시행일 2023년 12월중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수리 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 043-719-6172)

수입식품 전자심사24(SAFE-i 24) 시스템을 본격 운영하여 수입신고 서류검사를 디지털 방식으로 자동심사할 예정입니다.

- 통관 시 수입식품 검사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실험실검사(정밀검사, 무작위 검사)를 거치게 되는데,
 - 서류심사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 시스템을 통해 365일·24시간 자동심사로 전환됩니다.
- 규칙 기반으로 260여개의 검사항목을 정확하게 자동 검토하는데,
 - 자동 수입신고수리는 식품첨가물부터 2023년 9월 이후 먼저 적용됩니다.
- 향후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으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신고 수리 본격 시행

- 추진배경 수입신고 증가에 따른 업무과중의 한계 극복 및 정확·신속한 행정 서비스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술을 통한 업무 자동화 추진
- 주요내용 통관단계 서류검토 및 신고내용 적·부 판단, 수입신고 수리 절차를 디지털 규칙 기반으로 정확·신속하게 자동화하는 수입식품 전자심사24 본격 시행
 - * (절차) 신고내용 자동 검토·수리 → 수입신고확인증 자동 발급 → 세관 전송
 - * (적용대상) 식품첨가물부터 적용하여 농·수산물, 가공식품 등으로 단계적 확대
- 시행일 2023년 9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043-719-2257)

2023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약 1,600개소, 32,000여명)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이 확대됩니다.

* ('22년) 전국 20개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837개 노인·장애인시설에 대해 급식관리 지원

-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센터 소속 영양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급식위생·영양관리 지도, 질환 맞춤형 식단, 제공, 대상자별 교육 및 이용자별 영양관리 등을 제공합니다.
- 앞으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완료하여,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보도자료>노인·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사회복지급식 안전관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영양관리 지원을 본격 시행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22.7.28.)
- **주요내용**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여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사회복지 시설 급식소에서 양질의 급식과 적절한 영양관리를 통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
- **시행일** 2023년 7월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 043-719-2855)

축산물 HACCP* 적용 확대를 위한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이 모든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로 확대됩니다.

* 식품·축산물의 원료 관리, 제조·가공·유통·판매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 또는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

** 식육가공업소 :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보다 영세한 업체에 우선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6월)에는 지원대상을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 중, 22년 매출액 2억 미만인 업소로 제한하였습니다.
- 하반기(7월~)에는 지원대상을 모든 소규모 식육가공업소·식육포장처리업소로 확대합니다.
- 지원금액은 최대 1천만원으로, 이는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설치자금(최대 2천만원)의 50%입니다.(나머지 50%는 영업자가 부담)

참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공지사항

2023년도 「HACCP 위생안전시설개선자 금 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3년 1월 ~ 12월(사업예산 40억원)
*보조금 소진 시까지 시설개선자금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 (상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 미만인 소규모 업소 우선 지원(~6월)
 - (하반기) 축산물 HACCP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모두 적용(7월~)
 - * (제외) 2022.12.31. 이전 HACCP 인증받은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이미 동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및 전년도 연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업체
- **지원내용** 최대 1천만원 지원
(예시) 시설개선에 2천만원이 소요될 경우, 1천만원 국고지원 1천만원 자부담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식품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 043-719-2105)

집단급식소의 효율적 운영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일부 식품에 대해 제품정보 기록으로 보존식 보관을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3-32호, '23.5.22.)

■ 그간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제공한 모든 식품을 매회 보존식으로 보관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급식 시 완제품 형태 그대로 제공되는 가공식품(일부 실온제품* 및 병과)은 보존식 보관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음료류(커피, 주스, 콜라 등), 면류(컵라면, 생면 등), 과자류 등

- 다만, 보존식 보관이 제외되는 식품은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제품을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정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 전문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 **추진배경** 효율적 급식소 운영 도모 및 음식물 쓰레기 저감, 처리비용 절감과 환경오염 문제개선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대상 개선
- **주요내용** 집단급식소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완제품 그대로 제공한 일부 실온제품 및 병과) 지정 및 기록관리 사항에 대해 신설
-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 043-719-2621)

임상정책과 (☎ 043-719-1885)

앞으로는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이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는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이 가능하였지만, 오는 10월부터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사용을 허용하여 환자의 치료기회가 보다 확대됩니다.
- 의사가 식약처에 치료목적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식약처에서는 심사를 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면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승인하게 됩니다.

국외 임상시험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 **추진배경**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대체 치료 수단이 없는 응급환자의 치료기회 확대
- **주요내용**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을 치료하려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아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 043-719-3752)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가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임상시험, 인허가 단계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제품 개발 전주기에 걸쳐 종합적인 기술지원을 제공합니다.

* 사업자 :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서울시 여의도구 국회대로 786 5층)

■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 경쟁력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3년간 국내외 임상, 인허가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집중 지원하는 K-의료기기 메가(MEGA) 프로젝트(3·3·3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 K-의료기기 메가(MEGA, MEdical device Go Abroad) 프로젝트 : 국산 의료기기에 대해 인허가부터 해외시장 진출 등까지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또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부터 판매까지 관련 제도·절차 등이 궁금한 신생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 상담·교육을 제공하고, 산·학·연·병 간 기술정보 공유를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합니다.

■ 아울러, AI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등의 개발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 영상’으로 이루어진 임상 표준데이터셋을 구축하여 임상시험, 성능평가와 연계해 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사)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누리집(swmd.gosha.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 **추진배경** 디지털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 **주요내용**
 - 제품 개발부터 해외수출까지 전주기에 걸친 종합적인 기술지원 등 실시
 - AI 기반 의료기기 등 인허가 지원을 위한 임상표준데이터셋 구축·제공
- **시행일** 2023년 5월 24일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 043-719-1734)

세척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 2종, 3종'에서 '용도'로 변경됩니다.

* 1종 → 과일·세척용, 2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 → 식품제조·가공장치용

■ 이번 개정에 따라, 젓병 세척 용도의 세척제는 유형을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로 변경하는 등 영업자는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소비자는 사용용도에 따라 쉽게 세척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일반홍보물>세척제 유형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소비자가 알기쉬운
표기로 세척제
유형표시 변경

- **추진배경** 기존 숫자개념의 유형 명칭을 소비자,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척제 대상으로 유형 명칭 개정
- **주요내용**
 -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표시를 변경(미리 적용하여 표시 가능)
 - * 1종 → 과일·세척용, 2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 → 식품제조·가공장치용
 - 제품명·유형에 '1종, 2종, 3종'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
 - 젓병, 그릇 등을 세척한다면 식품용 기구·용기용으로 세척제 유형 변경
 - 2023년 7월부터 전산시스템(식품안전나라 등)에 변경되는 유형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통계청 행정통계과 (☎ 042-481-6991)

2023년 10월에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등 모든 연금데이터를 연계하여, 국민 전체의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사각지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금통계를 공표합니다.

- 연금통계 공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보장 정책 수립을 정확한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 연금통계 결과는, 2023년 10월 이후 통계청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등을 통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보도자료>「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22.4월)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 **추진배경** 초고령 시대에 노령층 복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연금통계 개발
- **주요내용**
 - (개발방향) 모든 공·사적 연금*을 연계하여 개인·가구별 연금 가입·수급 및 미수급 현황 통계를 작성
 - * 기초·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 (작성방법) 각 부처의 연금데이터를 통계청의 통계등록부를 기준으로 연계하여 통계지표 작성
 - (작성항목) 개인·가구 특성(성·연령, 경제활동, 주택소유, 가구유형 등)별 연금 가입·수급현황 및 미수급 현황 등
- **시행일** 2023년 10월 연금통계 공표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4

환경·기상



1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82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시행일 : 2023년 9월 25일

Before

'22년 9월 25일부터 7개 분야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After

'23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10개
분야로 확대합니다.

에너지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의 이용·개발

+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
가축분뇨
처리시설

2 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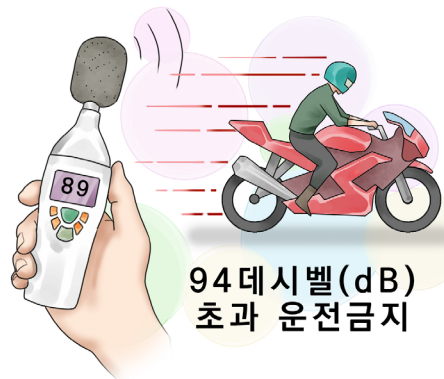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83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해집니다.

• 이륜자동차의 소음중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의 도입.



94데시벨(dB)
초과 운전금지

3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84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시행일 : 2023년 5월 15일

Before

그동안 홍수정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After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 방지를 위해 이해하기 쉽도록 맞춤형 홍수정보를 확대 제공합니다.



4 환경부

자세한 내용은 p.85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시행일 : 2023년 12월 28일

Before

그동안 공동주택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는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수거불안이 지속되었습니다.



After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하여 공공성과 안정성을 높입니다.



5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96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시행일 : 2023년 12월 14일

Before

수족관 등록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학대 행위만 규제되었습니다.



After

수족관 운영이 허가제로 강화되고, 수족관 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금지행위가 확대됩니다.



6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99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시행일 : 2023년 6월 15일
(수도권 시범운영)

Before

종전에는 극한 호우시 재난 문자를 보내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After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 수도권 시범운영(23) → 전국 확대(24)



7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100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시행일 : 2023년 7월

Before

기상기후데이터 이용 목적에 따라 각각의 사이트에서 API 서비스 제공하였습니다.



After

기상기후데이터(150여종)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곳에서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55)

2023년 9월 25일부터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가 확대 적용*됩니다.

- * 2023년 9월 25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됨
- * (기존 적용사업, '22.9.25.~) ① 에너지 개발, ② 산업단지 조성, ③ 도시개발, ④ 수자원개발, ⑤ 항만건설, ⑥ 산지개발, ⑦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새로 확대·적용되는 3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합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합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 목적 탄소중립 내재화 수단으로 국가 주요 계획·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후변화로 받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대상)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 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정책계획 및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
 - (평가) 기후전문가 및 기후 전문가관(KEI, 온실센터 등 7개 검토 기관*)에서 사업별 실효적인 감축과 적응방안을 수립하였는지 검토
 - * 한국환경연구원(총괄),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통계), 국립환경과학원(측정),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적응), 한국환경공단(감축), 국립생태원(생태영향), 국립기상과학원(기후예측)
 - <감축> 사업별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방안의 실효성 검토
 - <적응> 사업별우선 관리 리스크를 도출하여 수립한 적응방안의 적절성 검토
- 시행일 2023년 9월 25일

이륜차 배기음 튜닝, + 5dB 이내만 가능

환경부 교통환경과 (☎ 044-201-6928)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도입합니다.

* 제작차 인증단계에서 측정한 소음 결과 값 보다 5데시벨 초과 금지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 값보다 5데시벨을 초과하여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 아울러,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조회할 수 있도록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에서 지원합니다.

운행 이륜자동차 제작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 **추진배경**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급증으로 이륜차 소음으로 인한 교통 호소 민원의 급증, 이에 지자체·국회 등 소음허용기준 강화 건의
* 소음민원 급증 : 2018년 768건 → 2019년 935건 → 2020년 1,473건 → 2021년 2,154건
- **주요내용**
 - 이 법 시행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부터 제작 인증 배기소음 결과 값 + 5dB를 초과 운행할 수 없고,
 -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이 법 시행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할 때 적용됨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044-201-7662)

하천변 친수시설(둔치, 하천변 주차장, 자전거 도로 등)을 이용하는 시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이 확대됩니다.

-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하천수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2023년에는 정보제공지점이 지난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됩니다.
- 또한,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하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으나
 - 올해부터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표기하여 정보 수신자가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설명 환경부 선제적·체계적 홍수피해 방지대책 발표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 **추진배경** 하천변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 불편 방지
- **주요내용**
 - 홍수정보 제공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
 - 홍수정보 제공 내용을 이해하게 쉽게 표현을 개선
 - * ‘○○교 관심 수위 초과’ →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 **시행일** 2023년 5월 15일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 044-201-7422)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하여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거를 공공 중심으로 전환합니다.

*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

■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제도로서,

* 수도권 폐비닐 수거거부('18년상), 폐지 수거거부 예고('20.2월), 폐지 압축상 적체('22.10월) 등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공동주택 및 수거업체와의 계약 당사자가 되어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설명>(자원순환)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④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 **추진배경** 재활용품 가격 하락, 수급 불안정에 따른 수거 대란의 우려 방지로 안정적 재활용폐기물 수거체계의 확립
- **주요내용**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
- **시행일** 2023년 12월 28일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환경부 기후적응과 (☎ 044-201-6965)

홍수·가뭄·산불 등 극심해지는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해 기존 제3차 적응대책에 현장중심의 액션플랜을 강화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년~’25년)」을 하반기부터 시행합니다.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23.6.22)

- 과거 최대 강수량에 미래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까지 추가로 감안한 기후위기 적응 인프라(대심도터널, 방파제 등)를 확충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보다 미리 홍수·가뭄 예·경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 또한, 지역별 기후리스크를 시각화한 기후위험지도를 종합플랫폼에 올려 국민들이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입니다.
-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지역·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실효적인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세부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매년 과제별 이행실태를 국민과 함께 점검(국민평가단)하여 적응대책의 실행력도 높여갈 것입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에 게시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 **추진배경** 극심해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존 적응대책 강화
- **주요내용**
 - 온실가스 농도 변화뿐만 아니라 인구·경제성장을 등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한 종합적 미래 기후변화 예측으로 과학적 기반 고도화
 - 기후재난 대응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홍수예보, 폭염·한파 영향 예보, 산불·산사태조기경보 등 예·경보 체계 고도화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국민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반지하 등 재해 취약 주택 정비, 기후적응형 품종·재배기술 개발 등
 - 적응대책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지자체, 산업-금융 연계 방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마련
- **시행일** 2023년 6월 22일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인하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 044-201-6706)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합니다.

* 정책융자 대출금리 : 2023년 2분기 3.56% → 3분기 1.56~2.56%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미래환경산업육성,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대비 1%p 감면됩니다.

■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 1%p 추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합니다.

* 시설 신·증설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4.17% 이상 감축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 금리인하 시행

- 추진배경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인건비 및 원자재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 이자부담 가중 및 자금경색 우려
* 정책융자 대출금리 : 2022년 1분기 1.82% → 2023년 2분기 3.56%
- 주요내용 환경부는 녹색산업 성장 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기존 대비 최대 2%p 인하

사업명	현행 금리 (‘23년 2/4분기 기준)	인하 금리 (‘23년 2/4분기 기준)	
미래환경산업육성	3.56%	2.56%	
친환경설비투자		감축기준 미 충족시	감축기준 충족시
		2.56%	1.56%

- 시행일 2023년 6월 7일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환경부 통합허가제도와 (☎ 044-201-6717)

2023년 7월 1일부터 시멘트제조업(소성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한정)이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포함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 질소산화물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허가기준이 최대 56%(270→118ppm)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허가유예기간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부여되므로,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들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환경오염시설 관련 10개 인·허가를 통합하고 기술 특성과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는 맞춤형 허가제도입니다.

- 시멘트제조업이 통합허가 대상이 되면서 사업장의 행정부담은 낮아지고 환경관리 수준은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 대상 추가

- **추진배경** 시멘트 제조업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적용 필요성 지속 논의
- **주요내용**
 - (적용시기) 2023년 7월부터 적용, 적용 시기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부여
 - (하위법령) 시멘트 제조업 통합허가시 적용할 ①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 설치관리기준, ② 오염물질등의 측정·조사 기준, ③ 최대배출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 개정('23.7월)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예정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으로 악취관리 강화

환경부 대기관리과 (☎ 044-201-6907)

악취방지법 일부개정(’23.3월, 시행 ’23.9.29.)에 따라 2023년 9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기술진단 대상 확대 등 악취관리를 강화합니다.

-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권고하면 시·도지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저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환경시설의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진단 대상을 확대하고 기술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 악취관리 강화

- **추진배경** 악취관리 강화를 위해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
- **주요내용**
 - 악취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의무화
 -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대상 확대 및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악취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 규정 신설
 - 악취배출사업장의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 마련
-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 044-201-7657)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가 기존 141개 읍·면·동에서 낙동강권역을 추가한 591개소로 확대됩니다.

* 우수관망, 배수펌프장 등 도심지에 내린 빗물의 배수에 관여하는 시설

- 2023년 5월부터 홍수위험지도 시스템에 접속하여 낙동강권역에 30, 50, 100년 빈도의 강우 시나리오를 적용한 침수 예상도를 열람하여 재해 대비를 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500년, 과거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 또한, 2023년 말까지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하여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낙동강권역 도시침수 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홍수재해 위험에 대비한 위험지도의 대국민 공개 추진
- **주요내용** 낙동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작성을 완료하여 591개 읍면동에 대해 온라인 서비스를 통한 대국민 제공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금지)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4)

그간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 관리 미흡,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 등 기존 등록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 허가제로 전면 전환됩니다.

■ 2023년 12월 14일부터 신규로 동물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유동물 종별 서식환경, △전문인력, △질병·안전관리 계획, △휴·폐원 시 동물 관리계획 등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등록된 동물원은 2028년 12월까지 개정 규정에 따른 허가요건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동물원·수족관 허가 및 검사 시에는 동물생태 및 복지 등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여 서식환경의 적정성 등 요건 준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검사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제고 및 질병·안전 관리를 위해 무분별한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부적절한 동물 체험행위, 이동전시행위는 금지합니다. (부적절한 체험행위 등 구체적 내용은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설명]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중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 추진배경 동물 질병·안전관리 취약, 보유동물 복지 확보 한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면서 그 관리체계를 강화
- 주요내용 동물원 허가제 전환,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점검하는 검사관제 도입, 부적절한 체험 및 이동전시 행위 금지, 동물원 근로자 법정교육 실시 등
-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 044-201-7244)

2023년 12월 14일부터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살아있는 야생동물(포유류 등)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 다만, 일부 위험하지 않거나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우려가 적은 종, 공익적 목적의 시설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예정입니다.(전시금지 예외 종 및 시설은 야생생물법 하위법령으로 별도 규정 예정)
- 또한, 야생생물법 공포(22.12.13.)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일 전인 2023년 12월 13일까지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의 종, 개체 수 등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할 수 있습니다.

- 전시금지 적용 유예의 경우에도 동물원·수족관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적절한 체험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하는 행위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설명]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中 야생생물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추진배경 동물 서식환경이 미흡한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금지 추진
- 주요내용 동물원 이외 시설에서 야생동물(포유류 등) 전시행위 금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등
-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 전시행위 금지 적용 경과조치 : 기존 전시자의 경우 2023년 12월 13일까지 시·도지사에 신고한 경우 신고동물에 한해 2027년 12월 13일까지 유예

지정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시행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044-201-7364)

폐기물의 적법처리 감시 강화를 위해 2023년 10월 1일부터 지정폐기물* 처리 전 과정의 현장정보 전송이 의무화됩니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2.1.7.개정')

*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또는 유해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할 때마다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제출함은 물론, 앞으로는 폐기물처리 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해야 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 (수집·운반자) 수집·운반차량의 GPS 위치정보

(처리업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 및 영상정보(처리장 진입로, 계량시설, 보관장)

- 이를 통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운반경로를 탐지하여 불법투기 의심지역 경유 등을 원칙적으로 방지하고,
- 처리장에 반입한 폐기물의 계량값과 영상정보를 활용해 배출량 신고 누락여부 및 계량값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해 처리장 외에서의 불법처리와 투기를 근절합니다.

■ 지정폐기물 처리자는 현장정보 전송에 필요한 전송장치를 2023년 9월까지 설치하여야 하며, 한국환경 공단이 운영하는 현장기술지원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보도·설명)보도자료)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확대

- **추진배경**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로 폐기물 부적정처리 등 예방
- **주요내용**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차량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중간처리자는 계량값과 영상정보(진입로·계량시설·보관시설)를 전자정보 관리시스템으로 전송
- **시행일**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
※ 건설폐기물(22.10월) → 지정폐기물(23.10월) → 사업장일반폐기물(24.10월)
* 지정폐기물 중 의료폐기물을 무선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는 경우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9)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제조·유통·소비 과정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표시·광고 범위에 대하여 산업계와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관련 제한문구를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명확히 제공하고자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22년)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 제조·수입·판매자는 동 규정에서 제한하는 문구를 사용하여 표시·광고할 수 없습니다.

〈표시·광고 규정에 따라 제한하는 유사표현〉

- ‘무독성’과 관련된 유사표현 :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 ‘환경·자연친화적’과 관련된 유사표현 : 천연, 그린, 에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 순수(Pure)·순(純)
- ‘무해성’과 관련된 유사표현 :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 ‘인체·동물친화적’과 관련된 유사표현 :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참고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142호)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문구 구체화

- **추진배경**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포장·광고 시 ‘무독성’ 등 사용제한 문구 외에 ‘유사한 표현’까지 제한하고 있어 ‘유사한 표현’에 대한 문구를 고시로 제정하여 명확하게 제공
- **주요내용**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에 대해 부정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자 사용을 제한하는 문구와 ‘유사한 표현’을 구체적으로 지정
- **시행일** 2023년 7월 29일

과불화핵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044-201-678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이하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22.6.17., COP 10)에 따라 과불화핵산술폰산(PFHxS)**의 취급이 금지될 예정입니다.(‘23.11월 예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 과불화핵산술폰산(PFHxS), 그 염류 및 PFHxS 화합물 147종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검토위원회*는 PFHxS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특성을 나타낸다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국제적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 취급금지 등 대상 화학물질을 검토하기 위해 설립된 스톡홀름협약 보조 기관

** 독성, 생물축적성, 잔류성, 장거리 이동성의 특성을 갖는 유기화합물

■ 스톡홀름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사무국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PFHxS를 취급금지 물질로 지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22.6.17., COP 10)

참고 스톡홀름협약 홈페이지>COP>Reports and Decisions>SC-10/13

과불화핵산술폰산(PFHxs) 취급금지 물질 지정

- **추진배경**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의 국내 발효(‘07.4.25.)에 따라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단계적으로 저감·근절
- **주요내용**
 - 스톡홀름협약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 과불화핵산술폰산(PFHxS)을 취급금지 물질로 등재하는 것에 합의(‘22.6.17.)
 -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PFHxS의 제조, 수출·입 및 사용이 금지됨
- **시행일** 2023년 11월 예상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5)

현행 수족관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수족관 동물 올라타기, 만지기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 그간 수족관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등록만으로 가능했으나 2023년 12월 14일부터는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또한, 수족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지 마세요('22.11.24.)

수족관 사육 동물 복지 개선

- **추진배경** 수족관의 사육환경 개선 및 사육 동물의 복지개선
- **주요내용**
 - 수족관의 허가제 전환 및 검사관제 도입
 - 현행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 수족관 사육환경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검사관제 도입
 - 수족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금지행위 범위 확대
 - 직접적인 학대 행위 외에도 올라타기·만지기 등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가하는 행위, 허가 없이 다른 시설로 이동 전시 등 금지
 - 수족관 동물 학대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 현행 최고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 수위 상향
- **시행일** 2023년 12월 14일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 044-200-5313)

2023년 6월 28일부터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 및 절차가 마련됩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더불어 생태체험, 교육, 관광 등을 결합한 국가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등 국가해양생태공원의 지정기준이 설정되고
-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 의견수렴 의무화,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한 지정 절차도 구체화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마련('23.6월 보도자료 배포 예정)

국가해양생태공원 근거 마련

- **추진배경** 우수한 해양생태계를 보전·관리하면서 생태체험, 교육, 관광을 결합한 국가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지정 기준, 절차 마련 필요
- **주요내용**
 - (지정기준)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생태계 보전 정책과의 연계성 등
 - (지정절차)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견수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의 협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심의회 심의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해양오염방제업에 로봇 등 신기술 장비 활용 가능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 044-200-5289)

2023년 8월 중(잠정)부터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등 신기술이 적용된 방제장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개선됩니다.

- 그간,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이 불명확하여 우수한 성능의 신기술 장비가 개발되어도 현장 투입과 활용이 부진했으나,
-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에 명시된 장비*가 아니더라도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로봇 등 새로운 형태의 장비도 해양오염방제업에 등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됩니다.

* 유회수기, 고압세척기 등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서 정하는 장비·선박 등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23.4.5.)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

- **추진배경** 로봇 등 신기술 장비가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경우에도 등록에 필요한 장비의 대체 가능 여부 불명확
- **주요내용**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등록에 필요한 장비와 다른 형태의 장비도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음을 명문화
 -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
- **시행일** 2023년 8월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집중호우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2023년 6월 15일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으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 극한 호우* 발생 시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에서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합니다.

* 50mm/1h, 90mm/3h 호우 동시 관측 시 1회 발송

-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서울·경기·인천)에서 먼저 시범운영('23.6.15.)하며, 그 운영결과 등을 반영하여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극한 호우시 기상청이 재난문자 직접발송

- **추진배경**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 빈발, 2022년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로 인해 많은 인명·재산피해 발생
* 8월 8일~9일 수도권 집중호우(서울 141.5mm/h), 9월 6일 태풍 힌남노(포항 110mm/h) 등
- **주요내용**
 - (제도 개선) 극단적 집중호우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일부개정
※ 행정안전부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5.10.)
 - (시스템 구축) 재난문자 직접발송을 위해 기상청 예보시스템과 재난문자 방송시스템(NDMS, 행안부) 간 연계를 통한 신속한 발송
 - (시범운영) 수도권 시범운영('23.6.15.)
- **시행일** 2023년 6월 15일(수도권 시범운영)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 042-481-7475)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상기후데이터를 쉽게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 간에 데이터를 실시간 연결하는 표준 접속방식

- 사용자별, 목적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상청 API 서비스를 통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게 찾고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접속방법 : <https://apihub.kma.go.kr>

- 관측, 위성, 수치모델 등 12개 분야 150여 종의 API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여 기후변화 감시, 자연재해 대응 및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또한, API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활용 안내와 10여종의 프로그램 언어로 예제 소스코드를 제공합니다.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자연재해 및 기후위기 대응 등 기상기후데이터 수요 증가에 따라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상기후분야 활용 서비스 촉진
- **주요내용**
 - 실시간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 API 서비스 종류 확대, 활용 안내 제공 등 사용자 편의성 강화
- **시행일** 2023년 7월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 042-481-7421)

새로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계절·시기별 미래 기후변화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 계절·시기별 미래 기후변화 분석정보

일정	제공정보
6월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미래 고농도 오존발생 기상조건 발생일
7~8월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인한 미래 열스트레스 전망 등
9~11월	기온과 강수량을 고려한 미래 가뭄 전망, 일사량과 풍속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분야 미래 전망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방재, 보건, 수문, 에너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관련 이슈에 대한 분석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국가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참고 기상청 행정누리집>보도자료(계절 및 시기별로 수시 보도 예정)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 **추진배경** 기후위기에 따라 국민의 생명뿐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부문에 걸쳐 영향 및 피해 발생
- **주요내용** 기후위기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 (6월) 지표오존, (7~8월) 열스트레스, 몬순강수, (9~11월) 가뭄, 신재생에너지
- **시행일** 2023년 6월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 02-2181-0720)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방문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정보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를 8월에 시작합니다.

* 월별 해외 방문객 145만명('19.12월), 국내 거주 외국인 213만명(전체인구 중 4.1%, '21.11월 기준)

- 현재 서비스하는 읍·면·동 단위의 동네예보, 대기질, 기상영상 등 실시간 날씨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진, 기상특보 등 위험기상정보도 영문으로 서비스합니다.
- 또한, 날씨알리미 앱 특화 서비스인 사용자 위치기반의 기상 및 지진특보 영문 알림도 제공합니다.

날씨알리미 영문 날씨정보 서비스 시행

- **추진배경**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생활정보의 영문 서비스 필요
- **주요내용**
 - 위치기반 현재날씨, 단·중기예보, 자외선지수 등 실시간 날씨정보와 행정동 기준 기상특보 발효현황, 국내·외 최근 지진정보를 영문 제공(5월)
 - 호우, 태풍특보가 발표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영문 PUSH알림도 발송(8월)
- **시행일** 2023년 8월 정식운영(5월 시범운영)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세한 내용은 p.106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 2023년 9월 22일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첨단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전략기술이란?
반도체, 양자, 인공지능, 우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기술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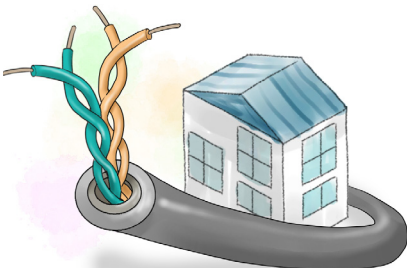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07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시행일 : 2023년 6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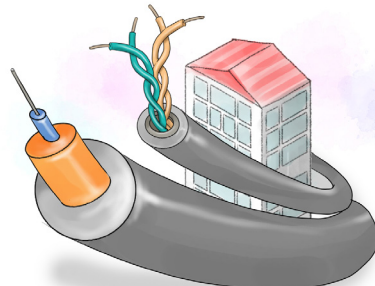
Before

종전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After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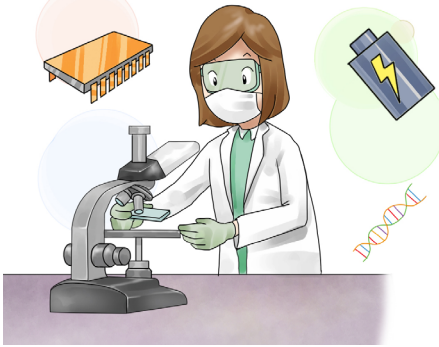
3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109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됩니다.



인 · 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

인력양성 대상 확대

현장 전문 인력의 교원 활용

4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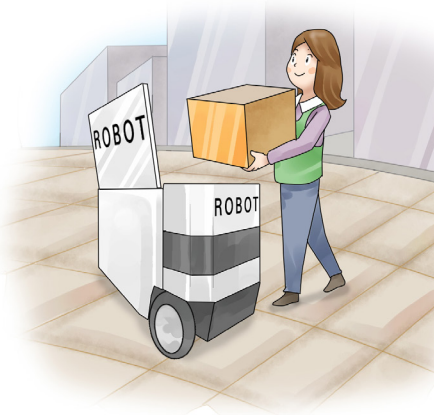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10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시행일 : 2023년 11월 17일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3.5.16. 공포)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 044-202-6731)

첨단기술이 전략무기화 되는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정·관리하고, 신속한 R&D 추진, 인력양성, 국제협력 등 종합적인 육성·지원책을 규정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부처별 기술 육성 체계에서 벗어나 범부처 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본격 시행

- **추진배경**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맞추어 과학기술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필요
- **주요내용**
 -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 체계 구축
 - *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등
 - 특화연구소, 도전적 연구개발,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신속한 국가전략기술 육성 및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핵심 인력 양성 및 국제협력 강화
-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 044-202-6433)

과기정통부는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10G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 종전 규정에는 광케이블 또는 꼬임케이블 중 필요한 설비를 '선택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종전) 꼬임케이블 또는 광섬유케이블 → (개정) 꼬임케이블, 광섬유케이블 모두 설치

■ 하반기부터 개정된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시행('23.6.7.)되어, 앞으로 모든 신축 건축물은 꼬임케이블과 함께 광케이블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물 내 광케이블 인프라가 의무화됨으로써 국민이 더욱 편리한 인터넷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 주요 개정 내용

- **추진배경** 최근 급격한 유선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고 고품질·대용량 인터넷서비스 확산을 위해 신축 건축물에 광케이블을 필수로 설치하도록 의무화
- **주요내용** 건축물의 구내통신 인터넷을 10기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 **시행일** 2023년 6월 7일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 044-202-6771)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 장애 사고('22.10.15.)를 계기로 디지털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재난관리 대상 사업자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 먼저 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을 추가**하여, 디지털서비스를 더욱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일정규모 이상 기간통신사업자 → 일정규모 이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도 포함

**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또한,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대상 사업자의 범위도 확대*하고, 재난 발생 시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보고의무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대응·복구 역량을 제고했습니다.

* 임대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 → 자체사용 목적 데이터센터 운영사업자도 포함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발표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 추진배경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및 서비스(카카오, 네이버 등) 장애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데이터센터의 재난·안전관리 관련 법제도 정비 추진
- 주요내용
 - 방송통신재난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범위 확대 (일정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 추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추가(서비스 긴급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의 범위 확대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 추가)
 -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사업자의 보고의무 부과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 마련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 044-203-4215)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하였습니다.

*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 → (개정) 현행 +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고

**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 신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 **추진배경** 주요국의 파격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의 신속한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 도입, 인력양성 지원대상 확대 등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배달 등 실외이동로봇 사업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 044-203-4318)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23.5.16. 공포)에 따라,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 그간 로봇은 현행법 상 보도, 공원 등 통행이 불가하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실외이동로봇 서비스의 제한적·일시적 실증만이 가능해 관련 규제 해소를 촉구하는 언론·업계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금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실외이동로봇 사업화가 가능해집니다.

* (주요 개정내용) 보도 등에서의 로봇의 운행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체계 및 보험 가입의 의무 등 신설 등

개정내용은 2023년 11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연혁>법률 제19412호

로봇의 실외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

- **추진배경** 로봇의 보도 통행금지 등 현행법 상 규제로 실외이동로봇 사업화 불가
- **주요내용**
 -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 특정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 규정 신설
 - 보도 등에서의 안전한 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운행안전인증제 신설
 - 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
-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043-870-5445)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ESS 등에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기 안전성 검사제도를 시행합니다.

* ESS(Energy Storage System) : 에너지 저장 시스템

- 인원·설비요건 등 안전성검사 수행에 필요한 지정요건을 갖춘 기관은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하며,
 - 안전성검사기관의 부실한 검사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 재사용전기 제조업자는 지정된 안전성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후 KC마크 등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참고 1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을 공포한 10월11일(화) 국무회의 의결

참고 2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재사용전기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재사용전기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 **추진배경**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등을 통한 재사용으로 국민의 안전 담보 및 자원순환 목적 달성
- **주요내용** 재사용전기 제조업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상시법 전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 044-203-4362)

2014년 시행 이후 10년 한시법*으로 운영되어온 중견기업법이 상시법으로 전환됩니다.

* 기존 유효기간 : 2024년 7월 21일까지

- 중견기업들은 수탁 중견기업 보호, 기술보호, 인력지원 등 14개 특례를 계속해서 지원 받을 수 있으며,
* 특례(14개) : 조세, 수·위탁, 이력사업, 국외판로, 기술보호, 인력지원, 미취업자 고용지원, 매출채권보험, 중진기금, 기업승계, 명문장수, 옴부즈만, M&A, 사업전환
- 국내 50여개의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정책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견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 추진배경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안정적 기반 마련
- 주요내용 (상시화) 유효기간 명시 규정 삭제(부칙 제2조)
* 당초 유효기간은 시행 후 10년 뒤인 2024년 7월 21일 까지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 044-203-3931)

향후 설치되는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택 소유자는 기존 주택매수 청구와 선택적으로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외측 전선에서 345kV 60m, 500kV 100m, 765kV 180m 이내의 지역

지원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30%를 기준으로 하되,

* 개별 및 공동 주택가격의 30%(산업통상자원부 부령에 규정 예정)

■ 최저 1천2백만원에서 최고 2천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됩니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신설

- 추진배경 송전선로 일정 거리 내 주택소유자에 대한 '주택매수 청구권' 이외 추가적인 보상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주변지역 주민들이 기존의 주택 매수청구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 044-203-3895)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영역은 건축 등 다른 영역과 분리발주 하여야 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영역(「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및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건축법」 제67조)이 분리발주 대상이며,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건축법」 제91조의3)

■ 2023년 11월 16일 이후 집행계획공고 대상 및 계약(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는 사업)되는 사업부터 적용됩니다.

단, 일정 규모 이하의 전력시설물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분리발주 제외대상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며, 법 시행 전 개정 예정

참고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2022년 11월 15일] 관보 中 법률 제19042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분리발주 시행

- **추진배경** 전력시설물 설계·공사감리 영역의 무분별한 하도급 및 이로 인한 저가 수주로 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도입
- **주요내용** 전력시설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 영역사업은 건축 등 타 분야와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 **시행일** 2023년 11월 16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 044-203-491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확대·개정됨에 따라 소부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급망 안정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산업부장관은 개정법을 근거로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을 공급망안정품목으로 선정하고 관련 우리 기업의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공급망 위험 관리를 위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 확대를 권고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인근 국가로 이전(P턴)하는 경우 금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비상시 해외 생산품을 국내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그 외에도,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운영 근거, 「소재·부품·장비산업 공급망센터」와 「국가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분석 및 대응 기반도 강화되었습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 **추진배경**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공급망 교란에 대응한 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구축
- **주요내용**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및 공급망센터 운영근거 신설 등
- **시행일** 2023년 12월('23.6월, 공급망센터 관련)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 044-204-7942)

2023년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 발급의무가 부과됩니다.

* 수·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그 비용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 다만, 위탁기업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90일 이내의 단기계약 또는 1억원 이하의 소액계약인 경우,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그 취지와 사유를 약정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약정서를 발급하거나, 약정서 자체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동약정을 체결하지 않기 위해 예외조항을 악용하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요구, 시정조치 및 벌점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 납품대금연동제.kr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 **추진배경**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제값 받는 여건 조성
- **주요내용**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부과, 위탁기업의 탈법행위 금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연동 관련 분쟁조정 등
- **시행일** 2023년 10월 4일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 042-481-8181)

2023년 9월 29일부터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상표 등록받지 않은 채 먼저 사용한 자에게 부정한 목적이 없는 경우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이 시행됩니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3.3.28.)

■ 그간, 자신이 상표를 먼저 사용했어도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표가 유명해진 시점부터는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선사용자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이나 간판 등을 폐기·교체해야하는 불합리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 이제 선의의 선사용자는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선사용자에게 상표 사용 금지청구권 등의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또한, 유명 상표와 선사용 상표 사이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유명 상표 보유자는 선사용자에게 오인·혼동방지에 필요한 표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 **추진배경** 유명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도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는 불합리함 개선
- **주요내용**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
-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 042-481-5738)

2023년 7월 4일부터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및 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됩니다.

-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광고 등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소개·알선 받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나아가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 한편, 변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의 시행으로, IP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리업계 수임질서를 바로 잡는 등 전반적인 변리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변리사법 정비

- 추진배경 IP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변리업계 수임질서 확립 추진
- 주요내용
 - (부정 광고행위 금지) 거짓·허위광고 등의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
 -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한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도입
 - (공익활동 의무 부여) 변리사에게 2년간 24시간의 공익활동 참여의무 부여
 - (합동사무소 개설) 변리사 2인 이상이 합동사무로 연합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766)

2023년 12월 21일부터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이 확대됩니다.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브랜드 및 이미지 구축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디자인 : 본인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23.12.21.)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3.6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시 게재)

참고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25.)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 **추진배경** 현행 1년인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기업이 후속제품을 원활하게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3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브랜드 형성에 기여하고 경쟁력 있는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
- **주요내용** 관련디자인 출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042-481-5766)

2023년 12월 21일부터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이 확대됩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서류제출 시기 및 기한을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권리자가 보다 쉽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출원 전 공개된 디자인은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는 이유(신규성 상실)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나, 공개한 지 12개월이 지나지 않은 본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예외로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

■ 이에 따라 정당한 권리자가 심판·소송유형과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개정내용은 이 법 시행(‘23.12.21.) 이후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1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23.6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시 게재)

참고 2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자인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5.25.)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 **추진배경** 현재는 디자인이 공시된 후 1년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 **주요내용**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12월 21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국토·교통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 044-201-4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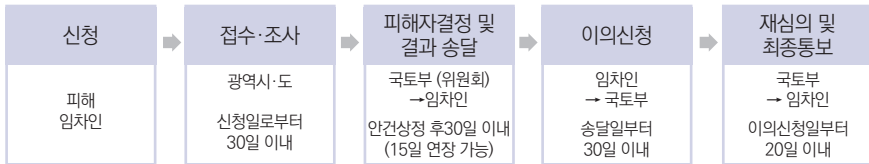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합니다.

■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관련 서류*를 갖춰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제출방법 및 담당부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및 시·도 홈페이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안내

- 신청 이후, 관할 지자체 및 국토부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절차



■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 추진배경 경·공매 등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 해소 및 주거안정 도모
- 주요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
- 시행일 2023년 7월 2일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044-201-3347)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시기금법이 2023년 9월 29일 시행되며,

■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일정기간의 소명과정을 거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합니다.

*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채무발생한 임대인

■ 공개되는 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횡수 등이며,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또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 **추진배경**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근거 마련 (주택도시시기금법 개정)
- **주요내용**
 - (공개대상) 3년 이내 2건(법 시행 이후 1건 포함), 합산 2억원 이상 구상채무 발생한 임대인
 - (공개내용)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 금액 등
 - (공개절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상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 및 성명 등 공개될 수 있음을 사전통지하며,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위원회는 제출된 소명서 등을 참작하여 최종 공개 여부를 심의·의결
 - (정보공개) 국토교통부, HUG 홈페이지 및 안심전세 앱을 통해 공개
-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 044-201-5087)

그간 최대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됩니다.

■ 2023년 7월부터 기존에는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60회 이용에 대해서도 마일리지가 적립됨에 따라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이 월 1.1~4.8만원에서 월 1.5~6.6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또한,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가 기존 6개에서 11개로 증가해 국민의 선택권도 확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향

- **추진배경** 고물가 시기, 국민 교통비 절감을 통한 민생 부담 완화 필요
- **주요내용**
 - (마일리지 적립 상한 상향)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을 44회에서 60회로 상향해 교통비 절감 효과 확대(월 1.1~4.8만원 → 월 1.5~6.6만원)
 - (발급카드사 확대) 발급카드사를 6개에서 11개*로 확대
 - * (기존)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 (신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 **시행일** 2023년 7월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대상 공항 확대·운영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 044-201-4238)

금년 7월말(예정)부터 김포·김해·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도착승객*까지 짐배송서비스를 확대·운영합니다.

* (대상) 제주(기준)+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확대) 도착승객

■ 짐배송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여객은 출발 하루 전(0시까지) 짐배송 전용앱(APP)으로 신청한 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합니다

* (출·도착공항)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제주공항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공항 짐배송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23.7월 배포 예정)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운영

- **추진배경** 국내공항 언택트 여행 활성화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김포·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 운영
- **주요내용**
 - (대상자)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제주공항을 이용하는 승객 중 짐배송 서비스 신청자
 - (이용절차) 국내선 출발 전 서비스를 신청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 등)까지 배송
- **시행일** 2023년 7월말(예정)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전기차 공급 가속화에 맞춰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 편의를 위해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가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금년 7월부터는 7% 이상,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적용됩니다.
- 또한, 지역별 전기차 보급율 등에 따라 콘센트 설치기준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형충전기
콘센트 비율 확대

- **추진배경**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 증진
- **주요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법정 주차구획 총 수에 7퍼센트를 곱한 수 이상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 비율을 확대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3)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여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는 여유있는 주차공간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시 표시되는 성능등급 항목에 주차공간 항목을 신설하여 주차공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주차공간 성능등급은 법정기준보다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정 주차면수 비율에 따른 배점+확장형 주차구획에 따른 배점 결과 12점 이상 1등급(★★★★), 9점 이상 2등급(★★★), 6점 이상 3등급(★★), 3점 이상 4등급(★)

■ 분양가 가산항목에 주차항목을 신설하면서 주차공간 추가설치에 따라 기본형 건축비에 1~4%의 비용을 가산할 수 있습니다.

* 주차공간 추가확보 점수를 포함한 성능등급 총 평가점수(171점)의 60%(103점) 이상 4%, 56%(96점) 이상 3%, 53%(91점) 이상 2%, 50%(86점) 이상 1%를 가산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 **추진배경** 주차공간 부족, 문턱 등으로 인한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 불편과 갈등해소
- **주요내용** 법정주차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주차폭 확보시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 044-201-3747)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등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합니다.

■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은 계획 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있는 개발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 (현행) 최초계획 수립 시 국토부 사전협의(환경훼손, 지자체 이견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선) 30만~100만㎡은 최초계획 + 계획변경 시 국토부 사전협의(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23.2월)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 **추진배경** '지역 주도-정부 뒷받침'을 통한 실질적 균형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하여 지역에 자유를 확대
- **주요내용**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대폭 확대 (30만㎡ 이하 → 100만㎡ 미만)하여 지역의 GB 활용도 제고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 044-201-3412)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 앞으로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할 주요 정보(임대인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제한(공인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됩니다.
- 위법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자격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집유 포함),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확대하였습니다.
*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제231조(사문서 위조죄), 제234조(위조 사문서 행사죄), 제347조(사기), 제355조·제356조(횡령·배임죄 등)
- 아울러,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신고(☎1833-4324)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공인중개사법

참고 2 국가법령정보센터>공인중개사법 검색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추진배경**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 필요
- **주요내용** ①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 ②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 의무 도입, ③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 확대, ④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강화 등
- **시행일** 2023년 7월 2일(③, ④), 2023년 10월 19일(①, ②)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 044-200-5722)

2023년 하반기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이용 화주기업까지 확대됩니다.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는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국적선사 이용비율이 높은 선·화주를 선정하여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그간 정기선사(컨테이너선)와 그 이용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인증

■ 부정기선사가 운송하는 원유, 석탄, LNG 등 원자재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화물로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차질없이 운송되어야 하며, 최근 대외 정세의 불안을 감안할 때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보도자료 (예정)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 **추진배경** 주요 원자재 운송분야 선화주 상생 및 안정적 공급기반 확립
- **주요내용** (우수선화주기업 인증대상 확대) 정기선사(컨테이너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국제물류주선업자, '포워드') 외에 부정기선사(벌크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발전사, 제철소, 정유사 등)도 인증대상에 포함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 044-200-5931)

그동안의 항만개발·투자는 물류·산업시설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구축을 추진합니다.

- 인천항, 마산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안항 4개 지구 등에 2030년 까지 총 1,987억원 투자하여 시민밀착형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으로,
 - 2023년 하반기부터 군산내항, 부산항 신항, 후포항에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지구도 향후 지역소통 등을 통해 추가 사업지구를 발굴하여 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23년 下 보도자료 배포 예정)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 **추진배경** 항만·도시 간 기능갈등 방지를 위해 주요 항만 대상으로 항만과 지역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항만환경 개선사업 계획
- **주요내용**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조성) 환경개선이 시급한 주요 항만지역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체계적인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확충을 통해 항만지역 생활·주거여건 개선
 - * 녹지 등 생활환경 개선시설, 산책로 등 주민이용시설, 침수방지·난간 등 안전시설 등
 - 인천항, 마산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안항 4개 지구 등에 '30년까지 총 1,987억원 투자
 - * (무역항) ① 인천남항 ② 마산항 ③ 목포북항 ④ 영일만항 ⑤ 군산항 소형선부두·내항지구 ⑥ 동해목호항 동해·목호지구 ⑦ 부산항 용원지구 (연안항) ① 울릉항 ② 거문도항 ③ 흑산도항 ④ 후포항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5)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2024년까지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은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에 대해 약 344억원을 투입하여 부산항 등 23개 국가 관리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별 중요도,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CCTV 등을 정비하여 항만 안전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 **추진배경** 항만구역 내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을 정비하여 안전한 항만 조성
- **주요내용**
 - 사업비/사업기간: 약 344억원/2023년 ~ 2024년(계획수립 및 설계: 2022년)
 - 사업위치: 국가관리 23개항
 - * (무역항) 부산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항, 광양항, 목포항, 동해항, 묵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새만금 신항
 - * (연안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거문도항, 흑산도항, 상왕등도항, 후포항, 울릉항
 - 사업내용: 태풍이나 시설 노후화로 손상·파손된 안전시설을 정비
 - * (피해예방시설) 안전난간, 파라펫, 차막이 / (진입방지시설) 울타리, 출입문, 볼라드 / (위험안내시설) 경고표지판, 안내표지판, 방송·경보시설, CCTV / (긴급대응시설) 인명구조함, 구명사다리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044-200-5753)

2023년 하반기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이 준공합니다.

* (접안능력) 5만톤급 3선석 / (연간 하역능력) 195만TEU / (선석 길이) 1,050m

- 이번에 준공하는 터미널은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하여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24,000TEU급 선박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되었습니다.
- 이번 터미널 준공으로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하게 됨에 따라,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능력은 총 2,303만TEU로 전년대비(2,108만TEU) 9.3%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부두 내 전 구간에 자동화 무인운송장비(AGV)를 도입하여 현장 무인작업(24시간 원격사무실 근무)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함에 따라 하역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부두 준공

- **주요내용** • (시설개요) 컨테이너 전용 5개 선석(2~5·6단계) 및 피더 1개 선석으로 구성, 제2차 항만기본계획 반영('01년) 후 2012년 8월 착공하여 건설사업 진행 중
• (운영사 선정) 북항의 DPCT를 운영사로 선정('21.9월), 동원글로벌터미널 부산(DGT) 운영법인 설립('22.7월) 및 2023년 하반기 준비 중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 044-200-5969)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량 창출 등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943천㎡ 신규공급” 합니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을 시작으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총 9,144천㎡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23.11월 배포 예정)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개발 현황

- **추진배경**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 및 추가물동량 창출
- **사업개요**
 - (위치/면적)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인천신항 / 943천㎡
 - (총사업비/기간) 1,381억원 / 2018년~2023년(공사기간 25개월)
 - (이용계획)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 사업위치 및 평면도



- **시행일** 2023년 11월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조달청 시설총괄과 (☎ 042-724-7085)

15년 만에 상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2008년에 도입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규제를 개선하여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당해업체가 시공할 수 있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

-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2,0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합니다.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보도자료>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 **추진배경** 최근 기술형입찰 시장의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 경쟁 보장 및 규제 최소화 도모
- **주요내용**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대 건설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현행) 금지 → (개선) 2개사까지 허용
* 입찰경쟁성이 필요하여 달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 명기 가능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 다만, 추정금액 2,000억원 미만 사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름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농림·수산·식품



1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44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시행일 : 2023년 7월

Before

그동안 종자의 신종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콩	옥수수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유채	주키니호박

After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됩니다.



토마토	콩	옥수수
멜론	면화	밀
피망	아마	알팔파
파프리카	유채	주키니호박
파파야		

2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45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시행일 : 2023년 4월 27일

Before

그동안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은
등록제로 운영해왔고, 위반자 처벌규정이
미약했습니다.



무허가·무등록 영업 : 벌금 500만원

After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무허가: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징역1년/벌금1천만원

3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46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시행일 : 2023년 7월 5일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를 신설합니다.

•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4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47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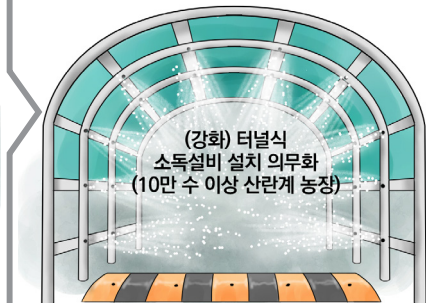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하였습니다.



After

농장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방역기준을 강화합니다.



5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48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시행일 : 2023년 5월

Before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들이 양질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After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6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49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시행일 : 2023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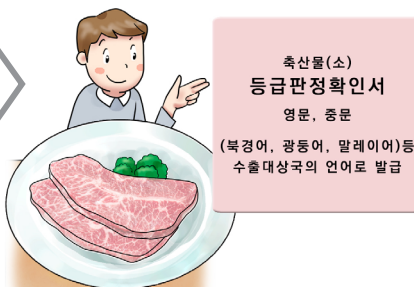
Before

축산물등급판정서가 외국어 발급이 되지 않아 수입업자 등이 한우의 품질을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After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수출 대상국의 언어로 발급하여 수입업자들이 한우 품질 확인을 용이하게 하도록 개선합니다.



7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0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시행일 : 2023년 11월

Before

그동안 농산물 도매유통은 도매시장에서 대면 거래로 이루어졌습니다.



After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한 전국단위 농산물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합니다.

식재료업체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도매시장
법인



공판장



산지조직



8 농림축산식품부

자세한 내용은 p.151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시행일 : 2023년 8월

Before

종전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의 송품장은 수기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After

물류 효율화를 위해 농산물도매시장 전자송품장을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합니다.



9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59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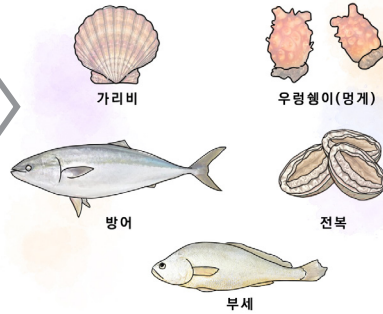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음식점 내 수산물 15종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였습니다.



After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5개 품종을 추가 지정합니다. (15개→20개)



10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160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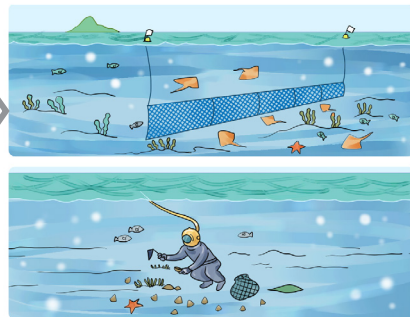
Before

종전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After

참돔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 (TAC, Total Allowable Catch)가 확대됩니다.



11 산림청

자세한 내용은 p.163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Before

'나무의사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1종 나무병원
2종 나무병원

나무의사
또는
나무의사
자격
인정자

After

'나무의사 제도' 시행 이후 5년 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가 종료됩니다.

〈나무의사 자격인정〉
나무의사

〈나무병원의 종류〉
1종 나무병원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 044-201-207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 054-912-0165)

새로운 종자의 신품종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대상품목이 확대됩니다.

■ 2023년 1월 1일부터 8개 품목에 대해 검사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5개 품목을 추가하여 13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 ('23년上,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23년下, 13개 품목)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추가

■ 매년 LMO 검사 대상품목을 순차 확대하여 2028년까지 해외에서 개발·승인된 LMO 품목 전체 ('23.5월 기준 37개 품목)를 검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

LMO가 포함될 우려가 있는 품목의 종자는 유통 전에 LMO검사하여 확인함으로써, 승인되지 않은 LMO의 재배 및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대상 품목 확대

- **추진배경** 새로운 종자가 유통되기 전에 LMO 여부를 확인하여 LMO 종자의 유통 및 재배·확산 방지
- **주요내용** 새로운 품종을 신품종 보호 출원 신청하거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면 LMO 검사를 시행
* ('23년上, 8개 품목)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23년下, 13개 품목)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추가
- **시행일** 2023년 7월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60)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이 강화됩니다.

* 「동물보호법」('22.4.26.개정, '23.4.27.시행)

■ 반려동물 수입, 판매, 장묘업이 종전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1천만원

■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영업을 지속한 영업장에 대해 지자체에서 영업장 폐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 반려동물을 생산, 수입, 판매하는 영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 거래내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반려견을 판매할 때 해당 구매자 명의로 동물등록을 한 후 판매해야 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 등 강화

- **추진배경** 무분별하고 불법적인 반려동물 생산·판매 등 방지
- **주요내용**
 - 반려동물 수입·판매·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장 및 영업정지 처분 불응 영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영업장 폐쇄조치 신설
 - * (종전) 무허가·무등록 :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강화) 무허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려동물 생산·수입·판매업자 대상 반려견 거래내역 신고제 신설, 반려견 판매 시 해당 구매자 명의 후 동물등록 후 판매 의무 등
- **시행일** 2023년 4월 27일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총자과 (☎ 044-201-1896)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2023년 7월 5일부터 농업기계의 본체 중 차대에 제조번호를 각인한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판매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된 내용은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며, 농업기계 구매자에게 제원 및 판매이력 등 농업기계 정보 제공, 신고된 농업기계의 이력(생산·유통·폐기 등) 관리에 활용됩니다.
-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 서비스는 2023년 7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 **추진배경** 농업기계 신고제도 도입 및 신고된 농업기계를 관리하는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농업기계화 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8688호, '22.1.4.)
- **주요내용**
 - (기본방향)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를 운영
※ 신고 주체를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과 지역농협으로 지정
 - (관리방안) 농업기계 생산자가 농업기계 제조번호, 생산연도, 규격 등 농업기계 제원을 '농업기계 신고관리시스템'에 입력(신고)
 - (신고제 대상)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시행일** 2023년 7월 5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044-201-2520)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기준이 2023년 하반기부터 개선됩니다

■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평·기러기 사육업(6종)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농장 출입구 차단장치·소독설비, 축사 입구 전실(前室) 등

■ 또한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차량이나 승합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가 부여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준 개선

- **추진배경**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기준 개선
- **주요내용**
 - 메추리·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 대한 소독설비·방역시설 기준 강화
 -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화
 -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승합차)의 축산차량 등록 의무화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42)

청년층의 아침밥을 먹는 건강한 식습관을 확산하기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운영합니다.

-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의 쌀 소비 문화 형성을 위해 양질의 아침밥 (쌀가공식품 포함)을 먹을 수 있도록 학교와 정부 등이 공동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1식 기준 : 학생 1천원 + 정부 1천원 + 학교부담금 자율 + (지자체 자율)

- 대학·학생 수요 급증에 따라 2023년 사업규모를 3.4배(69만명→ 234만명) 확대하였습니다.
- 또한, 더 많은 학생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 추진배경 대학생에게 쌀·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아침밥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의 쌀 중심 식습관 형성 유도
- 주요내용 학교와 정부 지원으로 대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천원에 제공
- 밥·국·반찬 포함 한식 식단 및 쌀 간편식(쌀빵 등) 메뉴 운영
- 시행일 2023년 5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축산유통팀 (☎ 044-201-2315, 2322)

한우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제도를 개선합니다.

- 한우 수출 확대 수단 중 하나로, 한우를 수입하는 홍콩을 비롯한 외국의 바이어들 대상으로 한우에 대한 상세 정보(육질, 육량 및 중량 등)를 제공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외국어로도 발급합니다.

*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를 영문, 중문(북경어, 광둥어, 말레이어) 등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발급

- 또한, 그동안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BMS)가 표기되지 않아 같은 등급 내에서 근내지방도의 큰 차이에 따른 외국 수입업자들 사이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근내지방도를 표시하게 됩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고시)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외국어 발급 및 등급표시제도 개선

- **추진배경**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는 국문으로만 제공되고 있어 수출 상대국 수입업자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는 근내지방도가 표기되지 않아 수입업자의 혼선을 유발하고 있어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외국어 발급) 축산물(소)등급판정서를 수출대상국에 맞는 언어로 발급(영문, 중문 등)
 - (등급표시 제도 개선) 육질 1+등급 이하 정육에도 근내지방도를 표시
- **시행일** 2023년 6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합니다.

-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는 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의 유통주체(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공판장, 시장도매인) 이외에도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이 판매자와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기존 도매시장을 경유하지 않고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하게 되어 농산물 도매거래와 물류의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 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정가·수의거래 외에도 예약거래 등의 다양한 거래방식을 제공하고, 구매자에게는 여신 제공 및 결제자금 융자지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 온라인도매시장, 11월에 만나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추진배경**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거래 및 물류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물류가 최적화(先거래 後물류)되고,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다양한 유통주체*가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 단위 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판매자) 산지조직,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등 / (구매자) 중도매인, 중소형마트, 식재료업체 등
- **시행일** 2023년 11월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21)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를 위해 서울시 가락동 도매시장에 전자송품장을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 2023년 전자송품장을 가락시장에 시범 도입(6개 품목, 8월)하고, 2024년부터 전국 공영도매시장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전자송품장 시스템이 도입되면 출하자는 전국 도매시장별·품목별 출하 예정 물량을 확인하고 농산물을 출하할 수 있어, 출하 선택권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적정 수취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출하 스케줄링, 공동물류, 반입·배송·주차 관제 등 물류 효율화를 구현하고,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앞으로 도매시장 디지털화의 기반이 될 전자송품장이 널리 보급 및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

전자송품장 도입 적용 방식

- **추진배경**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유통의 디지털화·수급 조절·물류 효율화
- **주요내용** 농산물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산물의 출하정보(출하처, 품목, 물량, 매매방법, 운송수단 등)를 디지털화
- **시행일** 2023년 8월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 044-201-1554)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빈집의 매입) 개정 시행('23.9.29.)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 등 공익적 목적으로의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 (기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 (개선) 공익적 목적 + 농어업분야 내외국인근로자 거주 용도

법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자체에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의 빈집매입·활용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 **추진배경** 지자체가 빈집정비계획 수립시, 농어업분야 내·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도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마련 필요
-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제1항에 따른 기관이 빈집을 매입하여 농어업분야 내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취득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 **시행일** 2023년 9월 29일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 044-201-2618)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입양센터 설치를 새롭게 지원합니다.

-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5.25.~6.15.)하며, 부지 적정성·입양센터 내 프로그램 운영계획, 재정계획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 최종 선정된 2개 지자체는 교통편의 등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하여 유기동물에 특화된 입양상담·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보도자료>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 **추진배경**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 동물의 입양률 제고
- **주요내용**
 -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진행(23.5.25.~6.15.), 사업추진(2개년도)
 - 기존 동물보호센터가 도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낮은 한계를 보완, 도심 지역 등에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
 - 유기동물에 특화된 전문 입양상담, 돌봄 교육 등을 제공해 입양 희망자 편의를 제고하고, 유기동물 입양 문화 적극 조성
- **시행일** 2023년 6월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3)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은 2020년부터 시작하여, 2023년은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확대('22년, 4개 대학 → '23년, 8개 대학)됩니다.

* 푸드테크 :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첨단기술(AI, IoT, BT, VR 등)이 결합된 신산업

■ 2023년 9월부터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4개 대학에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이 신설 됩니다.

■ 교육대상은 학교당 20명 정원이며, 교육과정은 2년 4학기제로 운영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대학 4곳 신규 선정

푸드테크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 **추진배경** 2020년부터 시작, 2023년은 지방 중소식품업체로 푸드테크 기술 적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방대학 중심으로 확대('22년 : 4개 대학 → '23년 : 8개 대학)
- **주요내용**
 - 운영대학('23년, 총 8개 대학)
 - * ('20년) 2개(고려대·한양대) → ('21년~'22년) 4개(서울대·경희대 추가) → ('23.9월) 4개 대학 신규 선정(포항공대·전주대·전북대·전남대 추가)
 - 교육대상 : 학교당 정원 20명
 - 교육과정 : 2년 4학기제 운영
 - 지원내용 : 등록금의 65%, 학과운영비(학기당 35백만원 이내), 기업 애로기술 과제 수행비(年 60백만원 내외) 등 최대 280백만원/교 지원
- **시행일** 2023년 9월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 044-201-2126)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을 위해 2023년 7월에 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푸드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를 시작합니다.

- 올해 100억원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각종 정책자금과 연계하여 혁신기술을 보유한 푸드테크 기업을 적극 육성할 것입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푸드테크 기업 투자 시장에 첫선 보여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 **추진배경** 푸드테크 관련 청년 새싹기업(스타트업)이 투자자금 유체에 애로가 있어, 사업단계별 자금 지원 필요
- **주요내용**
 - 조성목표(억원) : (‘23년)100→(‘24년)200→(‘25년)200→(‘26년)250→(‘27년)250
 - 최근 5년간 건당 평균 투자금액은 10억이며, 1,000억원 조성으로 100건 투자 가능
- **투자대상**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에 종사하(려)는 농식품경영체로 사업준비 단계 또는 사업 개시 후 7년 미만의 경영체
 - * 세포배양식품, 식물기반식품, 간편식 제조기술, 식품프린팅 기술, 친환경 포장기술 등
- **조성시기** 2023년 7월 투자조합 결성 및 투자 시작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4)

김치, 전통주에 한정되어 운영 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을 2023년 6월 28일부터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 자조금단체가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공급조절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용하는 자금

■ 김치, 전통주 외에 장류, 떡류, 식초 등 전통식품도 산업발전을 위해 자조금 조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통식품 사업체수 및 생산액〉

(단위: 개, 10억원)

	(10인 이상) 사업체수(비중)		생산액(비중)	
김치 및 절임식품	573	(32.9%)	1,776	(27.2%)
전통주(탁주, 양주, 청주 등)	69	(4.0%)	483	(7.4%)
장류, 떡류	429	(24.6%)	1,732	(26.6%)
기타(식초, 차류, 젓갈류 등)	673	(38.6%)	2,530	(38.8%)
합 계	1,744	(100.0%)	6,521	(100.0%)

* 출처: 광업제조업조사(통계청, 2020, 10인 이상 기업체 대상)

참고 한국농어민신문)전통식품자조금 설립 가시권

전통식품 자조금 개요

- **추진배경** 현재 운영중인 전통식품 자조금은 김치·전통주에 한정, 장류·떡류 등 자조금 도입을 통해 소비촉진, 판로확대, 수출활성화 등 추진 필요
* 김치·전통주 시장규모는 전체 전통식품의 37% 수준에 불과
- **주요내용** 전통식품의 소비 촉진 홍보, 판로확대, 수출 활성화, 물류거점시설 등 지원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42)

양잠산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됩니다.

- 오디·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 기존 산업 범위 : 누에(고치 포함), 뽕나무, 천잠·작잠·상잠·피마잠(고치 포함) 생산·가공
-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보완·마련하고, 산업 홍보 및 종사자의 자부심 고취를 위해 양잠인의 날(매년 5.10.)을 지정하였습니다.
- 이번 법 개정이 기능성 양잠산업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 **추진배경** 양잠산업이 과거 실크 위주의 '입는 산업'에서 건조누에를 활용한 건강기능 식품 등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산업 육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오디 및 뽕잎의 생산·가공,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등을 기능성 양잠산업 범위에 추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성 양잠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종합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우수 누에 품종 육성, 양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양잠산물의 수출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양잠인의 날(매년 5.10.) 지정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044-201-2322)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축산물 등급판정 대상 품목에 2023년 하반기부터 벌꿀이 추가됩니다.

* 농가·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만 등급판정을 받는 자율등급제 방식

- 소비자들은 등급기준을 통해 원하는 품질의 벌꿀을 구매하고, 이력번호를 통한 생산이력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위·변조꿀 판별 검사를 시행하여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등급판정 받은 벌꿀을 먹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국내산 천연벌꿀 등급판정 시행

- **추진배경**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주요내용**
 - 등급판정 신청을 한 국내산 벌꿀을 대상으로 등급판정(1+, 1, 2)을 시행
 - 위·변조꿀 판별 검사 및 생산이력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소비자 신뢰 회복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 044-200-5414)

2023년도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확대가 시행됩니다.

■ 수입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이에, 수입량이 많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우려되는 가리비, 우렁행이, 방어, 전복 및 부세(총 5종)를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여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기존) 넙치, 참돔, 고등어 등 15종 → (추가) 가리비, 우렁행이, 방어, 전복 및 부세 5종 추가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 **추진배경**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가
 -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 조성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추진
- **주요내용**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에 신규품목 추가
 - 최근 5년간 수입량, 위반 건수, 음식점수, 소비형태 등 특수성을 검토하여 표시 대상 품목* 추가
 - * (추가품목) 가리비, 우렁행이, 방어, 전복, 부세 총 5종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 044-200-5533)

2023년 7월 1일부터 참홍어, 바지락에 적용되고 있는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가 확대됩니다.

- TAC 제도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수산자원관리가 필요한 어종에 대해 연간 어획할 수 있는 양을 정하여 관리를 하는 선진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 현재 고등어, 살오징어, 참홍어, 바지락 등 15개 어종에 대해 TAC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2023년 하반기부터 참홍어의 적용 해역(전남·인천 일부→서해 전역)과 적용업종이 확대되며, 바지락 TAC는 적용해역(경남 일부→경남 전역)이 확대됩니다.

정부는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TAC를 지속적으로 확대, 고도화할 계획이며, TAC 제도의 정착을 위해 TAC 제도에 참여하는 어업인에 대한 경영개선자금, 직불금 지원 등 지원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23년 7월~2024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

총허용어획량(TAC)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자원관리형 어업구조 정착을 위해 연간 어획 총량을 제한하는 TAC 제도 확대 추진
- **주요내용** TAC 확대를 위해 2023년 하반기부터 참홍어, 바지락 TAC의 적용해역과 적용업종 등을 확대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 044-200-5443)

기존 참여율이 낮았던 수산물 이력제 제도를 대폭 개편하여 민간 유통·가공업체의 이력제 참여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자들이 신뢰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 복잡했던 정보 입력절차를 5단계에서 2단계(위판장→가공기업)으로 줄여 유통 단계별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업체 부담을 경감합니다.
- 또한 이력 표시 정보도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위주로 최소화(33종→4종 : 생산자·생산 시기·생산 장소·가공기업+α)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동정) 민간 참여 이력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MOU) 추진('23.6월 예정)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 **추진배경** 소비자 관점에서 필수 정보 중심 표시 정보를 간소화하고 마트·가공기업 등 유통단계 기업 참여도를 높여 이력제도 내실화
- **주요내용**
 - (시행기반 구축) 이력시스템상 입력 정보 최소화(33종→4종 : 생산자·생산 시기·생산 장소·가공기업+α) 및 입력 단계 축소(5단계→2단계 : 위판장·가공 기업)
 - (시범사업 추진) 단기성과 도출, '이력 제품=소비자 선택' 인식 확산 유도
- **시행일** 2023년 6월 2일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 044-200-5652)

2023년 9월부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과 체험 예약·결제가 간편해집니다.

- 네이버 예약과 연계를 통해 125개소 어촌체험휴양마을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바다가 보이는 숙박을 보다 간편하고 안전하게 예약·결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합니다.
-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개인정보 입력 없이 네이버 등 아이디를 이용해 예약할 수 있으며,
- 네이버 플렉스와 스마트스토어 등과도 연동해 쉽게 검색하고, 특산물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 마을에서도 체험객 정보 및 결제 내역 등을 쉽게 확인하고, QR코드로 발권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홈페이지>공유바다>공지사항>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 **추진배경**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의 노후화로 기능 개선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별도의 예약·결제 시스템 개발 없이 네이버 예약과 연동하여 간편하게 안전하게 예약·결제를 진행하고, 마을에서 QR코드 발권확인으로 업무 간소화
- **시행일** 2023년 9월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나무의사 제도’ 시행(‘18.6.28.) 이후 5년 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가 2023년 6월 27일 종료됩니다.

- 경과조치 종료에 따라 ① 제도 시행 당시(‘18.6.28.)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나무의사 자격 인정과 ② 2종 나무병원의 운영이 종료됩니다.

* 1종 나무병원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법인

2종 나무병원 : 1종 나무병원의 처방에 따라 예방·치료하는 법인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병해충]나무의사제도 홍보자료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 **추진배경**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던 경과조치의 종료
- **주요내용**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후 5년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로 2023년 6월 28일 부터는 나무의사·수목치료 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음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 042-481-4064)

나무병원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이 높은 수목진료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2023년 6월 28일부터 나무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나무병원 : 생활권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법인

- 나무병원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시·도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보도자료>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추진배경** 나무병원 영업정지 처분으로 수목진료 이용자 등이 큰 불편을 겪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수목진료의 연속성 보장
- **주요내용**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한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
* 나무병원의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으나 시·도에 변경등록 하지 않은 경우,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검사를 거부한 경우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국민에게 제공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확대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 042-481-8868)

2023년 6월 28일부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가 확대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1인당 10만원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을 선정하여 발급합니다.

최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소외계층 등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의 범위가 한부모가족까지 확대됩니다.

■ 기존 발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까지 해당되었으나, 한부모가족이 포함됩니다.

참고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한부모가족 등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다양한 소외계층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토록 추진
-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대상자 범위에 한부모가족 추가
* 기존 범위 :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국방·병무



1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73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시행일 : 2023년 9월

Before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과 성명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직접 병무청을 방문하여 정정 신청하였습니다.



After

기관 간 협업으로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2 방위사업청

자세한 내용은 p.179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예정)

Before

그동안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는 업체에 따라 면제와 허가로 나뉘었습니다.



After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 부속 수출 허가는 생산유무와 관계없이 수출허가 면제됩니다.



지역상생 장병특식 시행

국방부 물자관리과 (☎ 02-748-5723)

2023년 4월부터 “지역상생 장병특식” 제도를 시행합니다.

-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매월 1회(장병 1인당 13,000원 기준)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뷔페식·케이타링, 배달, 요리사 초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합니다.

* 병영식당이 속한 주소지 기준 해당 기초지자체(시·군·구) 소재 업체 활용이 원칙

- “지역상생 장병특식”의 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장병들이 선호하는 특식을 제공하여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역상생 장병 특식

- **추진배경** 국방부는 다양한 메뉴 제공과 획기적인 급식질 개선을 위해 급식혁신사업*을 2019년부터 전군에 확대 시행 중
 - * 브런치식, 병영식당 외 급식, 민간위탁 등 외부 음식을 장병급식으로 제공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조리병 부담 경감 △지역 맛집 경험을 통해 군 생활 추억 제공
- **주요내용**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장병 선호도가 높은 메뉴를 월 1회(1인 13,000원) 실시
 - * 시행 지역 : 병영식당이 속한 주소지 해당 및 인접 기초지자체 시행
 - * 급식 방식 : 군 방문 조리·포장·배달·식당 방문 등 부대 여건 고려
 - * 예산 집행 : 가용 범위 내에서 집행 횟수·금액 증감 집행 가능
- **시행일** 2023년 4월 1일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1)

청년층 마약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마약류 복용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2023년 8월부터 군 간부에 대한 마약류 검사를 확대 시행합니다.

- 기존에는 간부 선발 및 임관 신체검사 시,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 올해 8월부터 임관 예정 군 간부 및 장기복무 지원 군 간부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합니다.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 추진배경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군내 마약류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마약류 복용자 군내 유입 방지를 위해 추진
- 주요내용 임관 및 장기복무 지원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 (법령근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의2(장교후보생 및 예비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각군 건강관리 규정 제10조(합격등위 및 특이사항)

관련 규정	세 부 내 용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 규정	제4조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13. 정신계통 나. 마약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6조 (장교후보생 및 예비 장교후보생의 임용시험) 2. 신체검사 : 참모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육규161 건강관리 규정 (개정 중)	제10조 (합격등위 및 특이사항) 입영 및 선발 신체검사 시 문진표 (별지 제1호 서식)상 마약류 복용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복용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별지 제1호 서식 (신체검사 문진표) 20. (정신건강) 다음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⑤ 마약, 대마 등 물질을 사용해본 경험 있다.

- 시행일 2023년 8월 1일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군 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전역하는 장병들의 의료부담 완화를 위해 군 병원 진료기간을 전역 이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합니다.

■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확대하여 군 의료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 추진배경 진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로 전역한 장병들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확대하여 군 의료의 책임성 강화
- 주요내용 진료미종결 전역자에 대한 군 병원 진료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
* 군 병원 또는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이후 후속 조치가 필요한 경우, 1년이 경과하더라도 진료 제공 가능
- 시행일 2023년 3월 29일부터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국방부 보건정책과 (☎ 02-748-6644)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올해 하반기(7월~8월 예정)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합니다.

*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주관하고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앱 개발

- 「마음건강」 모바일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하여 개발된 서비스로, AI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 또한, 장병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방복지포털' 및 '나라사랑포털'과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추진배경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2023년 7월~8월부터 「마음건강」 모바일 앱을 운영
- 주요내용 「마음건강」 앱은 신체활동·인지뇌과학·심리학 연구결과 및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자문에 기반하여 개발된 서비스로, ChatGPT 등 AI기술을 활용하여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
- 시행일 2023년 7월 ~ 8월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병무청 동원관리과 (☎ 042-481-2803)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에 성명, 생년월일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 안장이나 군에서 군번을 찾는 과정에 성명, 생년월일이 병무청 병적기록과 다를 경우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을 해야 했으나,
- 올해 9월부터는 민원인의 병무청 방문없이 현충원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서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정정합니다.
-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 등 병역이행자와 유족의 편익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유관기관 협업, 병적
기록 정정절차
간소화

- 추진배경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절차 간소화로 병역이행자 등의 편익 제고
-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의 현충원·호국원 안장·합장·이장, 각 군에서 '군번 찾기' 중 성명·생년월일 등 불일치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으로부터 병적기록 정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받아 병무청에서 직권 정정 처리
- 시행일 2023년 9월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병무청 정보기획과 (☎ 042-481-2652)

AI 챗봇 민원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가 도입됩니다.

- 그동안은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일과시간 중 전문상담원에게 다시 상담 신청을 해야 했지만,
- 올해 11월부터는 챗봇 상담 중 평일 일과시간 중 원하는 시간을 지정하여 상담을 예약하면,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추진배경 챗봇 상담 중 자세한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원 '상담 예약서비스' 제공으로 편의 제고
- 주요내용 휴일·야간 챗봇 상담 중 상담원과 자세한 상담을 위해 평일 일과시간 중 상담을 예약한 경우 전문상담원이 먼저 연락해서 상담 서비스 제공
- 시행일 2023년 11월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 042-481-2918)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온라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용 병역의무자 학교생활 정보가 확대됩니다.

- 그동안은 학교생활기록부만 온라인으로 확인되어, 학생건강기록부가 필요한 경우 병역의무자가 학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거나 병무청에서 문서로 요청하였으나
- 올해 6월부터는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편의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 추진배경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 온라인 확인으로 병역의무자의 서류 제출 부담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 주요내용 병무청과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온라인 연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용 병역의무자 학교생활 정보가 기존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건강기록부 추가
- 시행일 2023년 6월

입영 전,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한 상담 서비스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22)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군 생활 적응 및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 전문상담관의 상시 상담이 가능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현재는 서울, 부산 등 6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 오는 7월, 수원과 인천에도 추가 설치되어 더 많은 병역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 상담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직업계 학교 등을 직접 방문하여 대면상담 등을 실시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 병역진로설계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입영 전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통해 군 복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병역이행이 학업이나 경력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되도록 지원
- 주요내용

1:1 병역진로상담	· 군 특기 연계, (온라인) 직업선호도검사 실시 · 전문상담관 1:1 심층 상담 → 적성·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
입영 정보제공	· 병역이행과정 절차 소개(취업맞춤특기병, 기술행정병 지원 등)
군 적응 체험·교육	· 군 보급품 전시, 군 장비·전투식량 등 모의 체험이 가능한 전시·체험관 운영
- 센터 운영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센터(연중),
수원·인천센터('23년 7월부터)
* 온라인 서비스 이용 : 병무청 누리집 > 병역진로설계 > 개인·단체신청
- 시행일 2023년 7월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병무청 현역모집과 (☎ 042-481-2719)

육군 통신장비운용 특기 모집병 지원자격이 대폭 개선됩니다.

- 그동안은 통신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 올해 5월부터는 통신장비 운용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軍)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됩니다.
 - * 해당특기 : 전술통신장비운영/정비, 이동통신장비운영/정비
- 이를 통해 개인의 적성과 군사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 복무가 자기개발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추진배경 비전공자,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자격 확대
- 주요내용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을 통신장비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전공자에서 모든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확대
 - * 단, 신체 사항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시행일 2023년 8월

대체역 심사위원회 위원 수 조정

병무청 병역공개과 (☎ 042-481-2774)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가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됩니다.

- 2020년 6월 대체복무제도 도입 초기에 누적된 심사신청 건수, 다양한 의견 반영 등을 고려하여 29명으로 운영하였으나,
- 심사신청 건수가 감소하고 위원 수 과다로 인한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 등을 개선하고자, 올해 6월부터는 위원 수가 13명으로 조정됩니다.
- 이를 통해 심도 있고 균형적인 심사, 위원수당 예산 절감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 조정

- 추진배경 대체역 편입 심사신청 건수 대폭 감소 및 위원수 과다에 따른 심사위원회 운영의 비효율성 문제 개선
- 주요내용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29명에서 13명으로 조정
- 시행일 2023년 6월 29일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 02-2079-6827)

수출된 방산물자의 하자보수를 이행하기 위하여 수리부속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가 면제됩니다.

* 우선, 하자보수 조치를 하고 7일 이내에 수출거래 현황을 제출

■ 최근 2년 이내, 수출허가 받은 방산물자를 하자보수하기 위한 수리부속인 경우 해당되며,

■ 해당 수리부속을 수출하고,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서 방위사업청으로 수출거래현황을 제출하면 됩니다.

- 첨부 서류 :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

1. 수출신고 필증
2. 수출계약서, 주문서 등 중 1부
3. 최종사용자 증명서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추진배경 수출된 무기체계의 고장 시,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K-방산'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방산수출 활성화차원의 규제개선임.
- 주요내용 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하자 보수용 수리부속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 사전허가제도 → 사후신고제도
- 시행일 2023년 12월 1일(예정)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 02-2079-6920)

4차 산업혁명 기술 등 첨단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당선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합니다.

- 방위사업청은 기존 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신기술을 융합시켜 신속하게 개발한 후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하고 이를 군(軍) 소요와 연계시켜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신속연구개발사업을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에 참여한 기관의 제안과제가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1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입찰 공고하는 사업부터 적용 예정입니다.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배경 4차 산업혁명 등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우수 기술력을 갖춘 기관의 신속연구개발 대상사업 공모 참여 활성화
- 주요내용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사업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제안서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행정·안전·질서



1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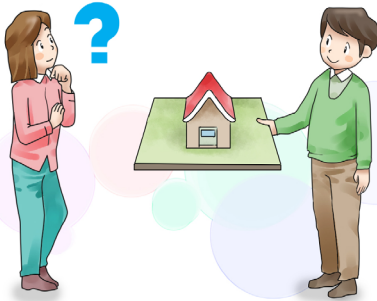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86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시행일 : 2023년 4월 18일
(단,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3.7.19. 시행)

Before

그동안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보증금 회수 때 미치는 정보 파악 어려웠습니다.



After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임대차
정보 제시

납세 증명서
제시

임대인 송달 없이
임차권 등기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2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95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 시행일 : 2023년 7월부터 순차적 개통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해집니다.

• 그동안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평소 친숙·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시행합니다.



- ① SRT 승차권 예매
- ② 자동차 검사 예약
- ③ 수목원 예약
- ④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 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 ⑥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3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96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제1회 고향사랑의 날'

•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고향사랑의 날'이 대국민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4일'에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시행됩니다.



4 해양수산부

자세한 내용은 p.200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Before

그동안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After

해수욕장 관리청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불편을 야기하는 물건 등을 즉시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법제처

자세한 내용은 p.203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Before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불필요한 분쟁·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준이 없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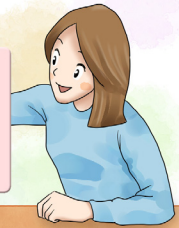
한국식 나이?
만 나이?



After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만
나이



6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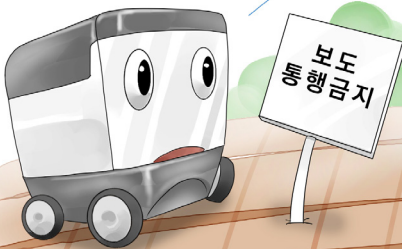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210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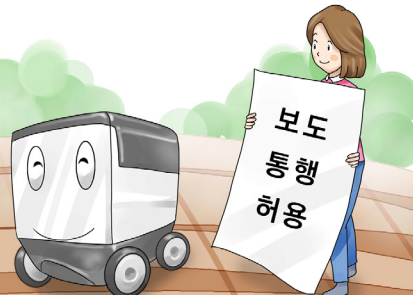
Before

지금까지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습니다.



After

앞으로는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고 보도 통행이 허용됩니다.



7 소방청

자세한 내용은 p.213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Before

종전에는 위험물을 허가 받은 제조소에서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습니다.



After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8 기상청

자세한 내용은 p.215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시행일 : 2023년 12월

Before

지금까지 지진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After

지진정보 직접연계를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가 신설되고, 임차권 등기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및 제3조의3 제3항).

-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전, 위 각 정보의 열람에 동의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을 권고합니다(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 또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게 되어, 거주 이전이 보다 자유로워집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 추진배경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의무 신설 및 임차권등기 신속화
- 주요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①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②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 부여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 확인 시,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경료 가능
- 시행일 2023년 4월 18일 (단, 임차권등기 신속화는 23.7.19. 시행)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스톱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톱킹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스톱킹행위로 처벌하는 “온라인 스톱킹*” 유형을 신설하였습니다.

* 온라인 스톱킹 :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행위 등 신설(소위 ‘지인능욕방’, 유명인 사칭 SNS 이용 등도 처벌 가능)

- 스톱킹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기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하도록 잠정조치* 기간을 현행 2개월(최대 6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로 연장하는 등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잠정조치 :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 등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명령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추진배경** 스톱킹범죄는 감금·납치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살인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스톱킹 단계에서부터 행위자를 엄정하게 처벌하고, 강력하게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
- **주요내용**
 - (행위자 처벌 강화) ▶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스톱킹 가해자 처벌 가능, ▶ “온라인 스톱킹”도 스톱킹으로 처벌 가능
 - (피해자 보호 확대) ▶ 행위자의 피해자의 가족, 동거인 접근 금지,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시행일** 2023년 7월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구축

법무부 의료과 (☎ 02-2110-3986)
법무부 치료처우과 (☎ 02-2110-3338)
법무부 소년보호과 (☎ 02-2110-3355)

2023년 하반기부터 수용자(피치료감호자·보호소년 포함)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등 각종 약품의 부적절한 처방 및 중복처방 예방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과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 등(교정시설·국립법무병원·소년보호기관)을 연계하여 DUR*이 구축됩니다.

*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 의사 및 약사에게 의약품 처방·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

- DUR 구축을 통해 교정시설 또는 외부 의료시설 진료 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가 수용자의 처방 내용을 확인하여 중복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합니다.
- 수용자의 과거와 현재의 진료 및 처방 적정성을 점검하여 부적절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사전에 통제합니다.

이는 향후 의료용 마약류 등 각종 의약품 중복처방 및 오남용 으로부터 수용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복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
구축

- 추진배경 수용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등 각종 의약품의 부적절한 처방 및 중복처방 예방
- 주요내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시스템과 법무부 교정정보시스템(교정본부)·통합의료 정보시스템(국립법무병원)·소년보호교육종합관리시스템(소년보호기관)을 연계하여 DUR 구축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 02-2110-3465)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해 교정시설 마약류 수형자에 대한 치료·재활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교정시설 중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보건의료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마약중독 치료·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 치료·재활프로그램은 단약동기 강화, 재활교육, 치료·재활 전문상담, 인지행동 치료*, 치료공동체**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 인지행동 치료(CBT,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대상자의 인지와 사고 과정을 수정하여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기법

** 치료공동체 : 공동으로 생활하며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조성된 환경

■ 출소 후 지속적인 사회내 치료·재활을 위해 지역재활시설과의 연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추진배경 '마약청정국 지위회복'을 위한 교정시설 치료·재활기능 강화
- 주요내용
 - 교정시설 중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마약중독 치료·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재활교육, 치료·재활 전문상담, 인지행동 치료, 치료공동체 운영 등으로 구성
 - 지역재활시설과의 연계 지원
- 시행일 2023년 9월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법무부 이민정보과 (☎ 02-2110-4097)

2023년 7월 3일부터 국내 체류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포함)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외국인은 국민과 달리 신분증(외국인등록증)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 국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 이용 가능

■ 이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는 우선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추후 시스템 안정화 및 금융기관의 수요 등을 파악하여 제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 **추진배경** 외국인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 구축으로 금융기관 등에서 국내 체류외국인도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2022년 12월 「출입국관리법」개정으로 시행근거 마련
- **주요내용** 외국인이 소지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이 필요한 경우 시스템을 통하여 법무부가 보유한 정보(인적정보, 얼굴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 **시행일** 2023년 7월 3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법무부 체류관리과 (☎ 02-2110-4065)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합니다.

■ 법무부는 파종기·수확기 등 단기간 일손이 필요한 농·어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15년 단기취업(C-4, 90일) 비자로 계절근로 시범 사업 시작, 체류기간 90일이 너무 짧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2019년 말부터 장기 체류자격인 E-8(5개월) 신설·운영

■ 계절근로제는 농·어촌의 합법적 외국인 고용을 촉진하고 농어업 분야 계절적 구인난 해소에 기여해왔으나, 체류기간이 5개월에 불과해 현장 및 지자체에서는 체류기간 확대를 건의해왔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추진배경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 외국인 계절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체류기간 5개월이 짧다는 현장의 건의 반영
- 주요내용 현장 수요에 맞게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6월 30일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법무부 국가소송과 (☎ 02-2110-3207)

앞으로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전부 산입하게 됩니다.

- 그동안 재판 및 국가배상심의회에서 국가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경우에는 예상 군복무기간을 일일이익* 계산을 위한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 사망·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얻을 수 있었던 기대수익

- 이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을 여성과 차별하여,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39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피해자가 군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라는 취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계속되어 온 ‘병역의무 대상 남성’과 여성 간의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의 차별을 폐지하여,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국가에 봉사하는 국민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불합리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추진배경 국가배상액 산정 시, 병역의무 대상 남성의 군복무 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제외되어 동일 사건으로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여성에 비해 배상금 적게 책정되는 경우 발생
- 주요내용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국가배상액 산정 시 예상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 시행일 2023년 하반기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02-2110-3164)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 ‘소권남용’은 청구가 이유없음이 명백한 소를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경우로 소권을 남용한 소 제기자들은
 - 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채 소장을 제출하고, ② 법원의 보정명령에 소송구조 신청을 남발하며, ③ 소송구조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도 즉시항고를 하면서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음

■ 소권을 남용하는 소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그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 * 소송구조 : 경제적 여력이 없는 사람의 소송비용 지급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소송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을 면제하는 제도

■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은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그 경우 피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하도록 하며

- 소권을 남용하여 소 또는 항소를 제기한 사람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추진배경 소송절차 전반에서 소권 남용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소모와 사법기능의 혼란을 방지
- 주요내용
 - 소장 접수 보류절차 마련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해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
 - 소송남용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각하 및 과태료 처분 가능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법무부 형사법제과 (☎ 02-2110-369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를 도입하는 「성폭력처벌법」 일부 개정안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지원 대상이 현행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 진술조력인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원에서 증언할 때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 의사소통을 중개, 보조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 선정 등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 증거보전기일, 공판기일 등에서 피해자가 증언한 경우, 수사과정에서 영상녹화된 생생한 진술까지 본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법정에서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아동친화적인 장소에서 영상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언할 수 있게 됩니다.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 절차 도입

- 추진배경 현재 위험 결정으로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 측의 공격적 반대신문에 노출되는 상황으로 2차 피해 방지 필요
- 주요내용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법원·수사기관 보호조치 노력의무 신설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 특례 신설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現 13세 미만→19세 미만) ▶법원이 공판준비절차 통해 신문사항 미리 확인 ▶중계시설(영상) 증인신문 시 최초 영상녹화 장소 등 아동친화적 장소에서 실시 원칙 규정 등
- 시행일 2023년 10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 044-205-2733)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그간 공공웹·앱에서만 이용 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하여 국민이 평소 친숙·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본격 시행합니다.
- 올해 하반기부터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등 6종의 선도서비스를 네이버지도, 카카오 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pLay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아울러, 민간앱 해당 화면이나 메뉴에 디지털서비스 개방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표시되어, 공공웹·앱으로 이동없이 즉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도서비스 현황〉

구분	서비스	민간앱
1	SRT 승차권 예매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 T, 토스, 신한pLay, KB스타뱅킹
2	자동차 검사 예약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
3	국립수목원 예약	네이버·네이버지도, KB스타뱅킹, KB Pay
4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KB스타뱅킹, KB Pay
5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 T, KB스타뱅킹
6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KB스타뱅킹
7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네이버, 토스, KB Pay

국민 이용빈도와 파급효과가 큰 공공서비스에 대해 민간 개방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서비스 개방 개요

- **추진배경**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및 민관협업 기반의 서비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디지털서비스 개방 추진 필요
- **주요내용** 국민에게 친숙·편리한 민간앱(웹)에서 공공서비스를 신청·이용함으로써, 필요한 민관 융합서비스를 원스톱 처리
- **시행일** 2023년 7월부터 순차적 개통

2023년 9월 4일은 ‘제1회 고향사랑의 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 044-205-3448)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생각해보는 ‘고향사랑의 날’이 대국민공모를 통해 ‘9월 4일’로 선정됨에 따라, 2023년 9월 4일에 제1회 고향사랑의 날이 시행됩니다.

* 고향사랑기부금법시행령 개정안 시행(‘23.7.4.)

■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23.1.3.공포)으로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대국민공모(2.9.~3.2.)를 통해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9월 4일’은 ‘고향 사랑’의 각 첫 음과 유사하여 기억하기 쉽고,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고,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思)’는 의미를 함께 담을 수 있어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제1회 고향사랑의 날’에는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금사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제1회 고향사랑의 날

- 추진배경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 주요내용 대국민공모를 통해 9월 4일을 ‘고향사랑의 날’로 선정했으며, 2023년 9월 4일에는 제1회 고향사랑의 날 기념식 및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전시회 등 실시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044-205-2347)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합니다.

- 위원회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있던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근거를 법률로 격상합니다.

- 각 부처에서는 유사·중복 위원회를 신설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외부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추진배경 유사·중복 위원회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무분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 주요내용
 - (존속기한 설정) 위원회 신설 시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을 정하여 명시*
 - * 행정위원회 : 법률에 명시, 자문위원회 : 법령에 명시
 - (존속기한 연장)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경우 행정안전부와 미리 협의
 - (존속기한 점검) 2년마다 소관 위원회의 존속여부 등을 점검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정책자문위원회) 대통령령에 근거한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률로 격상
- 시행일 2023년 11월 17일
 - * (존속기한 설정) 법 시행 이후 신설하는 위원회부터 적용
 - * (존속기한 연장) 법 시행 이후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위원회부터 적용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 044-205-4522)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운영되었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시행합니다.

- 다만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미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요건을 1분으로 변경해야 하는 지자체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 및 홍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보도자료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추진배경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
- 주요내용 인도 구역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해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운영하고 신고요건도 1분으로 일원화하여 시행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 044-205-3545)

공중화장실 등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 등 설치·관리자는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mm이하로 설치하고, 원활한 환기 등을 위해 윗부분과 천장은 30cm 이상이 되도록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 추진배경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등 범죄가 지속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도 도입
- 주요내용
 -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
 -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5mm 이하로 설치, 환기 등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30cm 이상으로 설치
- 시행일 2023년 7월 21일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물건 무단 방치 규제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 044-200-5253)

2023년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이른바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 그간 캠핑인구 증가와 함께 해수욕장 안에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선점하여 장기간 야영용품 등을 방치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이용하는 국민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이에 올바른 해수욕장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알박기 텐트 방치 행위를 규제합니다.
- 해수욕장 안에 물건 등을 반복·상습적으로 방치하거나, 안전상 위험 요소가 있을 경우 해수욕장 관리청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즉시 물건 등을 직접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제거된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물건을 반환받고자 할 경우 물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해수욕장 내 물건 무단 방치 규제 관련 보도자료('23.6월 말 배포 예정)

해수욕장 내 물건 무단 방치 규제

- **추진배경** 해수욕장 내 알박기 행위 규제를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 및 지역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이용환경 조성
- **주요내용** 해수욕장에 방치된 야영용품 등을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도록 제거할 물건의 종류를 정하고, 보관 및 처리 절차 마련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컨테이너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6)

2023년 6월 28일부터 해상운송용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이 개정 시행됩니다.

■ 「선박안전법」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에 대한 성능검사 제도가 도입·시행됩니다.

- 형식승인 받은 컨테이너의 품질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해 그 성능을 검사하고, 그 결과 동일한 공정으로 생산된 컨테이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판매중지, 회수·교환·폐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등록기준 및 등록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 앞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는 선박안전법령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선박안전법 개정시행 보도자료(예정)

컨테이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강화시행

- 추진배경 평택항 컨테이너 사고(‘21.4월) 계기,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에 기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선박안전법」 개정·시행
- 주요내용
 -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품질 제고를 위한 성능검사제도 도입·시행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등록기준 신설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외교부 여권과 (☎ 02-2002-0179)

외교부는 올해 2023년 6월 20일부터 분실여권을 접수·등록하는 즉시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자동으로 수령 안내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 분실여권이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에 접수되어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등록되면 분실여권 명의인에게 수령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 또한, 분실여권 명의인이 여권 보관기관과 먼 곳에 거주하시는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으로 이송을 요청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보를 위해, 외교부는 유관기관(경찰서, 공항공사 등)이 분실여권을 습득하는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전달하도록 업무를 개선하였습니다.

■ 그간, 분실된 여권은 유관기관에서 일반 유실물에 준해 관리되어 외교부 전달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경찰서에 여권분실을 신고할 경우, 단순 분실물 신고로 처리될 뿐 외교부 PICAS에 등록되지 않음

■ 이로써 분실여권이 시군구청에 전달되기까지 최대 한 달 이상 걸리던 것이 빠르면 이를 이내로 줄어줄게 됩니다.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 **추진배경** 여권이 분실 및 습득 과정에서 물건(유실물)에 준하여 취급되고 민원인에게 습득 통보, 전달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 해소
- **주요내용**
 - 분실여권을 등록 즉시 수령 안내 메시지 자동 발송
 - 유관기관(경찰서, 공항공사 등)이 여권을 습득한 경우 즉시 여권사무대행기관(시·군·구청 여권과)으로 인계하고 등록토록 개선
- **시행일** 2023년 6월 20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 044-200-6736)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6월 2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 행정 분야의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 만 나이는 올해 생일 전이라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에서 추가로 한 살을 빼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나이로 계산

■ 이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게 됩니다.

■ 그동안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했던 불필요한 분쟁·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국제통용기준인 만 나이를 사용함으로써 각종 사회적·행정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만 나이 예외 규정들은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조사를 거쳐 소관 부처와 협의해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제처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

취업, 학업, 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취학연령)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입학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2024년을 기준으로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합니다.
- ② (주류·담배 구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현재 연도 - 출생 연도'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 ③ (병역 의무)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와 관련된 나이는 '현재 연도 -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2023년을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습니다.
- ④ (공무원 시험 응시)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2023년을 기준으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니다./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

- 추진배경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만 나이, 만 나이 예외 규정 등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 해소
-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을 명문화하여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 누구나 알기 쉽게 '만 나이 사용' 원칙을 명확히 함
-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법제처 법령정보과 (☎ 044-200-6577)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가 확대됩니다.

*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09개 법령 일괄정비 완료(4.25. 시행)

-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 과태료, 과징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등록취소나 영업폐쇄 처분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보도자료>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 **추진배경** 코로나 19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제재처분의 감경 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정비 추진
- **주요내용**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및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의·중과실 없는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최대 70퍼센트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처분의 감경범위 확대
- **시행일** 2023년 4월 25일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 042-724-7564)

혁신제품 시범구매* 매칭 기준을 기존 ‘공정배분’ 방식에서 정책효과를 우선하는 ‘전략적 매칭’으로 개편합니다.

* 조달청은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483억원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혁신기업에게 실증 경험을, 수요기관에게 혁신제품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혁신제품 실증 기회를 되도록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에게 부여하였다면, 앞으로는 정책 지원 효과를 우선 고려합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의 우선순위는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 관련성, 수출 증대 등 정책 지원효과를 고려하여 정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기업이 제출하는 시범사용 기본계획서도 효과성 등을 사전 검토하는 절차가 추가됩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 추진배경 혁신제품 초기 시장 진입 지원과 정책지원 효과 제고 등을 위해 시범구매 사업의 전략적 운영 필요
- 주요내용
 - 시범구매 대상 선정시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 관련성, 수출 등을 우선 고려
 - 시범구매 기본 계획서의 사전검토 절차 추가
- 시행일 2023년 9월(예정)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 042-724-7545)

그간 다양한 기준으로 분산 공개되었던 계약관련정보의 공개 플랫폼을 일원화하고, 연계된 계약정보까지 확대 공개하는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을 구축·운영합니다.

- 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되던 ‘통합검색’, ‘입찰정보’, ‘계약과정 통합공개’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색·조회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외부시스템에서 연계된 계약정보도 해당 기관이 공개여부를 판별하여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여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합니다.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은 2023년 9월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 플랫폼 구축으로 공개정보의 확대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공공계약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나라장터 내 계약관련 정보를 일관된 기준으로 통합 공개하는 단일 플랫폼 필요, 연계 계약정보에 대한 공개 플랫폼 필요
- 주요내용
 - (플랫폼통합) 나라장터 내 각각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계약정보공개 기능 단일화
 - * 공개대상 정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는 단일 플랫폼 구축
 - (연계정보통합) 나라장터 외 시스템에서 처리된 계약정보도 연계하여 통합 공개 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 시행일 2023년 9월

소방안전장비 6종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조달청 구매총괄과 (☎ 042-724-7266)

소방안전장비 6종*에 대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외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 (현재) 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 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 다양한 시종제품을 다수의 업체와 계약 후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공급하는 제도로, 수요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제품 선택 가능

▣ 앞으로는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우수품질 확보가 중요한 소방안전장비 6종은 2단계경쟁*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 일정금액 이상(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기타 5천만원) 구매 시 5인 이상 업체에 대해 품질·가격 등을 비교·평가하여 구매하는 제도

개정된 내용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소방안전장비 6종 MAS 2단계경쟁 예외 적용

- 추진배경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장비의 우수품질 확보 필요
- 주요내용 소방장비관리법상 개인보호장비 6종*의 경우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어 우수품질 확보가 중요하므로 2단계경쟁 예외 추가 적용
* (현재) 소방용특수방화복 + (추가) 공기호흡기,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방화두건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와 (☎ 054-716-8100)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현행 608개 품명)이 정비됩니다.

- 품질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수요기관 검사대상의 안전관리물자(34개 품명)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검사·시험이 가능한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추가하고,
- 현행 대상품목 중 계약 실적이 미미하여, 검사이력이 없는 물품, 검사 제외 시 품질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 등은 전문검사기관 검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 **추진배경**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정비하여 납품검사의 실효성 강화 필요
- **주요내용**
 - (추가 품명) 125개 안전관리물자 중 납품검사 대상으로 지정 되지 않은 34개 품명 등 전문검사기관 검사·시험이 가능한 물품
 - (제외 품명) 현행 608개 검사대상 물품 중에서 계약실적이 미미하여 검사이력이 없거나 품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
- **시행일** 2023년 7월 1일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경찰청 교통기획과 (☎ 02-3150-0659)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23.10.19.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물류 배송, 순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이동로봇은 기존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이 금지되었으나,
 - 앞으로는 실외이동로봇이 ‘보행자’에 포함되고 보도 통행이 허용되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또한,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운용자’의 정의와 준수사항이(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가 되지 않도록 운용 의무 등) 신설되어, 교통법규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 등이 부과됩니다.
- * 보도 통행이 허용되는 실외이동로봇의 기준은 구체적인 내용을 시행규칙에 마련할 예정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주행 모습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을 제19357호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추진배경 실외이동로봇이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
- 주요내용
 -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및 보도 통행 허용 규정 신설
 -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사람을 운용자로 정의하고, 운용자의 준수 사항을 신설
- 시행일 2023년 10월 19일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0611)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가 신규 도입됩니다.

(‘23.7.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예정)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와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예정으로,
 -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며, 이외에도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는 보도를 확대 설치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 다만, 지자체별 실정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에 경과규정을 둘 예정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입법예고 제2023-10호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 추진배경 운전자가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
- 주요내용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경찰청 교통운영과 (☎ 02-3150-0611)

2023년 7월 4일부터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됩니다.

(‘23.7.4.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기존에는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노인 관련 ‘시설’의 주변도로 중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 ‘시설’은 아니지만, 노인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전통시장 등)’ 주변은 노인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 하지만, 앞으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9158호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추진배경** 노인 교통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장소의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하도록 확대
- **시행일** 2022년 7월 4일

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 044-205-7483)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3조, 제34조 개정('23.7.4.시행)

-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관계인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의2 신설('23.7.4.시행)

참고

소방청 홈페이지>소방소식>보도자료>오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과태료 조항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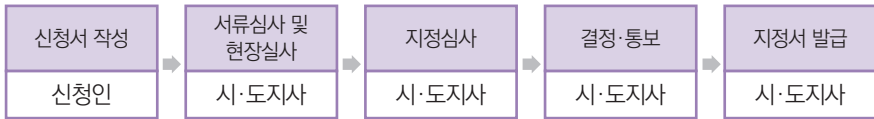
- **추진배경**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2019년 9월 무허가 위험물 시설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법 규범력 확보
- **주요내용**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 **시행일** 2023년 7월 4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민간영역으로 확대

소방청 장비총괄과 (☎ 044-205-7691)

소방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토록 하는 등 소방장비정비센터의 기능을 민간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제출



- 기존에는 소방청장이 소방장비정비센터(충북 음성)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소방장비의 점검·정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나,
- 전국 소방장비 관리의 한계, 소방차의 원거리 이동·관리에 따른 관할 소방력 출동공백 발생 등 현장대응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 “정비사업소”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소방장비의 관리 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명 칭	소방장비정비센터	소방장비정비센터 + 정비사업소(추가)
위 치	충북 음성	전국 확대
지정권자	소방청장	시·도지사
기 능	소방장비 전문관리	지역별 소방장비 맞춤형 관리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 절차 마련

- 추진배경 소방장비정비센터까지 전국 소방차의 원거리 이동·관리에 따른 관할 소방력 출동공백 발생
- 주요내용 정비사업소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관할구역 내에서 지역별 소방장비 맞춤형 관리
-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 02-2181-0081)

지진정보 직접연계를 확대하여 보다 신속하게 지진정보를 전달합니다.

-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전파시스템 간 지진정보 직접연계를 70개 기관(행정안전부, 시도교육청 및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확대합니다.
- 또한, 미연계된 광역시·도 교육청 2곳을 연계하여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과 직접연계를 완료하고, 이를 통해 지진 발생 시 교육청과 연계*된 235개 학교의 학생들이 지진정보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 기상청의 지진통보시스템-교육청 중계서버-학교 방송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교내방송으로 지진발생 상황과 행동 요령을 자동으로 음성안내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 **추진배경** 다양한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통하여 지진정보 수신 시각지대 해소 및 신속한 지진 재해 대응 기반 마련 필요
- **주요내용**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재난관리책임기관·교육기관 등으로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추진
- **시행일** 2023년 12월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 032-835-2551)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제정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하 “수상레저기구등록법”)과 잔여 조항을 정비한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법률이 6월 11일 시행됩니다.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정, 「수상레저안전법」 전부개정 공포(22.6.10.)

- 새롭게 제정된 「수상레저기구등록법」에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 주체를 해양경찰청장으로 일원화 △안전검사필증의 부착 의무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무선설비 및 위치발신장치의 설치·작동 의무화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전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상레저안전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수상레저활동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한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 및 보험등 가입관리전산망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제·개정 법령에서 신설된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이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한 취지에서 도입된 만큼, 해양경찰청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약 6개월간인 올해 12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 예정입니다.

〈신설된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사항 및 부과기준액〉

내용	부과기준액
• 무동력 수상레저기구 대여사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의무화 * 기구 및 부속품에 대한 정기점검, 기상정보·조류·수상상태·안전수칙 고지, 이용객 교육시 휴대용 구명장비(구명튜브, 레स्क 튜브 등) 비치	100만원
• 동력수상레저기구 용도변경(개인용↔사업용)시 변경등록 의무화	1~30만원

내용	부과기준액
• 등록번호판 미부착 상태에서 운항 금지	50만원
•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무선설비 작동 의무화 * 한정연해·연해·근해·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시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화 * 연해·근해·원양구역을 운항구역으로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 안전검사필증(검사유효기간 및 검사받은 년도 기재) 부착 의무화	20만원
•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증 반납 의무화	
• 시험운항허가를 받은 자의 운항조건 준수 의무화 * 시험운항의 목적 및 운항구역 준수, 안전장비 비치	30만원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보도자료>「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수상레저기구
등록법」, 「수상레저
안전법」 분법 시행

- **추진배경** 1999년 「수상레저안전법」 제정 이후 수많은 개정으로 인한 복잡성과 국민들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한계
- **주요내용**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지자체장의 등록사무에 대한 해경청장의 지도·감독, 레저기구 안전검사필증 부착 의무화,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5년단위) 수립, 조종면허증의 대여·알선행위 금지, 보험 등 가입관리 전산망 구축·운영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총괄담당관실 (☎ 044-200-4685)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044-200-4122)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심의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고,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공정위는 현장 조사 시 조사공문에 범위반혐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 사유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피조사인이 현장조사 시 수집·제출된 자료와 조사목적 간의 관련성을 검토하여 자료의 반환·폐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조사·심의 과정에서 피조사인의 의견 개진 기회가 확대됩니다.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개정 조사절차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 **추진배경** 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방안 추진
- **주요내용**
 -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 명확화) 조사 공문 범위반혐의 기재 구체화,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기준 마련, 현장조사 기간 연장 시 연장사유 공문 적시
 -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내·외부 검토 절차 마련)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폐기 요청 절차 신설
 -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의견 개진 기회 확대) 예비의견청취절차 신설 등
- **시행일** 2023년 4월 14일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044-200-4937)

그간의 경제성장, 기업집단 규모 확대 등 변화한 현실에 맞게 공시제도 전반을 합리적으로 개선했습니다.

- 기업집단현황 공시 관련, 정보의 활용이 낮은 8개 분기 공시 항목을 연 1회로 통합했고, 지배구조 항목을 상단에 배치했습니다.
- 공시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 관련, 잘못된 공시 내용 정정 시 적용되는 감경비율을 세분화하고 최대 감경폭도 확대했습니다.
- 이와 같이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시장에 의미있는 정보가 중점적으로 제공되고, 기업들의 공시 부담 또한 완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 합리적 개선 및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 추진배경 경제성장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공시제도 합리적 개선
- 주요내용
 - 기업집단현황공시 8개 분기 공시 항목 연 1회 통합
 -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 시행일 2023년 5월 1일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044-200-4935)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대법원 판결을 반영하여 사익편취행위의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의 요건, 예외사유, 규제 예외사항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여 기업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시행

사익편취 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 추진배경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합리화
- 주요내용
 - 사익편취행위 '부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물량 몰아주기 요건 및 예외사유에서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로 오해가능한 규정을 정비
 - 지침상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하여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 시행일 2023년 5월 22일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 044-200-4962)

대리점법(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하였습니다.

- ▣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감경할 때 종전에는 자진시정과 조사·심의 협력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50%까지만 과징금 감경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최대 70%까지 감경이 가능해집니다.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 **추진배경** 대리점법 위반 사업자의 적극적인 자진시정 유도 추진
- **주요내용** 사업자의 자진시정, 조사·심의 협력 등 사정을 감안한 과징금 감경상한을 종전 50%에서 70%로 확대
- **시행일** 2023년 6월 7일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 044-200-4432)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공제기준이 세워져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됩니다.

* 제공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여행상품의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이루어지는 거래(‘선불식’, ‘적립식’, ‘여행보험’, ‘여행저축’ 등 주로 크루즈 여행 상품 판매)

■ 기존에는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에 적용되는 해약환급금 기준이 없어, 계약해제 시 사업자가 특약에 따라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습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가 국외여행 30일 전까지 해제하는 경우 0%, 여행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 50%까지 공제 가능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적용

- **추진배경**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 등에 대한 합리적인 위약금 기준 신설
- **주요내용**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의 이용일자가 확정된 후 계약을 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 손실을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하도록 함
- **시행일** 2023년 5월 16일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 044-200-7753)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에만 보상금이 지급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의 수입회복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 앞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의 수입이 신고로 인하여 회복된 경우에도 신고자 보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개정내용은 2023년 9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면
보상금 지급 실시

- 추진배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에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이 불가하여 신고자 형평성에 문제 발생
- 주요내용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사유를 신고로 인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회복'에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으로 확대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 시행일 2023년 9월 22일 이후 신고로 인한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 02-397-7276)

국제항공노선에 탑승하는 항공승무원을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 관리가 강화됩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22.6.10. 개정)

■ 기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자력안전 위원회로 일원화됩니다.

* (원안위)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기준 수립, (국토부)항공운송사업자 관리·감독

■ 아울러, 항공승무원에 대한 교육과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 개정 ('22.6.10. 개정)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승무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및 원안위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의무를 규정
 -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제기관을 원안위로 일원화
 -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을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토록 하며, 폐업시 해당 자료를 제출토록 규정
 - 원안위가 항공승무원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항공운송사업자의 승무원 안전관리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 등 실시 근거 마련
-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 02-397-7275)

극저준위 미만 수준인 폐기물이 시설내에 장기보관되고 있어, 이를 적기에 처리·처분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가 도입됩니다.

* 자체처분 : 방사성폐기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이거나 허용선량 만족이 확인되면 원자력안전법령 적용이 제외되어,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소각, 매립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

** 사전검토 : 사업자가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자체처분계획의 내용 중 핵종별 농도 측정 및 평가방법이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 이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자발적 자체처분 기술개발과 최신기술 도입 등을 적극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철저한 안전성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 **추진배경** 자체처분이 가능한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효율화 및 효과적인 자체처분 유도로 방사성폐기물 저감에 기여하기 위해 제도개선 추진
- **주요내용**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 사업자 요청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
 -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하는 조항 마련
 -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하는 조항 마련 등
- **시행일** 2023년 7월 예정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 02-2100-3066)

그간 명확한 규정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던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이 마련되어, 자율주행차·배달로봇·드론 등 모빌리티 산업 분야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건전한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 2023년 9월 15일부터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를 운영하려는 자는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 영상정보를 촬영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이 주어진 목적지까지 주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로상의 주변 영상을 촬영하여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합리적 기준 마련

- **추진배경** 현행법은 고정형 영상기기(CCTV)만을 규율하고 있어, 급증하는 이동형 영상기기(로봇, 드론, 자율주행차 등)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정보주체의 개별적 동의를 요하는 등 산업진흥 측면에서 유연한 대처 곤란
- **주요내용** 사전동의를 곤란한 이동형 영상기기 특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종합 고려하여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촬영 허용
-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 02-2100-3050)

개인정보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합니다.

- 그간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대부분이 획일적이고, 텍스트 나열의 방식으로 가독성이 떨어져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개선하도록 하여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보다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개인정보위는 2023년 말까지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 2024년부터 평가 대상자를 선정하여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하지, 이해하기 쉽게 수립하여 공개하고 있는지 등' 처리방침 평가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 **추진배경**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책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주요내용** 개인정보 처리자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
-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 02-2100-3119)

그간 해외 온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부과되었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됩니다.

-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되는 2023년 9월 15일부터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중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국내 거주 서비스 이용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가 원활해져 정보주체의 보다 자유로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행사가 기대됩니다.

참고 개인정보위 홈페이지>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한 특례규정 삭제로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자의 범위가 개인정보처리자 일반으로 확대
- **주요내용** 매출액과 보유 개인정보수 기준 일정규모* 이상의 해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해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부과
* (매출액) 전 세계 1조원 / (보유 개인정보) 개인정보 저장·관리 정보주체 수 100만명(일 평균)
- **시행일**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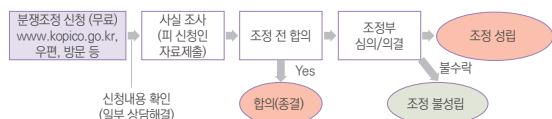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 02-2100-3145)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9.15.시행)으로 개인정보 권리침해에 따른 분쟁조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었습니다.

- 먼저,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제절차 참여를 담보하기 위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무적으로 조정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사실조사권이 도입되었습니다. 현장사실조사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공정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중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관련, 개선의견을 관계부처에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가 한층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주요 내용

- **추진배경** 국민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구제 강화를 위해 ① 분쟁조정 참여 의무대상을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② 조사관 사실조사권 부여 등 분쟁조정 위원회 기능 강화
- **주요내용**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를 일반으로 확대(공공→민간)(§43③)
 -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현장조사권 부여(§45②)
 - 조정안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조정안에 대해 수락한 것으로 간주(§47)
 - 분쟁조정위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보호위 및 중앙행정기관 통지 근거마련(§제50조의2) 등
- **분쟁조정 제도 개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분쟁을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원만히 조정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조정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kopico.go.kr / 1833-6972)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대비표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tr><th>구 분</th><th>공제율</th></tr><tr><td>① 신용카드</td><td>15%</td></tr><tr><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tr><td>③ 도서·공연·미술관 등*</td><td>30%</td></tr><tr><td>④ 전통신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td><td>40% (80%)</td></tr></table>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신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추가 • (좌 동) •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영화관람료 추가 <table><tr><th>구 분</th><th>공제율</th></tr><tr><td>① 신용카드</td><td>15%</td></tr><tr><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td>30%</td></tr><tr><td>③ 도서·공연·미술관· 영화관람료 등</td><td>30%</td></tr><tr><td>④ 전통신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td><td>40% (80%)</td></tr></table> * (좌 동)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신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조세특례제한법 (23.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1)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등*	30%																						
④ 전통신장 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구 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 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신장·대중교통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 (80%)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1억원 한도)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소득세법 시행령 (23.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5)																				
	매입자발행 계산서 제도 도입	(신설)	■ 매입자발행계산서 신설 • (발행 요건)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발급 시기에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가능 * 부가세 과세재화의 경우 이미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계산서 발행 가능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소득세법 법인세법 (23.7.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2) 법인세제과 (044-215-4221)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고위험·고수익채권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도입	(신설)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분리과세 특례 • (요건) 고위험·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 (내용)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 14% 분리과세 • (한도) 1인당 투자금액 3천만원 • (기한) 2024년 12월 31일 까지 가입분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세특례제한법· 동법 시행령 (’23.6.12.)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3)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02-2100-2664)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편	■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 (면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에 해당하는 골프장	■ 비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면세 제외 • (면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3.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6)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의 가격 계산 • (과세표준) 제조자가 실제로 반출하는 금액	■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물품 중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등 가격 계산 • (과세표준)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물품의 판매 가격에서 판매가격의 기준판매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22.7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23.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종료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 탄력세율 적용(3.5%, 100만원 한도)	■ 자동차 개별소비세 세율 • 일반세율 적용(5%)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23.7.1.)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044-215-4333)

기획재정부

구 분	증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無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등 외환거래 편의 제고	■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해외 송금 한도 •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5만불 이내인 경우	■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해외송금 한도 확대 •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인 경우	외국환 거래규정 (‘23.7.4)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신고기준 •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3천만불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필요	■ 거주자의 외화자금 차입 신고기준 상향 • 비거주자로부터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또 는 한국은행 총재 신고 필요	
■ 기업고객 대상 일반환전 가능 증권사 범위 • 자기자본 4조원 이상 및 단기금 융업 인가를 받은 경우만 법인 대상으로 일반환전(별도 조항 無, 당국 유권해석 등으로 허용)	■ 기업고객 대상 일반환전 가능 증권사 범위 확대 •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증권사 중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기재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대형증권 사에 법인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일반환전 허용(조항 신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민 편의 및 외환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행정 예고	기획재정부 외환제도와 (044-215-4751)
	■ 발주기관의 입찰서류교부시점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 까지	■ 입찰서류 교부시점 변경 • 입찰공고일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보도자료] 계약예규 개편 및 시행
발주기관의 입찰서류교부시점 변경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기획재정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협상계약 및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 소프트웨어: 80% • 그 외: 60% ■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60%	■ 협상계약 낙찰하한율 상향 • 소프트웨어 및 소방·군·경 안전장비: 80% • 그 외: 70% ■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낙찰하한율 상향: 70%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23.6.30.)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기술형 입찰 설계보상비 조기 지급	■ 턴키입찰 및 기본설계 기술제안 입찰 낙찰탈락자설계보상비 지 급시기 • 실시설계적격자: 낙찰에서 탈락한 때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낙찰자를 결정한 때* * 실시설계적격자가 낙찰에서 탈락한 때를 포함	■ 설계보상비 지급시기 변경 • (좌 등) •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1차)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한 때 - (2차) 낙찰자를 결정한 때* * 실시설계적격자가 낙찰에서 탈락한 때는 2차분 미지급	정부 입찰· 계약 집행기준 (’23.6.30.)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044-215-5212)

관세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 신고 및 납부 서비스 제공	■ 여행자 모바일 신고 • 모바일 신고의 경우 세관검사대에서 납부 고지서를 종이로 발급 받아 현장·사후 납부	■ 여행자 모바일 신고 및 납부 • 모바일 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을 자동 계산 하여 모바일로 고지·납부 ※ (참고) 관세청 홈페이지>보도자료> 5월 1일부터 휴대품 신고서 작성 없이 입국	- (‘23.7.17.)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이 필수	■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사전등록 없이 여권번호·NIID를 활용하여 상장증권 거래가 가능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30년된 외국인투자자 등록제, 역사속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23.12.14.)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6)
혁신기업 최고보증한도 확대	■ 기존 최고보증한도 • (혁신아이콘 대상기업) 150억원 • (혁신리딩기업) 70억원	■ 최고보증한도 확대 • (혁신아이콘 대상기업 및 혁신리딩기업) 200억원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 (‘23년 하반기)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2)

금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가능 및 보이스피싱 처벌수위 강화	■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 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는 적용 대상이 아님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를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 시킴으로써 지급정지, 피해금 환급 등의 구제절차가 가능 ■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병과(併科) 가능) 부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동법 시행령 (‘23.11.17.)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대면편취형 보이스 피싱도 피해구제가 가능하며, 처벌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00-2974)
금융분쟁조정제도 신속성 및 독립성 강화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심의 전 합의권고 진행 ■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을 지명방식으로 선정	■ 분쟁의 규모, 파급효과 등 고려하여, 합의권고 생략 가능 ■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위원을 공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추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3분기)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입법예고>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23.5.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631)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신설)	■ 기존대출 조회부터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타기까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 (‘23.5.31.)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 [보도자료] 내 손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신용대출을 쉽고 빠르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신설)	-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추진 '25.3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위해 AI 등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개발 추진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하여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수업혁신을 선도하는 교사 그룹 선발 및 민관 파트너십 기반 집중 연수	- (‘23년 하반기)
		- 초·중고 학생 대상 SW·AI 등 디지털 체험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새싹캠프 확대 운영 - 늘봄학교, 자유학기제·특성화고 연계 프로그램 확대, 기초·심화 과정 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교육부 디지털교육전략담당관 (044-203-7054)
학원 등 운영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 및 행정처분 실효성 확보	(신설)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일명 'PC방')만 유해업소 제외 시설에 해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3.10.19.)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일명 'PC방')과 휴게음식점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을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	
		■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의 행정처분 기간 중 폐원 또는 폐소 신고 금지 신설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044-203-6386)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평생교육 영역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 평생교육 정의 •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근거 없음)	■ 평생교육에 성인 진로교육 추가 •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추가	평생교육법 (‘23.12.14.)
		■ 성인 진로교육의 실시 기관 • 평생교육기관, 대학, 국가진로교육센터 및 지역진로교육센터에서는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기획과 (044-203-6364)
사립학교 재산처분 규제 완화	■ 교육용 재산 처분 유연화 • (제1호) 학교 이전 시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 • (제2호) 본·분교 통합 시 교지, 교사, 체육장만 처분 가능 • (신설) ■ 재산 처분 신고범위 확대 • (제1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 (제3호) 처분가액 3억 • (제4호) 차입금 200억 및 차입비율 20% • (제5호) 기금 용자 200억 • (제7호) 권리포기액 3억	■ 교육용 재산 처분 유연화 • (제1호) 학교 이전 시 모든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 • (제2호) 본·분교 통합 시 모든 교육용 재산 처분 가능 • (제5호)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가능 ■ 재산 처분 신고범위 확대 • (제1호)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 전문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 (제3호) 처분가액 5억 • (제4호) 차입비율 30% • (제5호) 기금 용자 전액 • (제7호) 권리포기액 5억	사립학교법 시행령 (‘23.6.13.)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 대학경영지원과 (044-203-6956)

교육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계약정원제 도입	(근거 없음)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일반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 * 첨단 분야의 채용조건형에 한해, 기존 일반학과 정원의 20% 이내 운영 가능	산학협력법 시행령 (학부 '24년 신입생 모집) (대학원 '23.9월 학기)
			교육부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044-203-6262)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근로기준법」 준용 추가 확대	(신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근로기준법」 준용 - 제54조(휴게), 제65조(사용금지), 제72조(경내근로의 금지), 제73조(생리휴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23.10.19.)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상 「근로기준법」 준용 사항 추가 -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 제8조(폭행의 금지),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36조(금품청산),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7조(기능습득자의 보호) ※ 함께 적용되는 별칙 조항은 [보도자료_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교육부 '23.3.30.)] 참조 - 제76조의3에 따른 직장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를 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이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같은 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교육부 소관 5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406)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스토킹방지법 시행 및 피해자 지원 강화	(신설)	- 스토킹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 규정 - 정책수립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 스톱킹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근거 규정 - 스토킹으로 인한 학업중단 방지를 위해 피해자 가족의 전학 등 취학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이 스톱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범죄 예방·수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수사기관의 협조, 벌칙 규정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7.18.)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 (02-2100-6422, 6427)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은둔형 청소년 포함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 기준 1.~3. (현행과 동일) 4.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이상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23.4.18.)
	- 지원대상: 만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청소년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자녀는 지원 불가 4. 일정 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지원대상: 만9세~24세 이하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위기청소년 1.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2. 학교 밖 청소년 3.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 청소년 포함) 4. 일정 기간 이상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23.6.1.)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6)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신설)	■ 성범죄자 신상정보고지 대상기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동복지법」 상 아동양육시설·일시보호시설·보호치료시설·공동생활가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 • 「학원법」 상 급습소·개인과외급습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10.12.)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04)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 확대	(신설)	■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기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 • 「영유아보육법」 상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3.10.12.)
	(신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지원시설 •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100-6416, 6409)

여성가족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확대 시행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신설)	■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을 통한 성인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서비스(여성가족부고시 제2015-50호) • 『불특정 이용자 간 온라인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애플리케이션』(여성가족부고시 제2020-36호)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23.9.1.)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 (02-2100-6443)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클럽 시범 운영	■ 단기과정 운영 • (대상) 정서·행동에 어려움이 있는 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운영횟수) 총 7회 ※ 6회+1회(알콜피해)	■ 단기과정 대상 추가 • (대상) 마약류 피해 청소년 대상 치유클럽 추가 • (운영횟수) 총 7회 ※ 5회+2회 (알콜피해1회, 마약류 1회)	- (‘23.11.6.-17.)
			청소년 보호환경과 (02-2100-6308, 6295)

보건복지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돌봄 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도입	(신설)	■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시행 • (대상) 가족돌봄청년, 돌봄 필요 중장년 • (서비스) 재가 돌봄 기사와 함께 심리 지원, 간병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 • (제공방식) 지자체가 대상자에 바우처를 발급, 대상자는 지정된 민간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 2023년 사업 수행지역선정 결과 및 추진방안 발표(7월 초 예정)	- (‘23년 하반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4)
노인 의료·돌봄 통합 지원 시범사업 실시	(신설)	■ 노인 대상으로 방문형 의료서비스 확대 및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는 시범사업 추진(12개 지역)	- (‘23.7.1.)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추진단 (044-202-3031)
수술실 CCTV 설치 및 촬영 근거규정 시행	(신설)	■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야 함 ■ 의료기관은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하여야 함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현행법령) 의료법(법률 제188468호, 2021.9.24.일부개정)제38조의2	의료법 (‘23.9.25.)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02)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신설)	■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인 '직무능력은행제' 서비스 개시('23.9월-)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정부가 개인의 직무 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평생직업능력 개발법 ('23.9.1. 예정)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044-202-7289)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공개기준 강화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공개기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0억원 이상	■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 (공개기준)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천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3.7.1.)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044-202-7359)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폐지로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산재 보험 적용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등 14개 직종	■ 전속성과 상관없이 적용 직종에 해당하는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일반화물차주 등 18개 직종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 보험료징수법 ('23.7.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8)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험성평가 제도 개편	■ 위험성평가 정의 •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강도법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위험성 평가 과정 근로자 참여 범위 (신설) • 유해·위험요인 파악 (신설)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위험성평가 정의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조합한 빈도·강도법 • 체크리스트(Checklist)법 • 위험성 수준 3단계(저·중·고) 판단법 • 핵심요인 기술(One Point Sheet)법 ■ 상시평가 • 월·주·일 단위의 주기적 위험성 평가 및 결과 공유·주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 근로자 참여 범위 확대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3.5.2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원과 (044-202-892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보장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포함 기간 중 계약만료된 경우 • 계약만료 이후 잔여 휴가기간에 대해 법정 휴가급여 상당액 지급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여성>출산·육아 지원>모성보호 육아 지원(예정)	고용보험법 (‘23.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1)
K-디지털 트레이닝 단기 심화과정 운영	■ 기업의 실무 프로젝트가 30% 이상 편성되어 있는 350시간 이상의 장기 훈련과정 운영	■ 장기 훈련과정 운영(기준) + 기업의 심화 프로젝트가 70% 이상 편성되어 있는 단기 심화과정 운영(산설)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정보공개>법령정보>훈련·예규·고시>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운영규정 일부개정	현장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규정 (‘23.6.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1)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대상 확대· 자부담금 폐지 등 제도 개편	■ 지원 대상 • 만 45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 형태근로종사자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자부담금 부과 • 상담 참여 시 자부담금 (상담 비용의 10%) 의무 부과	■ 지원 대상 • 만 40세 이상 재직자 및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1,000인 미만 기업 재직자 ■ 자부담금 면제 • 상담 참여 시 자부담금 면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제도 개편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23.6.1.)
			고용노동부 신기술인력양성총괄TF (044-202-7365)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 (가동기간)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 • (용자한도) 사업주당 1억원,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 (용자기간)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제도 확대 • (가동기간)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지원 가능 • (상시근로자수) 300인 이하 제한 폐지 • (용자한도) 사업주당 1억5천만원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 (용자기간) 1년(또는 2년) 거치, 3년(또는 4년) 분할상환 ☞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룸>보도자료>고용노동부>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 노무사 제도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 • (소득요건)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 • (지원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	■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 확대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지원으로 확대 • (소득요건) 지원신청 근로자 본인의 해당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월350만원 이하 • (지원기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시 지원 가능 ☞ (참고) 대한민국정책브리핑)브리핑)를 보도자료)체불정산지원 사업주 용자 요건 완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3.7.1.)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3)
업종별 취업지원허브 구축	• 고용센터에서 관할지역 중심으로 구인·구직자 등에 대한 고용서비스 제공	■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전략·위기 산업(업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지원체계인 「업종별 취업지원허브」를 구축 • 광역 단위의 산업별 인력수급 동향 등을 신속히 파악 • 산업수요를 반영한 인력양성 지원 및 훈련 수료자 연계, 광역 단위 구인·구직풀 구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채용행사 기획 등 업종별 특화 취업·채용지원 서비스 제공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부울경, 전라권 등 광역 조선업취업지원체계 구축	- (’23년 하반기)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 혁신TF (044-202-733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확대 운영	■ 기업도약보장 패키지운영관서: 전국 35개고용복지+센터 •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운영관서: 전국 24개 고용복지+센터 (‘23.3.28~)	■ 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 운영관서: 전국 48개 고용복지+센터(‘23.8월~)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기업·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가 찾아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구직자·기업 도약보장 패키지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센터 확대 운영)	- (‘23.8월)
			고용노동부 국가고용서비스 혁신TF (044-202-7341)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 고용보험법제42조제1항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법 제42조제1항 •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아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고용보험법」 등 2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용보험법 및 시행규칙 (‘23.7.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44-202-7370)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적용대상 확대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 (‘22.8.18. 시행) •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은 총공사금액 50억 이상)	■ 휴게시설 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준수 의무 적용대상 (‘23.8.18. 시행) •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총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현장) •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7개 직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① 전화상담원 ② 돌봄서비스종사원 ③ 텔레마케터 ④ 배달원 ⑤ 청소원·환경미화원 ⑥ 아파트경비원 ⑦ 건물경비원	산업안전보건법 (‘23.8.18.)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044-202-8893)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신설)	■ 굴착기 안전기준 신설 • 작업 전 후사경 및 후방영상표시장치 등의 부착·작동상태 확인 • 버킷, 브레이커 등 작업장치 이탈방지용 잠금장치 체결 • 운전원 안전띠 착용 의무화 ☞ (참고) 고용노동부 누리집<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7.1.)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발파 표준안전 작업 지침(고시) 전부개정	■ 제3장 도화선발파 • (심지에 불을 붙여 타들어 간 불꽃으로 점화) ■ 제4장 전기발파 - 뇌관에 연결된 전선에 전류 (electric)를 보내 발생시킨 열로 기폭 ■ 제5조(진동 및 파손) - 발파구간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표>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table><tr><th>건물분류</th><th>건물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cm/초)</th></tr><tr><td>문화재</td><td>0.2</td></tr><tr><td>주택아파트</td><td>0.5</td></tr><tr><td>상가(금이 없는 상태)</td><td>1.0</td></tr><tr><td>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td><td>1.0~4.0</td></tr></table> ■ 제3절 화약류 관리 • 화약류 관리 • 화약류저장소 • 화약류취급소 • 화공작업소	건물분류	건물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cm/초)	문화재	0.2	주택아파트	0.5	상가(금이 없는 상태)	1.0	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1.0~4.0	■ <삭제> ■ 제4장 발파 • <현행화> 전기발파 • <신설> 비전기발파 - 전기의 사용 없이(non-electric) 시그널튜브에 의한 불꽃 등으로 기폭 • <신설> 전자발파 - 집적회로(IC칩)에서 발생하는 전자적 (electronic) 신호로 기폭 ■ 제5조(진동 및 파손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정한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진동 허용기준을 준수할 것 ■ 제2절 화약류의 관리 • 화약류의 저장 및 운반 • <삭제> • 화약류취급소 • <삭제>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23.7.1.)
	건물분류	건물기초에서의 허용 진동치(cm/초)											
문화재	0.2												
주택아파트	0.5												
상가(금이 없는 상태)	1.0												
철골 콘크리트 빌딩 및 상가	1.0~4.0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40)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붕괴사고 예방 안전 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1. 토석(土石)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채석 작업을 하는 굴착작업장의 아래 장소	■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11. 지반의 토사·암석 등 (이하 “토사등”이라 한다)의 붕괴 또는 낙하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지반의 굴착작업 또는 채석 작업을 하는 장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년 하반기)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건물 등의 해체작업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10. 건축물, 구축물 및 그 밖의 시설물 등 (이하 “구축물등”이라 한다)의 해체작업																								
	■ 제52조(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6. (신설)	■ 제52조(구축물등의 안전성 평가) 6. 구축물 등의 설계, 시공방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제329조(강재의 사용기준) (생략) 별표 10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제329조(재료의 사용기준) (생략) 한국 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 건설산업예방정책과 (044-202-8940)																							
	• [별표10] 강재의 사용기준	<삭제>																								
	<table><tr><th>강재의 종류</th><th>인장강도 (kg/mm²)</th><th>신장률 (%)</th></tr><tr><td rowspan="3">강관</td><td>34 이상 41 미만</td><td>25 이상</td></tr><tr><td>41 이상 50 미만</td><td>20 이상</td></tr><tr><td>50 이상</td><td>10 이상</td></tr><tr><td rowspan="3">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td><td>34 이상 41 미만</td><td>21 이상</td></tr><tr><td>41 이상 50 미만</td><td>16 이상</td></tr><tr><td>50 이상 60 미만</td><td>12 이상</td></tr><tr><td rowspan="3">봉강</td><td>34 이상 41 미만</td><td>25 이상</td></tr><tr><td>41 이상 50 미만</td><td>20 이상</td></tr><tr><td>50 이상</td><td>18 이상</td></tr></table>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 (kg/mm ²)	신장률 (%)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삭제>
강재의 종류	인장강도 (kg/mm ²)	신장률 (%)																								
강관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0 이상																								
강판, 형강, 평강, 경량형강	34 이상 41 미만	21 이상																								
	41 이상 50 미만	16 이상																								
	50 이상 60 미만	12 이상																								
봉강	34 이상 41 미만	25 이상																								
	41 이상 50 미만	20 이상																								
	50 이상	18 이상																								
■ 제332조(거푸집동바리등의 안전조치) 7. 동바리로 사용하는 강관에 대해서는 (생략) 12. 동바리로 사용하는 목재에 대해 서는 (생략)	<삭제> <삭제>																									

고용노동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붕괴사고 예방 안전 기준(안전보건규칙) 정비	■ 제338조(지반 등의 굴착 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흙막이 등 ---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9조(굴착면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 방지) 별표 11의 기준에 맞도록 하거나 지반 안정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른 기율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하 현행과 같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3년 하반기)																								
	<table border="1"><thead><tr><th>구분</th><th>지반의 종류</th><th>기율기</th></tr></thead><tbody><tr><td rowspan="2">보통흙</td><td>습지</td><td>1:1~1:1.5</td></tr><tr><td>건지</td><td>1:0.5~1:1</td></tr><tr><td rowspan="3">암반</td><td>풍화암</td><td>1 : 1.0</td></tr><tr><td>연암</td><td>1 : 1.0</td></tr><tr><td>경암</td><td>1 : 0.5</td></tr></tbody></table>	구분	지반의 종류	기율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table border="1"><thead><tr><th>지반의 종류</th><th>굴착면의 기율기</th></tr></thead><tbody><tr><td>모래</td><td>1 : 1.8</td></tr><tr><td>연암 및 풍화암</td><td>1 : 1.0</td></tr><tr><td>경암</td><td>1 : 0.5</td></tr><tr><td>그 밖의 흙</td><td>1 : 1.2</td></tr></tbody></table>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율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구분	지반의 종류	기율기																									
보통흙	습지	1:1~1:1.5																									
	건지	1:0.5~1:1																									
암반	풍화암	1 : 1.0																									
	연암	1 : 1.0																									
	경암	1 : 0.5																									
지반의 종류	굴착면의 기율기																										
모래	1 : 1.8																										
연암 및 풍화암	1 : 1.0																										
경암	1 : 0.5																										
그 밖의 흙	1 : 1.2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 규모 확대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 (대상) 공사금액 120억원 (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	■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대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산업안전 보건법 ('23.7.1.)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 (044-202-8937)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신설)	■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한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 추진 • (대상) 어선, 화물선, 관광선 등 100척 • (내용) 바다 위에서 선원의 부상이나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 LTE-M 통신(테블릿 및 바다내비 단말기 활용)을 통해 실시간 의료기관과의 지원 또는 건강상담 제공	- ('23.7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민을 위한 기술, 바다내비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 개시 보도자료 게시 예정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044-200-6233)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확대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2개소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3개소 충청권(대전)에 1개소 신설	- (‘23.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043-719-2589)
마약류 통합 온라인플랫폼	(신설)	■ 마약류 예방·재활교육 및 부처별 마약류 정보를 통합 관리·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 (‘23.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 (043-719-2582)
수입식품등 자동 수입 신고수리 본격 시행	(신설)	■ 수입식품등 자동수입 신고수리 본격 시행 • 국민건강에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첨가물은 전자심사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수리 •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예정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23.9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043-719-6172)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 급식시설 관리지원 확대	■ 2022년 7월 28일부터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 시행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영양관리 본격 지원 • 2022년 전국 20개 시·군·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837개 노인·장애인시설 급식관리지원	■ 2023년 7월부터 연내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68개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되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급식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참고)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보도자료) 노인·장애인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급식안전관리 지원 확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23.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043-719-2257)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물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 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22년 매출액이 2억미만인 소규모 업소	■ (지원대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규모* 식육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 업소 * 식육가공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업소. * 식육포장처리업소: 전년도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10인 미만인 업소. ☞ (참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 ('23.7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인증과 (043-719-2855)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 제외 품목 지정	■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모든 식품을 보존식 보관	■ 집단급식소에서 보존식으로 보관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은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에서 제조·가공되어 완제품 그대로 급식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 일부 실온제품* 및 병과류 중 병과 * 빵류, 떡류, 기타 코코아가공품, 식육가공품,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조미건어포, 생식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외 • 보존식 제외 식품의 경우 검수일지를 작성하여야 함 ☞ (참고) 식약처 누리집)법령·자료)법령 정보)제·개정 고시 등 또는 고시·훈령·예규의 고시 전문	집단급식소 급식안전관리 기준 (고시) ('23.5.22.)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 (043-719-2105)
국외 임상시험용 의약품 치료목적 사용 허용	■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만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	■ 국내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까지 치료목적으로 사용 가능	약사법 ('23.10.19.)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043-719-2621) 임상정책과 (043-719-1885)

식품의약품안전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디지털의료기기 인허가 지원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개소	(신설)	■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등 인허가 종합지원센터 신설	- (‘23.5.24.)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 (043-719-3752)
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 숫자 개념의 세척제 유형 명칭 (1종, 2종, 3종) • 소비자 및 영업자가 숫자 개념의 유형을 등급제로 오인·혼동하는 사례 발생 - 1종세척제: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과일·채소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2종세척제: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 식품용 기구· 용기(자동식기세척기용 포함) 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3종세척제: 식품의 제조·가공 장치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척제	■ 세척대상으로 유형 명칭 개정 (과일·세척용, 식품용 기구·용기용, 식품제조·가공장치용) •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 하도록 표시를 변경(미리적용하여 표시 가능) • ‘23년 7월부터 전산시스템(식품안전나라 등)에 변경되는 유형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 ☞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일반홍보물)세척제 유형개정에 따른 표시방법	위생용품의 표시기준 (‘23.7.1.)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4)

통계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복지정책 지원을 위한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 개별 연금데이터만 존재 • 각 연금 데이터를 각 부처에서 관리하고, 이 중 2종(국민연금, 퇴직연금통계)만 국가승인 통계로 작성	■ 포괄적 연금통계 공표 • 각 연금 데이터를 통계청 통계등록부 중심으로 연계하여, 포괄적 연금통계를 작성하여 공표 • 정부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및 전 국민의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정책 수립 지원 가능 ☞ (참고) 통계청 홈페이지)보도자료)‘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추진(‘22.4월)	통계법 (‘23.10월)
			통계청 행정통계과 (042-481-6991)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 확대	■ 7개 분야*에 대하여 기후변화 영향평가 제도 운영 * ① 에너지 개발, ② 산업단지 조성, ③ 도시개발, ④ 수자원개발, ⑤ 항만건설, ⑥ 산지개발, ⑦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공항 건설, 도로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운영 확대	탄소중립기본법 (‘23.9.25.)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55)
이륜자동차 제작 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신설)	■ 제작 이륜자동차 인증·변경인증의 표시제 도입 ■ 운행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배기소음 인증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 초과 운행금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 (‘23.7.1.)
			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28)
맞춤형 홍수정보 제공 확대	■ 홍수정보 제공 • 전국 552개소 수위관측소 수위 정보 제공 • ○○교 관심수위 초과*로 표시한 SMS 전송	■ 홍수정보 제공(‘23.5.15.~) • 전국 574개소 수위관측소 수위 정보 제공 •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로 표시한 SMS 전송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람·홍보)보도·설명 환경부 선제적·체계적 홍수피해 방지대책 발표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23.5.15.)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62)
공공책임수거제도 시행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의 민간 수거 • (주체) 아파트-수거업체 간 계약 • (관리)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 수거 거부 발생 등에도 공공개입 없이 민간 계약에 따른 관리	■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공공 개입 확대 • (주체) 지자체-아파트-수거업체 간 계약 • (관리) 수거업체의 수익성 악화 시 계약금액 조정 근거 마련, 수거거부 시 계약 해지 등 공공 중심 관리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뉴스·공지)보도·설명(자원순환) 생산·소비·재활용 전 과정에 순환경제 전환 박차 中 ④ 불법폐기물·수거거부 원천 방지	폐기물관리법 (‘23.12.28.)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044-201-7422)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액션플랜을 강화한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수립	■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예측 등의 적응정보가 부처별로 산재·제공 ■ 예·경보체계 미흡으로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시간확보 부족 ■ 과거 데이터 기반 인프라 마련으로 심화되는 기후위기 대응에 불충분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에 대한 종합적 관리 부재	■ 적응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종합플랫폼 구축 추진 ■ 예·경보 기간을 확대하여, 대응 골든타임 확보 ■ 미래 기후변화 위험도를 고려한 조사 및 인프라 구축방안 마련 ■ 기후위기 취약계층·지역 전반적 실태조사로 효율적인 지원대책 기반 마련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책>환경정책>기후대기에 게시	- (‘23.6.22.) 환경부 기후적응과 (044-201-6965)
	■ 환경정책자금 융자 시 정책금리 적용 • 기재부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금리에 따라 환경정책자금 융자 사업 금리 결정	■ 환경정책자금 융자 시 정책금리에서 1~2%p 감한 금리 적용 • (공통) 정책금리 대비 1%p 인하 • (친환경설비투자)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 추가로 1%p 인하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 (고시) (‘23.6.7.)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044-201-6706)
시멘트제조업 환경관리 기준 강화	■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 일괄 적용	■ 환경오염시설법상 최대배출기준 기반으로 사업장별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23.7.1.) 환경부 통합허가제도과 (044-201-6717)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의무화 등 악취관리 강화	(신설)	■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요구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함	악취방지법 및 하위법령 (‘23.9.29.)
	(신설)	■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악취저감 이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신설)	■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공공환경시설 대상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을 추가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201-6907)
	(신설)	■ 악취기술진단 결과 악취저감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	
낙동강권역 도시침수 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 기술지원	■ 악취감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규정 신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6.1.)
	■ 홍수위험지도 서비스 • 전국 141개소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 제공	■ 홍수위험지도 서비스 • 낙동강권역 450개소를 추가한 총 591개소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정보 제공 ※ (참고) 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 (floodmap.go.kr)	환경부 수자원관리과 (044-201-7657)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 동물원 등록제 • 사무실, 전문인력 등록요건만 갖추어 등록	■ 허가제 도입 • 서식환경기준, 전문인력기준, 질병 및 안전관리계획 등 충족 시 허가 ■ 검사관제 도입 •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전문가 위촉·운영 ■ 금지행위 • 보유동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 전시 행위 금지 •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올라타기 등 금지 등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3.12.14.)
	(신설)	※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설명]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중 동물원·수족관법 전부 개정 주요내용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동물복지 강화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시행	(신설)	■ 야생동물 전시행위 금지 •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 금지 • (예외) 포유류 외 인수공통질병 전파우려 및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낮은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 학술연구·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12.14.)
	(신설)	■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 • 전시행위 금지 등으로 인해 유기 또는 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운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044-201-7244)
		※ (참고) 환경부 누리집)보도자료)[보도설명] 동물원·수족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중 야생생물법 전부개정 주요내용 동물원 외 시설에서 야생 동물 전시금지	

환경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정폐기물 처리 현장 정보 전송 의무화 확대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 (대상) 건설폐기물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 의무화 • (대상) 건설폐기물·지정폐기물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일람·홍보> 보도자료>사업장폐기물 전과정 관리 강화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23.10.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201-7364)
	■ 표시·광고의 제한 • 무독성, 환경·자연친화적, 무해성, 인체·동물친화적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 변경 없음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23.7.29.)
생활화학제품 표시·광고 규정 시행	(신설)	■ 표시·광고 제한되는 유사문구 구체화 • 독성 없음(Non-Toxic, Toxic zero) • 천연, 그린, 예코, 환경을 생각, 자연주의, 자연 유래·추출, 순수(Pure)·순(純) • 인체에 영향이 없는, 안심, 유해물질 없음, 착한, 아이에게 안전, 아이 보호 • 웰빙, 사람을 생각, 건강까지 생각, 피부를 사랑 ※ (참고)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2- 142호)	생활화학제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23.7.29.)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09)
	■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30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취급금지) 26종 • (취급제한) 2종 • (기타) 7종 ※ 일부 물질은 중복	■ 「잔류성물질법」에 따라 31종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 • (취급금지) 27종 • (취급제한) 2종 • (기타) 7종 ※ 일부 물질은 중복 ※ (참고) 스톡홀름협약 홈페이지> COP/Reports and Decisions> SC-10/13	- (‘23.11월 예상) 화학물질정책과 (044-201-6782)
과불화핵산술포산 (PFHxS) 취급금지 물질 지정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올라타기, 만지기 등 수족관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금지	■ 수족관 등록제 • 수족관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 등록만으로 가능	■ 수족관 허가제 • 수족관을 신규로 설치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허가를 신청하고,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23.12.14.)
	■ 수족관 동물 학대 금지 •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직접적인 학대 행위 금지	■ 수족관 동물 학대 금지 •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직접적인 학대 행위 외에도 올라타기, 만지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금지 • 수족관 동물을 허가 없이 다른 시설로 이동 전시 금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수족관 돌고래 만지거나 올라타기 마세요(‘22.11.24)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044-200-5315)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및 절차 마련	(신설)	■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 해양생태계의 우수성, 해양보호구역 관리 역량, 지속가능한 이용 필요성, 생태계 보전 정책과의 연계성 ■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절차 • 지역주민 의견수렴, 시장·군수·구청장 등 의견수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른 해양수산 발전 심의회 심의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기준 등 마련(‘23.6월 보도자료 배포 예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6.28)
해양오염방제업에 신기술 적용 장비 활용 확대	■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 명문 규정 부재	■ 신청인이 보유한 로봇이나 복합장비 등 다른 형태의 장비가 등록에 필요한 장비 중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기준을 충족한 장비를 대체하여 등록할 수 있음을 명문화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로봇 투입할 수 있게 개선(‘23.4.5.)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3.8월)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극한 호우 재난문자 기상청 직접발송	■ 별도 기준 없음	■ 극한 호우시* 기상청에서 직접 발송 (‘23.6.15.부터 수도권 시범운영) * 50mm/1h, 90mm/3h 동시 관측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23.6.15.)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제공	■ 기상청 API 서비스 • 분산된 API 서비스(4개) • API 서비스: 54종(‘22년)	■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 (‘23년 7월) • API 서비스 창구 통합(일원화) • API 서비스: 150종	- (‘23.7월)
			기상청 국가기후데이터센터 (042-481-7475)
계절·시기별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미래 기후요소, 극한기후지수 등 제공 • 지역별 미래 기온, 강수량, 폭염· 열대야·한파·호우일수 등에 대한 추세 분석자료 제공	■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방재, 보건, 수문, 에너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후변화 분석정보 제공 •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탄소중립 정책 지원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 (‘23.6월)
		☞ (참고) 기상청 행정누리집)보도자료 (계절 및 시기별로 수시 보도 예정)	기상청 기후변화감시과 (042-481-7421)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 한글로만 제공되는 날씨알리미 앱 • 국문만 제공하여 외국인들은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날씨정보 이해가 어려움 • 지진, 집중호우 발생시 충분한 대비시간 확보 어려워 재해 위험에 노출	■ 영문 서비스가 추가된 날씨알리미 앱 • 내국인으로 제한된 날씨알리미 앱의 사용자층이 외국인까지 확대 • 지진이나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에 대한 외국인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어 사전 대응 능력 향상	- (‘23.8월)
			기상청 정보통신기술과 (02-2181-07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전략기술 육성을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신설)	■ 범부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지원 체계 구축·운영 • (범부처 육성체계) 국가전략기술 선정·관리, 기본계획 수립, 정책지원기관 지정·운영 • (R&D 추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지정 및 특례 부여, 성과확산 촉진 • (7·반조성) 시범사업·표준화 추진, 특화연구소, 도전적 연구개발 전담기관, 지역기술혁신허브 등 운영 • (인력양성) 핵심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특화교육기관 운영, 인력 수급동향조사 실시 • (기술보호) 해외 정부 등의 정보제공 요청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국제협력)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활성화 ☞ (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23.9.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044-202-6731)
신축 건축물 구내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 주거용 건축물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1. 주거용 건축물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단위세대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23.6.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2. 업무용 건축물 ■ 국선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광섬유케이블 8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세대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또는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2. 업무용 건축물 ■ 국선단자함에서 실단자함 또는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 광다중화 기능을 갖는 국선단자함과 동단자함이 있는 경우에는 국선단자함에서 동단자함까지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12코어 이상, 동단자함에서 실단자함이나 인출구까지 업무구역(10제곱미터)당 1회선(4쌍 꼬임케이블 기준) 이상 및 단일모드 광섬유케이블 2코어 이상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433)
	■ 방송통신재난관리를 수행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만 포함	■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데이터센터 사업자를 포함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서비스 긴급 복구시스템 구성 및 서버·저장장치·네트워크·전력공급장치의 분산·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내용 추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23.7.4.)
끊김없는 디지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 위기대응체계 강화	■ 타 사업자 임대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만 보호조치 의무 부과	■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의무대상 사업자에 자체사용 목적의 데이터센터 운영·관리 사업자도 추가 ■ 데이터센터 재난 발생 시 해당 사업자의 보고의무 부과 및 후속 복구지원 근거 마련 ※ (참고)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디지털서비스 안정성 강화방안 발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3.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기반안전과 (044-202-6771)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 • 30일 이내에 인·허가권자는 산업부장관에 인·허가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 • 60일 이내에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 인·허가 처리 결과 통보 의무 (산설)	■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 및 처리 간주조항 신설 • 30일 이내에 인·허가권자는 산업부장관에 인·허가 처리 계획서 제출 의무 • 30일 이내에 인·허가권자는 사업시행자에 인·허가 처리 결과 통보 의무 • 인·허가권자가 처리 계획서 미제출 또는 처리 결과 미통보시 신속처리 요청이 있는 날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23.7.1.)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예비타당성 사업 우선 선정 및 조사면제 특례	■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예비타당성 사업 우선 선정 및 조사면제 특례 •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지원 근거 신설	
	■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계약학과 등 대상으로 추진	■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계약학과 및 이공계학과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대상으로 추진 ■ 대학 교원등이 전략산업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겸임·겸직 가능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5)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지능형 로봇법 개정·시행	(신설)	■ 로봇의 실외 이동 허용을 위한 정의, 운행 안전인증제 등 관련 규정 신설 • (정의)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 특징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 규정 신설 (제2조제4호의2) • (운행안전인증제) 보도 등 통행 허용 대상 특징을 위한 실외이동로봇 정의 규정 신설 (제5장의2) • (보험 등 가입 의무) 로봇의 보도 등에서의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 등 가입 의무화 규정 신설 (제40조의4)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연혁)법을 제19412호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23.11.17.)
			산업통상자원부 기계로봇항공과 (044-203-4318)
재사용전자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	(신설)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 인원·설비 등 요건을 갖춘 기관에 대한 심사 후 지정 • 부실한 검사결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 ■ 안전성검사 및 표시 • 재사용전자 제조업자는 안전성검사 및 해당 표시사항 부착 후 판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을 공포한 10월11일(화) 국무회의 의결/ 재사용전자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23.10.1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중견기업법 상시법 전환	■ 한시법 운영 •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 상시법 전환 • 부칙 제2조 삭제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중견기업법 상시법으로 전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23.10.19.)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044-203-4362)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거환경개선비용 산설	■ 주택매수 청구만 가능 • 경제적, 영농상 등의 이유로 주택매수 청구 저조	■ 주거환경개선비용 산설 • 주거환경개선비용을 산설하여 주택매수와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함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7.4.)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 (044-203-3931)
전력시설물 설계·공사 감리 분리발주 시행	■ 분리발주 명문화 및 대상 규정 없음 (산설)	■ 분리발주 명문화 및 대상 규정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공사감리 용역사업 •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 제외) 또는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여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사업 ☞ (참고) 전자관보>관보보기>일자별 [2022.11.15.] 관보 중 법률 제19042호(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전력기술관리법 ('23.11.16.)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산업통상자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부장특별법」 개정으로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지원	■ 글로벌 공급망 이슈 심층분석 및 정부·민간의 대응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법정 기관 부재	■ 산업부장관은 공급망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분석 및 공급망 안정화 사업 지원을 위해 공급망센터 지정 • 공급망센터는 ▲공급망 정보 수집·분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정책·제도·연구개발 동향 조사, ▲기업 정보제공·자문 등을 수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제23조의3 (‘23.6.13.)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인수·합병, 규제특례 등을 지원	■ 소부장 공급망안정품목 선정: 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높거나 ②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품목 ■ 공급망안정품목 지원사업 근거 신설 •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대상으로 既지원 하던 기술개발, 인수·합병, 규제특례 등을 공급망안정품목에도 적용 • 특정국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① 국내 기업 해외사업장의 인근국가 이전 (P턴) 지원 ② 국가경제 필요에 의한 기업 재고 확대 권고 및 비용 지원 등 공급망안정품목에 특화된 지원 근거 신설 * 비상시에는 P턴 지원기업에 대해 해외 생산품목의 국내 반입명령 가능 ■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 운영근거 신설 ■ 희소금속 경쟁력강화사책 마련 및 희소금속센터 지정 근거 신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공급망 안정화 대응체계 첫 법제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3.12.1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4)

중소벤처기업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신설)	■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약정서 기재·발급 의무 • 위탁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적기 위해 수탁기업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 부과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표준약정서를 제·개정하고, 사용을 권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23.10.4.)
		■ 탈법행위 금지 •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의무를 피하려는 행위 금지 • 위탁기업이 연동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하는 행위 금지	
		■ 납품대금 연동의 확산 •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선정, 포상 가능 • 원재료 가격 정보 제공, 연동 실적의 확인, 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집행하는 연동 지원본부 지정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 • 분쟁조정 요청할 수 있는 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 포함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 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 추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개선과 (044-204-7942)
		☞ (참고) 납품대금연동제.kr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규정 시행	■ 유명 상표에 대해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도 부정 경쟁행위로 인정 ●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규정 부재	■ 유명 상표에 대해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한 경우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 ● 유명 상표에 대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규정 신설 - 단, 상표간의 오인·혼동 방지를 위해 유명 상표 보유자에게 오인·혼동 방지 청구권 부여 ☞ (참고)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내가 쓰던 미등록 상표, 타인이 사용해 유명해졌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23.9.29.)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8181)
변리사의 윤리 의무· 공공성 강화	■ 부정 광고행위 금지 ● 「표시광고법」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일반적으로 금지 - 변리사 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데 한계 존재 ■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 ● 근거규정 미비 ■ 공익활동 의무 부여 ● 모든 등록변리사, 특허법인에 대하여 대한변리사회 가입 의무 부여(변리사법 §11) - 대한변리사회 회칙(§17)에서 연간 일정시간 이상의 공익 활동을 수행하도록 규정 (24시간/2년) ■ 합동사무소 개설근거 마련 ● 등록변리사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①개인사무소를 설치하거나, ②변리사 3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허법인 또는 ③5명 이상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유한)을 설립할 수 있었음	■ 부정 광고행위 금지 ● 「변리사법」에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 광고 등 부정한 광고행위 금지(§8의5) 및 처벌 근거 마련(§24③) - ①거짓 광고, ②근거없는 자격·명칭 사용, ③소비자 오도 광고, ④부당한 기대 유발 광고, ⑤타변리사 비방·비교 광고, ⑥변리사 품위훼손 광고, ⑦기타 소비자 피해 우려 광고의 금지 ■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 ● 금품·향응 제공을 전제로 변리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알선받는 행위 금지 (§7의3) 및 처벌 근거 마련(§24①) ■ 공익활동 의무 부여 ● 공익활동 의무를 법률에 상항 규정함으로써 변리사에 대한 공익적 역할 강화(§15의2) ■ 합동사무소 개설근거 마련 ● ‘법인’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설치 가능 (§6의2③) - (변경전) 개인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 (변경후)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변리사법 (‘23.7.4.)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특허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확대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1년	■ 관련디자인 출원기간: 3년 ※ (참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 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23.6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시 게재)/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25.)	디자인보호법 ('23.12.2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에만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음	■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주장 및 서류제출 시기를 규정한 절차적 조항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주장 가능 • 정당한 디자인권자가 심판·소송유형과 관계없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디자인 창작을 보호 ※ (참고)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 (특허청 홈페이지)책자/통계) 법령및조약)최근개정법률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 정보센터) ('23.6월 중 개정 법률안 공포 예정 → 공포시 게재)/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디자인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5.25.)	디자인보호법 ('23.12.21.)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신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 시행 •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 ② 계속 거주를 희망 시, 공공이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 ③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 긴급 금융·복지 지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23.7.2.)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 발표/전세사기 특별법, 25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 주택임차인보호과 (044-201-4150)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 공개 시행	(신설)	■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경우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 등 정보공개	주택도시시기금법 ('23.9.29.)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7)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상황	■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44회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 월 1.1만원~4.8만원)	■ 마일리지 적립횟수 상한: 60회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 월 1.5~6.6만원)	- ('23.7월)
	■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 6개 (신한, 우리, 하나, 로카, 티머니, DGB)	■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 11개 (기존 6개사 +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 (044-201-5087)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내공항 짐배송 서비스 적용 공항 확대 운영	■ 짐배송 대행 업체가 공항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호텔 등 목적지까지 배송 - 도착 : 제주	■ 짐배송 대행 업체가 공항 도착장에서 승객의 짐을 찾아 호텔 등 목적지까지 배송 - 도착 : 제주(기존) 김포, 김해, 청주, 광주, 대구(추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내공항 짐배송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23.7월 배포 예정)	- ('23.7월)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044-201-4238)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이동식충전기 콘센트 바울 확대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주차단위구획 총 수에 4퍼센트이상 설치	■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콘센트를 23.7월부터 7퍼센트이상, '25년부터 10퍼센트 이상 설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7.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법정 주차대수 이상으로 주차공간 확보하면 '분양가 가산'	(신설)	■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항목에 '주차공간 추가 확보'를 신설하여 주차공간 추가 설치시 기본형 건축 외 가산 비용을 부여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7.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73)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 - 시·도지사 : 30만㎡ 이하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다음과 같이 위임 - 수도권 : 30만㎡ 이하 - 비수도권 : 100만㎡ 미만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입법예고 추진('23.2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23.7.1.)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47)

국토교통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	■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확정일자 현황 정보 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진행 ■ 공인중개사가 다수의 중개보조원을 채용하여 중개행위를 맡기는 등 중개보조원에 의한 사고 발생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 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대상범위가 집값담합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음	■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정보열람 (미납세금, 확정일자 현황) 권한에 대해 정확히 설명 - 아울러, 임대인의 주요 임대차 정보 제시의무, 보증보험 가입안내, 최우선변제금액 등을 설명하도록 하위 법령 개정 추진 예정('23.下) ■ 공인중개사 1인당 중개보조원을 최대 5인까지만 고용이 가능하고,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중개의뢰인에게 알려야 함 ■ 공인중개사법 또는 직무 관련 형법상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집유 포함)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 무등록 중개, 중개사의 거짓연행, 명의대여 등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령>공인중개사법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공인중개사법 검색	공인중개사법 (‘23.7.2. 자격취소요건 확대, 신고센터 기능 강화) (‘23.10.19.)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 (044-201-341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제도 적용대상 확대	■ 정기선사와 이용화주만 우수선화주 인증 가능 • (정기선사) 컨테이너선사 • (화주) 국제물류주선업자 (포워드)	■ 부정기선사와 이용화주도 우수선화주 기업으로 인증('23년 하반기부터) • (부정기선사) 원유, 석탄, 철광석, LNG, 곡물 등 주요 원자재 벌크화물을 운송하는 선사 • (화주) 발전사, 정유사, 제철소 등 주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화주기업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우수선화주 인증제도 적용대상 확대 보도자료 (예정)	해운법 시행령 ('23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200-5722)
시민친화형 항만SOC 구축	(신설)	■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 인천항, 마산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안항 4개 지구(13개소) - '30년까지 1,987억원 투자 • 환경개선 필요성이 있는 지구 발굴하여 사업지속 추진('25~)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시민친화형 항만 SOC 구축 추진	항만법 ('23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 (044-200-5931)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로 안전기능 개선	(신설)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 • 국가관리 23개항에 대한 노후·파손 안전 시설 정비 * 대상항만 - (무역항) 부산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항, 광양항, 목포항, 동해항, 묵호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군산항, 장항항, 마산항, 울산항, 포항항, 새만금 신항 - (연안항) 용기포항, 연평도항, 거문도항, 흑산도항, 상왕등도항, 후포항, 울릉항 * 대상시설 - (피해예방시설) 안전난간, 파라펫, 차막이 - (진입방지시설) 울타리, 출입문, 블라드 - (위험안내시설) 경고표지판, 안내표지판, 방송·경보시설, CCTV - (긴급대응시설) 인명구조함, 구명사다리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해양수산부, 안전시설물 정비로 항만안전 성능개선	항만법 ('23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044-200-595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부두 준공	(신설)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증가 • 부산항 컨테이너부두 하역능력 합산 * ('22년) 2,108만 TEU → ('23년) 2,303만 TEU	- ('23년 하반기)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044-200-5753)
인천신항 항만배후 단지(1단계 2구역) 신규공급 추진	(신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신규 공급 •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 량 창출을 위하여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1단계 2구역) 943천㎡ 신규공급 - 배후단지 943천㎡ / 1,381억원 / 이용 계획 : 복합물류시설, 업무편의시설, 공공시설 등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23.11월 배포 예정)	- ('23.11월)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9)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 도급 금지	■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을 2개사까지 허용 ※ 입찰경쟁성이 필요하여 달리 시행하는 경우 등은 입찰공고서에 별도로 명시 가능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보도자료)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23.6.1.)
			조달청 시설총괄과 (042-724-7085)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통前 종자의 LMO 검사대상 품목 확대	■ 종자의 신제품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 검사대상: 8개 품목 * 콩, 옥수수, 유채, 면화, 밀, 아마, 알팔파, 주키니호박	■ 종자의 신제품 보호 출원 및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품목 확대 • 검사대상: 13개 품목 * (기존) + 토마토, 멜론, 피망, 파프리카, 파파야 * '28년까지 37개 품목으로 순차 확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미승인 유전자변형 생물체(LMO) 유통 원천 차단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23.7월)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201- 2079)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054-912-0165)
반려동물 영업자 준수사항, 불법영업 처벌·제재 등 강화	■ 1허가 : 생산 7등록 : 수입, 판매, 장묘,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신설) ■ 영업자 준수사항 등 위반 시 영업 정지 ■ 무허가·무등록 영업 : 벌금 500만원 (신설)	■ 4허가 : 생산, 수입, 판매, 장묘 4등록 : 전시, 위탁관리, 미용, 운송 ■ 동물생산·수입·판매업자는 매월 취급한 반려견(등록대상동물)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신고 ■ 중요 준수사항은 위반 시 벌금·과태료 병과 * 2개월령 미만 개·고양이 판매 : 벌금 3백만원 * 노화·질병 동물 유기·폐기 목적 거래 : 과태료 3백만원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과징금 제도 신설 ■ 무허가 : 징역2년/벌금2천만원 무등록 : 징역1년/벌금1천만원 ■ 무허가·무등록 영업, 영업정지 불응 영업장 폐쇄조치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무허가 반려동물 영업자 최대 2년 징역	동물보호법 ('23.4.27.)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044-201-2660)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업기계 이력관리를 위한 신고제도 도입	(신설)	■ 농업기계 신고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대상기종)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 (신고주체)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대리점(중고농업기계 수출업자 등), 지역농협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보도자료 배포(예정)	농업기계화 촉진법 (’23.7.5.)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1896)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 가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등 • 닭·오리 사육업(2종) 설치 의무 • 터널식 또는 고정식 소독설비 설치 의무화 • CCTV 설치위치: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사육시설 내부	■ 가금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기준 등 개선 • 닭·오리 + 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8종) • 10만 수 이상 산란계 사육농장의 터널식 소독설비 설치 의무화 • CCTV 설치위치: 농장 각 출입구, 방역실, 각 출입구, 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및 사육시설 내부 • 가금소유자 방역기준 중 1회용 난좌 사용 의무, 알운반 합판·파레트 세척·소독 의무, 기자재·소모품 방치금지 등 외부 차단조치 의무 신설	가축전염병예방방법 시행규칙 (’23.10.19.)
	■ 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 축산농가 소유차량 방역관리 •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승용·승합자동차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 규칙 개정 알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044-201-2520)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확대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 41개교, 69만명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규모 : 145개교, 234만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농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145개 대학교, 234만명, 당초보다 3배 이상 확대한다!	- (’23.5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044-201-1842)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급표시제도 개선	■ 축산물등급판정서 국문만 발급	■ 축산물등급판정서 수출대상국의 언어로 발급 • (발급언어) 영문, 중문, 말레이어 등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축산법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 (고시)	수출 축산물의 외국어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규정 고시 (‘23.6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유통팀 (044-201-2315, 2322)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지역별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대면거래 • 선물류 후거래*(상물일치) * 도매시장에 물품이 도착한 후 거래체결 • 개설 지역별 도매시장의 도매법 인, 공판장, 중도매인이 각 개설 지역 내에서만 거래	■ 비대면 도매거래를 위한 전국단위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출범 • 선거래 후물류*(상물분리) * 온라인으로 거래 체결 후 구매지정 장소로 배송하여 거래와 물류 효율 향상 • 전국의 도매법인, 공판장, 산지조직, 식재료업체 등 다양한 유통주체가 참여하는 전국단위 시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농산물 유통 혁신을 이끌 온라인도매시장, 11월에 만나요(‘23.2.2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법률 (‘23.11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5)
전자송품장 농산물도매시장 시범 도입	■ 현행 수기방식(24항목 작성)	■ 전자방식(12항목 입력) * 가락시장 시범 도입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시범 적용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21)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농어업분야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빈집 활용 가능	■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빈집을 매입하여 생활기반 시설 등의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생활기반시설 등의 공익적 목적에 더하여 농어업분야 내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 가능	농어촌정비법 개정 (‘23.9.2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계획과 (044-201-1554)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입양상담 및 교육 실시	(신설)	■ 2개 지자체에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보호되고 있는 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를 설치하여 특화된 입양상담 및 교육 등 프로그램 제공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유기동물 전문 입양센터 설치 추진	- (‘23.6월)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18)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석사과정 확대	■ 4개 대학 운영 • (‘20년) 고려대, 한양대 • (‘21년~‘22년) 서울대, 경희대 추가	■ 8개 대학으로 운영 확대 • (‘23년) 포항공대, 전주대, 전북대, 전남대 추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 보도자료>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대학 4곳 신규 선정	- (‘23.9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3)
푸드테크 전용 펀드 신규 조성	-	■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 및 관련 기업 투자 활성화 • (‘23년) 100억원 → (‘27년) 1,000억원 (누적)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 푸드테크 기업 투자 시장에 첫선 보여	- (‘23.7월)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044-201-2126)
장류, 떡류 등 전통식품 자조금 도입	■ 전통식품 자조금 운영 • 김치(‘11년), 전통주(‘19년~, 막걸리, 와인) 한정	■ 전통식품 전반으로 자조금 대상 품목 확대 • (‘23년) 김치, 전통주 외에 장류, 떡류 등 추가 ※ (참고) 한국농어민신문>전통식품 자조금 설립 가시권	식품산업진흥법 (‘23.6.28.)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34)

농림축산식품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가능성 양잠산업 범위 확대 및 육성 정책 강화	■ 「양잠산업법」(‘20.5.26. 일부개정) • 가능성 양잠산업 범위 : 누에(고치 포함), 뽕나무, 천잠·작잠·상잠·피마잠(고치 포함) 생산·가공	■ 「양잠산업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 (‘23.6.28.) • 산업 범위 확대 : 오디, 뽕잎 생산·가공 및 양잠 관련 판매·유통·서비스업 추가 • 우수 누에 품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가능성 양잠산업 육성 정책 추진 법적 근거 마련 • 양잠인의 날(매년 5월 10일) 지정	가능성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3.6.28.)
	-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누리집)보도자료) 가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공포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044-201-2142)
국내산 벌꿀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시범사업 운영(법적 근거 없음) • ‘14년부터 시범사업 운영	■ ‘23년 하반기 본사업 추진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 중) • 축산물 품질평가 대상에 ‘벌꿀’ 품목 추가	축산법 시행규칙 (‘23년 하반기)
	-	☞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축산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044-201-2322)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수산물 중 15개 품목*에 대해 음 식점 내 표시 대상으로 지정 * 표시품목: 납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뽕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으로 5개 품목 추가 지정 * 추가품목: 가리비, 우렁쟁이, 방어, 전복, 부세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7.1.)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관리과 (044-200-5414)
총허용어획량(TAC) 단계적 확대	■ 참홍어는 인천, 전남의 일부 해역 에서만 TAC를 적용하며, 바지락 은 경남의 일부 해역에서만 적용	■ 참홍어 TAC 적용해역을 서해 전역으로 확대하고 적용대상 업종(근해자망)을 추가 하며, 바지락 TAC 적용해역을 경남 전 해역으로 확대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23년 7월~2024년 6월 어기 총허용어획량 제도 시행	총허용어획량 관리 및 시행계획 (‘23.7.1.)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044-200-5533)
민간참여이력제 추진	■ 자율참여이력제(굴·굴비 2개 품목만 의무참여) • (정보입력) 5단계* * 생산자, 위판장, 중도매인, 가공 기업, 판매기업 • (표시정보) 제조시설을 갖춰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시 과세 • (생산정보 입력) 수기 입력	■ 민간참여이력제 • (정보입력) 2단계(위판장→가공기업) • (표시정보) 4종*+ α * 생산자, 생산·포장시기, 생산 장소, 가공 기업+안전 • (생산정보 입력) 위판정보시스템-이력정보 시스템 정보 자동 연계(‘22.12년 완)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동정) 민간 참여 이력제 시범사업 업무 협약(MOU) 추진(‘23.6월 예정)	- (‘23.6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200-5443)
어촌체험휴양마을 누리집 온라인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 제한적 예약 및 결제 방식 • 온라인 예약에 대한 수동 확인, 중복예약 등 민원 발생	■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개선 • 네이버 예약과 연동하여 간편하게 안전하게 예약·결제를 진행하고, 마을에서 QR코드 발권확인으로 업무 간소화 ☞ (참고)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홈페이지> 공유바다>공지사항>온라인 예약· 결제 시스템 개선	- (‘23.9월)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044-200-5652)

산림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 나무의사 자격인정 - 나무의사, 법 시행 당시 식물 보호(산입)기사, 수목보호 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 ■ 나무병원의 종류: 1종 나무병원, 2종 나무병원	■ 나무의사 자격인정 - 나무의사 ■ 나무병원의 종류: 1종 나무병원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통합자료실> [병해충]나무의사제도 홍보자료	산림보호법 부칙 및 산림보호법 시행령 부칙 (’23.6.28.)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나무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제도 도입	■ 나무병원이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관련 조사·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나무병원이 기한 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관련 조사·검사 등을 거부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보도자료>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산림보호법 (’23.6.28.)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한부모가족 등 산림복지소외자 범위 확대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신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 범위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참고) https://forestcard.or.kr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6.28.) 산림청 산림복지정책과 (042-481-8868)

국방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역상생 장병 특식	-	'23년 2분기부터 매월 1회 "지역상생 장병 특식 제공" (장병 1인당 13,000원 기준)	- (‘23.4.1.)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723)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시행	입영 및 선발신체검사 시 문진상 마약류 복용 의심자 또는 담당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약류 검사 실시	임관예정 및 장기복무 지원 대상 군 간부 인원 전체를 대상으로 마약류 검사 실시	각군 건강관리 규정 (‘23.8.1.)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1)
진료미종결 전역자 군 병원 진료기간 확대	진료미종결자 전역자에게 전역 일로부터 6개월까지 진료 제공	진료미종결자 전역자에게 전역일로부터 1년까지 진료를 제공	국방환자 관리훈령 (‘23.3.29.)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51)
군 장병 개인별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 장병 정신건강 관리 - 병영생활상담관 운영 - 국방헬프콜 상담창구 운영 - 군병원 정신과 진료 지원 - 민간 심리상담 지원 (신설)	- 장병 정신건강 관리 - 병영생활상담관 운영 - 국방헬프콜 상담창구 운영 - 군병원 정신과 진료 지원 - 민간 심리상담 지원 「마음건강」 앱 운영	- (‘23.7~8월) 국방부 보건정책과 (02-748-6644)

병무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 민원인이 병무청을 방문하여 병적기록 정정 신청 ● 각 군 군번 찾기, 현충원·호국원 안장·이장 등을 위한 병적기록 확인 중 성명·생년월일 등 불일치 사항 발견 시 병적기록 정정 안내	■ 기관 간 협업으로 민원인 방문 없이 정정 ● 각 군 불일치 사항 병무청에 통보, 직권 정정 ● 현충원·호국원 병무청에 정정 요청 및 필요서류 제공, 정정절차에 따라 처리	- (‘23.9월) 병무청 동원관리과 (042-481-2803)
병무민원 ‘상담 예약서비스’ 도입	■ 휴일·야간 챗봇상담만 가능 (전문상담원과의 추가 상담 필요시 예약 불가)	■ 휴일·야간에 챗봇상담 중, 전문상담원과의 추가 상담 필요시 예약으로 선제적 상담서비스 제공	- (‘23.11월) 병무청 정보기획과 (042-481-2652)
병역판정검사용 온라인 연계 학교 생활정보 확대	■ 학교생활기록부만 온라인 연계	■ 학교생활기록부 외 학생건강기록부도 온라인 연계 추가	- (‘23.6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042-481-2918)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 확대	■ 6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춘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 센터 운영	■ 6개 지역 외 수원, 인천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추가 설치	- (‘23.7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22)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 모집병 지원 대상 : 통신장비 운용 분야 전공자, 자격증 또는 면허증 취득자	■ 모집병 지원 대상 : 모든 지원자 (단 신체제한사항 해당자 지원불가)	- (‘23.8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481-2719)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 조정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 : 29명	■ 대체역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 : 13명	대체역법 (‘23.6.29.)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방위사업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방산물자의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면제) 방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수리부속 • (허가) 협력업체에서 생산하는 수리부속	■ 방산물자의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 (면제) 생산유무와 관계없이 하자보수용 수리부속은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관리규정 (‘23.12.1.)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27)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25조의4(가·감점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 감점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 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 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 하도록 한다. 1.~4. (생략) 5. 부품국산화 상생협력확인서 가점 : [별표 17]에 따라 평가 6.~10. (생략)	제25조의4(가·감점 평가)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안서 접수 후 다음 각 호에 따라 가·감점 평가항목에 점수를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평가팀에 제출하여 평가에 반영하도록 한다. 1.~4. (현행과 같음) 5. 신속연구개발사업 수요신청 가점 (신속 연구개발사업에 한함) : [별표 18]에 따라 평가 6.~11. (연번조정)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3.7.1.)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청 뉴스)보도자료)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보도자료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20)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세금 체납 및 선수위 보증금 정보 등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파악 어려움	■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신설 ● 임대인이 해당 주택의 선수위 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 및 국제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른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화 ●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수위 임대차 정보나 미납·체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사항 체결 권고	주택임대차보호법 (‘23.4.18.) (‘23.7.19. 임차권등기 신속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임차권 등기 경로 가능	■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고지 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 경로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 (‘23.7.19.)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임대인 송달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토킹범죄 행위자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확대	■ 스토킹행위자 처벌 공백	■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3.7월)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 피해자 보호에 공백 ■ 잠정조치 취소 등 근거 규정 및 통지 규정 미비	■ 피해자 보호 강화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 ● 잠정조치 기간 연장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등 ■ 잠정조치 등 관련 절차 보완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용자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정시설 등 DUR 구축	■ 의약품 처방·조제 시 교정시설과 외부의료시설 간의 병용금지, 중복처방 등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 불가	■ 처방전 간 DUR점검을 통해 교정시설 또는 외부의료시설 진료 시 의약품 안전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중복처방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	- (‘23. 하반기)
			법무부 의료과 (02-2110-3986) 치료처우과 (02-2110-3338) 소년보호과 (02-2110-3355)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신설)	■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 운영 • 교정시설 일부를 마약재활전담 교정시설로 지정,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마약재활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 • 프로그램은 재활교육, 치료·재활 전문상담, 치료공동체 등으로 구성 • 지역재활시설과의 연계 지원	- (‘23.9월)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02-2110-3465)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신설)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 • 외국인등록증진위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금융기관에서 외국인등록증의 진위여부 확인 요청시 그 진위에 대한 확인	출입국관리법 (‘23.7.3.) 법무부 이민정보과 (02-2110-4097)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확대	■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 상한 5개월	■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장 8개월로 확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23.6.30.) 법무부 체류관리과 (02-2110-4065)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 국가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가 병역의무 대상 남성인 경우에는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서 제외했음	■ 국가배상액 산정 시, 군복무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도록 함	국가배상법 시행령 (‘23년 하반기) 법무부 국가소송과 (02-2110-3207)

법무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소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정 「민사소송법」 시행	■ 소장 제출 시 인지·송달료를 납부하지 않고 거듭하여 소송제기	■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 소장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소전자문서법 (‘23.10.19.)
	■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며 동시에 거듭하여 소송제기·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인지·송달료에 대하여 재차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음	■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	민사소송법 (‘23.10.19.)
	■ 무변론 소각하판결을 하는 경우에도 소장 부분 송달이나 판결선고기일의 통지 등을 간이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여 법원이 변론 없이 소 또는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직권으로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함 ■ 소권을 남용하여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에게 친화적인 수사·재판절차 도입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 13세 미만 (신설)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 지원 대상 • 19세 미만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 ■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 공판준비절차 특례 ■ 증인신문장소 특례 ■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검사의 증거보전청구 의무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3.10월)
		☞ (참고) 법무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부 형사법제과 (02-2110-3695)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등 민간앱에서도 이용 가능	(신설)	■ 공공웹·앱에서만 이용가능하던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평소 친숙·편리한 민간앱에서도 이용	- (‘23.7월)
			행정안전부 디지털서비스정책과 (044-205-2733)
제1회 고향사랑의 날	(신설)	■ 고향사랑의 날(9월4일) 기념행사 실시 • 행안부와 지자체는 고향사랑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 관련 행사 실시 가능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국가기념일 고향사랑의 날 9월 4일로 선정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7.4.)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위원회 신설 시 일몰제 적용 등 관리강화	■ 한시적 운영 위원회에 존속기한 설정 • (행정위원회)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행정위원회 설치 시 존속기한을 법률에 명시 • (자문위원회) 계속하여 존치시켜 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자문위 원회 설치 시 최대 5년의 범위 에서 존속기한을 법령에 명시	■ 모든 신설 위원회에 존속기한 설정 • (행정위원회) 모든 행정위원회 설치 시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률에 명시 • (자문위원회) 모든 자문위원회 설치 시 최대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여 법령에 명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3.11.17.)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7)

행정안전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 존속기한 연장 및 점검 ※ 연장 관련 규정 없음 • (점검) 존속기한이 정해진 자문 위원회를 제외하고 2년마다 소관 자문위원회 존속여부 점검	■ 존속기한 연장 및 점검 • (연장)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시 미리 행정 안전부 장관과 협의 • (점검) 2년마다 소관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포함한 존속여부 등 점검	
인도(보도) 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	■ 인도 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지방자치단체별 자율 운영 • (운영) 대부분 지자체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 미운영 • (신고요건)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신고 간격을 1분, 5분, 15분, 30분 상이하게 운영	■ 인도 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방자치단체 확대 운영 및 신고요건 일원화 • (운영) 전 지자체 운영 • (신고요건) 신고 간격 1분으로 일원화 ☞ (참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보도자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제도개선 보도자료	기초지자체별 주민신고제 운영 행정예고 ('23.7.1.)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 (044-205-4522) 및 각 기초지자체
공중화장실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제도 시행	(신설)	■ 시행일('23.7.21) 이후부터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 의무화 • (대상) 조례로 정한 공중화장실 등 • (내용) 비상벨, CCTV 등 안전관리시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23.7.21.)
	(신설)	■ 시행일('23.7.21) 이후 설치되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는 상단·하단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하단) 휴대폰 등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5mm 이내로 설치하여야 함 ※ 출입문은 제외 • (상단) 환기 등을 위해 30cm 이상 설치하여야 함 ※ 대변기 칸막이내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cm 미만 설치 가능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7.21.)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5)

해양수산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해수욕장 내 알박기 텐트 등 무단 무단 방치규제	■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	■ 해수욕장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물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는 기존 규제수단 외에도 필요할 경우 직접 제거 가능 • (제거대상 물건) 해수욕장 안에 무단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야영용품, 취사용품,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물건 • (제거요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고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달성이 곤란할 경우 • (처리방식) 제거사실 공고, 물건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반환받기 원할 경우 처리비용 징수, 소유자가 없을 경우 지자체에서 매각·폐기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해수욕장 내 물건 무단 방치 규제 관련 보도자료('23.6월 말 배포 예정)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3.6.28.)
	■ 컨테이너 성능검사제도 •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품질을 확인 및 필요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음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시설, 설비기준 등 등록기준 및 등록의무 없음	■ 컨테이너 성능검사제도 도입·시행 • 「선박안전법」 제23조의4 성능검사제도 신설(공포 '22.12.27)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57조의3 컨테이너 성능검사의 기준 및 절차 등 개정 추진 중 • 「선박안전법」 제25조의2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의무 및 기준 신설(공포 '22.12.27)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3조 안전점검사업자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개정 추진 중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보도자료) 선박안전법 개정시행 보도자료 (예정)	선박안전법,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23.6.28.)
컨테이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제도 강화시행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6)

외교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분실여권 등록 즉시 여권명의인에게 안내	■ 업무담당자가 분실여권 접수 및 등록 사실을 안내문자수기 발송 • 분실신고에 따른 영구 무효화 조치 등 민원인의 편의성보다 엄격한 보안조치에 초점 • 분실여권에 대한 제한적 기간간 이송 서비스 제공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에 분실 여권이 접수 등록되는 즉시 안내메시지 자동 발송 • 습득된 분실여권에 대한 처리 절차 명확화 •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내 분실여권 관리 관련 프로그램 구축 완료 • 분실여권에 대한 전면적 기간간 이송 서비스 제공	여권법 시행령 (‘23.6.20.)
	■ 유관기관의 분실여권 외교부 전달에 장시간 소요 • (공항·항만 등) 현장 상황에 따라 2주~한달 소요	■ 유관기관의 분실여권 외교부 전달 소요시간 최소화 • (공항·항만 등) 현장 상황에 따라 빠르면 이틀 내 즉시 주소지 관할 여권사무(대행) 기관으로 인계	외교부 여권과 (02-2002-0179) 전여권사무대행기관 (시·군·구청 여권과) 및 유실물 유관 공공기관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02-3150-1357)

법제처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만 나이로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법령상 명확하게 규정된 바가 없었음	■ 행정 실제 분야의 기본법인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 확립 • (예외) 다른 법령등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이제부터는 만 나이가 내 나이입 니다./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	행정기본법 (’23.6.28.)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044-200-6736)
		■ 제재처분 감경 사유 및 감경 범위 • (감경사유) 소상공인 고려 없음 • (감경범위) 과태료 등 제재처분 최대 50퍼센트까지 감경 가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총 109개 법령 (’23.4.25.) 법제처 법령정보과 (044-200-6577)
소상공인 제재처분 감경범위 확대	■ 제재처분 감경 사유 추가 및 감경 범위 확대 • (감경사유) 위반행위자가 고의·중과실 없는 소상공인인 경우, 부담능력 및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 신설 • (감경범위) 과태료 등 제재처분 최대 70퍼 센트까지 감경(등록취소 처분 등은 영업정지 등으로 감경) 가능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줄이는 법령 일괄 정비 완료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제품 시범구매 전략적 수요 매칭 강화	■ 시범구매 우선순위 •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혁신성 평가 점수 또는 각 기관의 장이 조달청장에게 통보한 우선순위 ■ (신설)	■ 시범구매 우선순위 • 공공서비스 개선, 국가 주요 정책과의 관련성 및 수출 증대 등 정책지원 효과 등을 고려 ■ 시범구매 기본계획서 제출 • 조달청장은 시범사용 기본계획서의 사용 성과 및 정책효과 등을 평가하고 해당 평가결과를 시범구매 대상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	혁신제품구매운영규정 (’23.9월) 조달청 혁신조달운영과 (042-724-7564)

조달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계약관련정보 통합공개 플랫폼 구축	■ 분산된 경로를 통해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약정보 공개 • 통합검색, 입찰정보, 계약과정통합공개 경로를 통해 서비스 • 각 기능별 조회정보 불일치 및 공개대상 항목 상이 → 이용자 혼선유발	■ 공개대상 정보를 일관된 기준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통합 공개하는 플랫폼 구축 • 기존 정보공개 메뉴와 신규 통합공개 플랫폼 연동 • 서비스 이용이 편리해지고 정보의 효율적인 공개관리 가능	- (‘23.9월)
	■ 나라장터에서 처리되지 않은 계약정보 일괄 비공개	■ 재정정보시스템이나 자체조달시스템에서 생성된 계약정보 공개 • 연계 받은 계약정보도 관계 법률에 따라 공개, 비공개를 정하여 공개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 • 공개대상 확대로 공공계약 투명성 제고 및 국민 알권리 충족	조달청 전자조달관리과 (042-724-7545)
소방안전장비 6종 MAS 2단계경쟁 예의 적용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의 대상 세부품명에 소방용특수방화복을 구매하는 경우 포함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예의대상 세부 품명에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에 따른 소방장비 6종을 구매하는 경우 포함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23.7.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66)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 정비	■ 일부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납품검사를 수요기관에서 직접 수행	■ 품질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수요기관 검사 대상의 안전관리물자(34개 품명)에 대해 전문검사기관 검사·시험이 가능한 물품을 검사대상으로 추가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및 검사기준 (‘23.7.1.)
	■ 검사이력이 없는 물품, 검사 제외 시 품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 등이 전문검사기관 검사대상으로 지정	■ 검사이력이 없는 물품, 검사 제외 시 품질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적은 물품 등이 전문검사기관 검사대상에서 제외	조달청 조달품질원 납품검사과 (054-716-8100)

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불가 • 실외이동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 통행 불가	■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 • 실외이동로봇을 '보행자' 개념으로 보아 보도 통행을 허용 • 실외이동로봇을 조작·관리하는 사람을 '운용자'로 정의하고, 운용자의 준수사항을 신설	도로교통법 (‘23.10.19.)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9357호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59)
보호구역 가·중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 보도 도입	(신설)	■ 보호구역 가·중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 보도 도입 •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 강화	도로교통법 (‘23.7.4.)
		☞ (참고)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경찰청 입법예고 제2023-10호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노인 보호구역 지정대상 확대	■ 노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 제약 • 노인복지시설, 공원 등 일정 시설의 주변도로만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 보호구역 지정 대상 확대 • 시설뿐만 아니라,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 조례로 정하는 장소 주변 도로도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 가능	도로교통법 (‘23.7.4.)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9158호	경찰청 교통운영과 (02-3150-0611)

소방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위험물안전관리법」 벌칙, 과태료 조항 신설	■ 허가받은 장소에 제한하여 규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과실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가받은 장소 외 허가받지 않은 장소도 규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업무상 과실 :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안전관리법 (‘23.7.4.)
	■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처벌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참고) 소방청 홈페이지>소방소식) 보도자료)오는 3일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률 공포, 자율적 안전관리 유도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3)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자정 신설	■ 소방자동차 고장 발생시 제작업체까지 원거리 관외 정비로 인한 출동공백 발생	■ 관내 자동차종합정비업의 기준을 갖춘 우수 정비업체를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로 지정 • 소방자동차 제조·공급사와 부품공급 및 정비교육 등의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지정	소방장비관리법 (‘23.5.16.)
			소방청 장비총괄과 (044-205-7691)

기상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 지진정보 직접연계 • 15개 시도 교육청 연계 • 학교연계 수(누적): 190개 • 직접연계 수(누적): 64개 기관 76개 시스템	■ 지진정보 직접연계 확대 • 17개 시도 교육청 전국 연계 완료 • 학교연계 수(누적): 235개 • 직접연계 수(누적): 70개 기관 84개 시스템	- (‘23.12월)
			기상청 지진화산기술팀 (02-2181-0081)

해양경찰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 1년 단위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 계획 수립·시행 ■ 조종면허 취득연령(제1·2급) • 14세 이상 ■ 조종면허 대여·알선 시 행정처분 (면허 정지 또는 취소)만 부과 ■ 태풍·폭랑·폭풍해일 등 경보 이상 기상특보 • 운항신고 후 해양경찰서장 허가 시 활동 가능 ■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갖추어야 할 장비의 종류만 단순 열거형으로 규정	■ 해양경찰청장이 5년 주기의 중장기 기본 계획을 수립, 사·도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매년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 ■ 제1급 조종면허 취득연령 상향 • 14세 이상 → 18세 이상 ■ 조종면허 대여·알선 시 행정처분 외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태풍·폭랑·폭풍해일 등 경보 이상 기상특보 시 수상레저활동 금지 ■ 야간 수상레저활동을 위한 각 장비의 세부 인정기준을 규정함	수상레저안전법 (‘23.6.11.)
	■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주체 이원화 - 해수면: 해양경찰청장 - 내수면: 시·군·구청장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 (개인용) 총톤수 5톤↑, (사업용) 총톤수 2톤↑ (신설) ■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에 관한 내용이 고시에 규정	■ 사업용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 주체 일원화 - 해·내수면: 해양경찰청장 ■ 건조에 착수한 때부터 실시하는 검사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변경 • 총톤수 5톤↑, 운항구역 연해구역↑, 승선 정원 13인↑ ■ 안전검사필증(검사유효기간 및 검사받은 년도 기재) 부착 의무화 ■ 무선설비·위치발신장치 설치 및 작동 의무화에 관한 내용 법률에 규정 ※ (참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보도자료>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수상레저안전법」 분법 시행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23.6.11.)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1)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정위 조사받는 피조사인, 절차적 권리 강화	■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조사범위에 대한 불확실성 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음	■ 현장조사 공문에 법위반혐의 관련 내용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함 • 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의 범위, 거래분야· 행위유형 추가로 기재	사건절차규칙 조사절차규칙 이의제기업무지침 (‘23.4.14.)
	(신설)	■ 준법지원부서에 대한 조사 기준 마련 • 준법지원부서가 법위반 또는 증거인멸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조사 실시 가능	
	■ 현장조사 기간 연장 공문에 연장 된 조사기간만 적시	■ 현장조사 연장 시 조사기간 연장 사유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함	
	(신설)	■ 피조사인의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 반환· 폐기 요청 절차 신설	
	(신설)	■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 및 사건 담당 국·과장 간 예비 의견취취절차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044-200-4122)
	(신설)	■ 최대예상과징금액이 크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사건 등 시장에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회 이상 심의 실시	조사총괄담당관실 (044-200-4685)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뉴스> 공정위 소식>보도>개정 조사절차 규칙 및 사건절차규칙, 제정 이의제기 업무지침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시제도, 현실에 맞게 합리적 개선	■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소유 현황, 자금거래 현 황, 자금대여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는 분기임	■ 계열회사 간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식 소유 현황, 자금거래 현황, 자금대여현황 등 8개 항목의 공시주기는 연 1회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 (‘23.5.1.)
	■ 공시내용 정정 시 3일 이내 50% 감경	■ 공시내용 정정 시 3일 이내 75%, 7일 이내 50%, 15일 이내 30%, 30일 이내 20%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제도 합리적 개선 및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개선방안 발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23.5.1.)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7)
사익편취규제 합리화를 통한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 '부당한 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없음	■ 행위주체·객체·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의도 및 경위, 경제적 상황, 귀속 이익규모·기간 등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부당한 이익'을 판단하도록 정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23.5.22.)
	■ 자칫상 물량 몰아주기 요건 및 예외사유가 법령보다 과도한 규제로 오해됨 (신설)	■ 물량 몰아주기 요건, 예외사유 등을 법령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 ■ 물량 몰아주기 예외로 인정 가능한 구체적 사례를 추가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 공행위 심사 지침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결합정책과 (044-200-4935)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대리점주 피해구제 시 과징금 감경폭 확대	■ 과징금 감경 상한: 50% • 위반행위 자진시정, 조사·심의 협력 정도 등에 따라 감경 비율 결정	■ 과징금 감경 상한: 70% • 위반행위 자진시정, 조사·심의 협력 정도 등에 따라 감경 비율 결정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6.7.)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정책과 (044-200-4962)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에도 해약환 급금 산정기준 적용	(신설)	■ 소비자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 여행상품 등 이용일자 확정 후 계약해제한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의 손실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참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공정위 뉴스>공정위 소식>보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23.5.16)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정책과 (044-200-4432)

국민권익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공익신고 관련 신고자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 국가 또는 지자체 수입회복에만 보상금 지급 • 신고로 인한 벌금, 과태료 부과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수입회복의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	■ 공공기관 수입회복에도 보상금 지급 • 국가 또는 지자체 외의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에도 일정비율을 보상금으로 지급 ※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국민권익위, 공단·공사 등 공공기관 대상 공익신고도 보상금 받을 수 있어	공익신고자보호법 (‘23.9.22.)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 (044-200-7753)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 (기존)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체계가 원안위와 국토부로 이원화	■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 (변경)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체계를 원안위로 일원화 • (신설) - 항공승무원 건강진단 및 교육 의무화 - 항공승무원 건강영향조사 실시 -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정기검사 등 실시 - 항공승무원 안전관리 조치 사항 등 기록·보관·보고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23.6.11.)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방사선안전과 (02-397-7276)

원자력안전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신설)	■ ‘자체처분계획 사전검토’ 제도 도입 • 사업자 요청시 평가방법에 대한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하는 제도 도입 • 사전검토 신청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 •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처분계획서를 검토 등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23.7월)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폐기물안전과 (02-397-727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합리적 기준 마련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반규정에 따라, 사전동의, 법률 규정 등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가능 •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은 사전 동의없이 영상촬영 곤란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업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촬영사실 표시, 개인 권리침해 금지 등을 요건으로 개인 영상정보 촬영 가능 • 자율주행차, 배달로봇, 드론 등은 촬영 사실 표시, 개인권리침해 금지 등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여 사전 동의없이 영상촬영 가능	개인정보 보호법 (‘23.9.15.)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 (02-2100-306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도 도입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환류체계 부재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도입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 보호법 (‘23.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율보호정책과 (02-2100-3050)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범위 확대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온라 인 서비스 사업자)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해외사업자 •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 처리자(온·오프라인 서비스 사업자) ☞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 보도자료)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개인정보 보호법 (‘23.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1과 (02-2100-3119)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확보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 • 공공기관	■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자 •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 또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쟁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자료를 열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도록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23.9.1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과 (02-2100-3145)

